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2021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가족과 커뮤니티

목 차

특별기고

이정옥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5
--	---

일반논문

김소연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애	39
김종구 경당 장흥효의 가족애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75
김미라·홍은실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109

서평

김기성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147
--------------------------------	-----

▣ 발간 및 투고 규정(제출 양식)	159
▣ 논문 심사 규정	163
▣ 연구 윤리 규정	166
▣ 임원 명단	171

가족 정책의 분절과 재통합의 전망

: 공동체와 개인화의 융합

이정옥*

목차

1. 문제의 제기
2. 가족정책의 분절성
: 원자화된 개인화 현실과 상상적 가족공동체
3. 가족정책과 젠더
4. 가족정책의 재통합 방향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가족 정책의 분절성을 밝혀냄으로써 가족 정책의 재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론적 성격을 띤다. 가족 정책의 분절성은 1) 상상적 가족공동체와 가족 과잉 책임제 2) 자유주의에 대한 선택적 해석에 의한 가족 정책 개입 최소화와 시장화 3) 산업화 정책의 배후지로서 자의적인 동원과 배제 4) 여론에 민감한 반응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되었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은 원자화된 개인화의 현실을 상상적 가족공동체로 과잉위임하는 도피구조를 용인한다. 가족 정책의 재통합을 위해서는 젠더차원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돌봄역량을 증대하는 것,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이 전제조건이다. 여성가족부는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 명예교수.

6 『가족과 커뮤니티』 4집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의 결합에 도전해 왔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은 생활 밀착형, 상호관계 지향형, 공사영역의 경계 넘기,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 여성 인권, 아동권의 개념 구성이라는 점에서 가족 정책 재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가족 정책의 분절성, 가족 정책의 재통합, 상상적 가족공동체, 협동적 가족공동체, 개인화, 여성 인권

1. 문제의 제기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 변화의 ‘방과제’ 역할을 담당하는 상상적 공동체로서 기능을 담당하였다. 냉전 상태의 남북 관계에 대해 온기를 불어넣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의 눈물이었다. 확대가족을 넘어 결합 가족의 잔잔한 갈등을 다루는 가족 드라마는 늘 높은 시청률을 보여주며 상상적 가족공동체를 가상현실로 재현하였다.¹⁾

상상적 가족공동체의 ‘상상’이 지속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저출생 문제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이고²⁾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선다는 통계치가 제시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 1) 1990년대 중반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은 확대가족을 넘어 결혼한 자녀 모두가 생활공동체로 결합 가족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 결합 가족은 인도 등의 대농장 경영 당시에 보인 가족 형태인데 도시자영업 가정에서 생업을 달리 하지만 결합 가족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전원일기’는 농촌을 배경으로 확대가족과 지역의 마을 공동체성을 재현하여 높은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이다. 가족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상상적 가족공동체를 재현해 왔다.
- 2)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까지 저하하였다(신경아 외,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 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2020, 3면).
- 3) 전체 가족 중 한부모 가족은 2019년 기준 7.5%(1,529천 가구) 다문화가족 1.7%(3천 가구)에 달하고 있다.

‘친밀성의 보루’(기든스, 1995; 벡, 1999)로 여겨지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아동 학대, 가출청소년의 문제 등 개별 가족이 대응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가족’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 환기시키고 있다.

정책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소극적 차원과 변화와 발전의 방향을 선도하여 변화를 유도하는 적극적 차원을 다 포괄한다.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 정책은 산업화로 집약되는 경제 발전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업화, 정보화, 4차산업으로 혁신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향식으로 주도해 오면서 이러한 흐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큰 줄기였다.⁴⁾

하향식 경제발전과 상향식 정치발전이 시차를 두고 정치적으로 경쟁하면서⁵⁾ 발전해 온 데 비하여 사회정책은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⁶⁾ 사회정책은 민주화의 상향식 요구가 정치제도 개혁을 넘어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로 심화하면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⁷⁾ 최저임금의 문제, 정부 지원금의 차등 지급과 일괄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게 정치화되는 상황에서 ‘가족’은 전달체계로서의 도구의 적합성의 차원에서 잠깐 등장할 뿐이다.⁸⁾

‘가족’은 필요에 따라 호명되었기 때문에 통합된 가족 정책 대신 기

-
- 4) 정상호, 『한국시민사회사』, 학민사, 2017, 16~18면.
 - 5) 산업화의 성공신화를 강조하는 정당과 민주화의 열망을 제도화한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정당이 공존하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공유하는 구도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공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당 간의 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여전히 치열하고 작은 차이도 쉽게 정치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 6) 장경섭,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 가족: 한국의 개발 자유주의와 사회 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3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63~90면.
 - 7) 정상호, 앞의 책, 90~120면.
 - 8)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가구주 단위와 개인 단위가 병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능적이고 주변적으로 분산된다. 가족 정책의 근간은 민법적 규제 사안인 ‘사생활’의 영역으로 국가개입 최소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상속제도와 관련해서는 ‘혈연성’을 보호하는 이중성을 보인다.⁹⁾

일제강점기, 전쟁, 공업화를 위한 빠른 도시화의 흐름은 가족에 대한 해체의 원심력을 발휘하였다. 가족해체에 대한 ‘바깥’으로부터의 원심력이 컸기 때문인지 가족을 해체당하지 않으려는 구심력은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유지되었다. 물론 구심력의 ‘전통’은 가족을 통치 이데올로기의 기반으로 삼았던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 대한 구성적 기억이다.¹⁰⁾ 가족해체를 견인하는 외부의 압력이 서구화, 개인화, 외세로 해석되고 가족을 지켜내는 기반이 ‘전통’, ‘민족의 역사’로 치환되면서 가족은 상징적 자원으로서의 상상적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현실 가족은 경제정책의 종속변수로서 ‘개인화’되면서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서구화에 대응하는 ‘전통’의 보루로 가족공동체의 유지는 집단적 염원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의 위상을 위축시켰고 가족 정책의 통합성 구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통합적 가족 정책의 공백 상태에서 가족해체의 자리를 메우는 것은 ‘시장’이다. 가사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는 물론 가족의 상징자원을 유지하는 영역¹¹⁾까지도 ‘시장’의 영역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공적 개입은 기능적 복지의 차원으로 분화되어 대상과

9) 결혼 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은 개인의 자율 영역으로 규정되고 있다. 반면에 상속제도에 대해서는 혈연지분을 고정함으로써 상속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하고 있다.

10) 중앙아시아 한인 연구를 통해 한인 3세대까지 끈질기게 이어지는 전통은 성씨였다. 이름은 개명하였지만, 성씨는 본관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전통가족공동체를 유지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였다(이정옥, 『중앙아시아 한인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와 역사』 48집, 한국사회사학회, 1996, 133~164면).

11)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물론 제사 영역도 빠르게 시장에 편입되고 있다.

지원 규모, 지원체계 등의 절차적 합리성을 구현하기 위한 계량적 차원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다.¹²⁾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맥락에서 가족 정책의 분절성을 진단하고 재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분절성’은 구조와 기능의 괴리, 이념과 실행체계의 괴리, 과잉 개입과 방임의 괴리 등으로 과편화된 채 영역 간의 충돌과 갈등이 내재된 상태를 의미한다.¹³⁾ 분절적 가족 정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가족 정책은 1) 국가의 통치기반으로서 국가권력의 직접적 개입이 이루어졌던 조선왕조 500년에 대한 기억과 재현에 의존하는 가족과잉 책임주의 2) 사생활의 영역으로 국가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입장 3) 발전국가 정책의 배후지로서의 자의적인 동원과 배제의 대상화 4) 여론과 민원대응에 민감한 반응적(Responsive)정책대응¹⁴⁾과 결부되어 작동되어 왔다.¹⁵⁾ 분절성의 결과는 ‘원자화된 개인화’와 ‘상상적 공동체’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나타난다.

분절성의 작동방식을 분석함으로써 가족 정책의 재통합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재통합의 틀로서는 젠더차원의 도입, 여성 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의 통합적 거점을 통한 새로운 정책사례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정책의 재통합을 위해서는 인권에 근거한 주체로서의 개인의 복원과 협동적 가족공

12) 노인, 아동, 청소년의 지원 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쟁, 소득분위의 기준 산정이 쟁점이 된다.

13) 분절성은 영역간의 이질성이 소통하지 않은 상태의 갈등적 공존 상태를 의미한다. 불균등 또는 불균형, 탈절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14) 반응성은 굿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 UNDP에서 제시된 바 있다. 정책 소비자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당정치 기반이 약한 한국 사회에서는 ‘여론정치’가 주도하게 되면서 민원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15)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비교사회』 제2호, 한국비교사회학회, 1998, 371~414면.

동체의 구성을 지향하려는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2. 가족 정책의 분절성 : 원자화된 개인화 현실과 상상적 가족공동체

1) 상상적 가족공동체

① 사회변동과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

사회변동과 가족 변동의 조응을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가구 형태상으로 핵가족화, 가족 규모상으로 소가족화, 가족 관계 면에서 부부 중심 가족으로 규정해 왔다.¹⁶⁾

기능주의 가족 사회학자들의 관점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필수기능을 전담하다가 사회적 기능이 분화해 나감으로써 기능축소를 경험하여 이제는 정서적 기능이 주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가족은 기능주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사회 유지의 필수기능인 적응(Adaptation), 목표달성(Goal Attainment), 통합(Integration), 잠재적 유형 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의 기능을 담당해온 오래된 사회제도였다. 사회의 변화는 가족이 담당했던 기능의 분화과정으로 여겨진다. 가족이 담당했던 통합과 유형 유지 기능의 일부가 일찍이 종교 제도로 분화되었고 목표달성의 기능이 근대국가로, 산업화에 따른 생산의 기능이 기업으로, 통합과 유형 유지의 주기능이 교육제도로 분화되어 감에 따라 사회 유지의 필수기능 담당 체로서의 제도적 중요성이 약화한 대신 친밀성의 보루역할,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의 조각보 역할, 구성

16) 뒤르카임은 부부중심성을 강조하고 윌리엄 제임스 구드 등은 핵가족화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 자체에 주목하였다(이정옥, 『가족과 젠더의 사회학』, 조명문화사, 2014, 5면).

원의 재생산과 초기 사회화 담당이라는 ‘잔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⁷⁾ 자본주의 체제와 가족의 관계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생산의 영역과 재생산 영역의 분리를 통해 가족은 사적인 차원으로 규정되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별 노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한다.¹⁸⁾ 공사분리와 성별 분리 체계는 성불평등은 물론 노동자의 저임금 정책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② 변화의 방과제로서의 ‘가족주의’의 확대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제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 틀을 한국 사회라는 맥락에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족이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주의’가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가족주의를 매개로 하는 상상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은 오히려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¹⁹⁾

가족주의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근대적 관행이 통용되게 된다. 관료제를 통한 직무 중심의 서열이 인격적 서열과 동일시되고 성취를 바탕으로 한 업적주의도 연고주의의 작동에 의해 신분제적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²⁰⁾ 연고주의, 신분제, 서열주의

17) 핵가족화의 추세 속에 가족의 사회적 기능은 약화되는 반면 친밀성의 보루로서 주관적 차원의 의미가 확대 되면서 가족은 험한 세상의 마지막 보루(Heart in Heartless World)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18) Walby S., “From Private to Public Patriarchy : The Periodisation of British History”,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990, 91-104면.

19) 장경섭, 「가족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사회 재생산위기의 미시정치경제학적 해석」, 『사회와 이론』 제32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8, 189-2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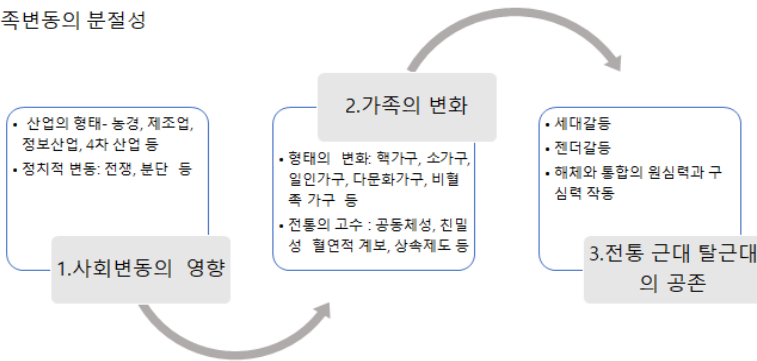
20) 갑질에 대한 사회적 저항, 연고주의에 대한 폭로, 공정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는 것은 지연된 사회적 근대화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금수저/흙수저의 ‘수저’ 계급 담론은 지위획득에서 ‘상속’의 중요성을 빚낸 표현이다.

등이 온존하는 사회발전의 지체는 조직 안에서 세대갈등을 증폭시킨다. 사회적 차원의 근대성에 대한 세대 간의 해석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상적 가족공동체 유지의 기능적 측면은 가족과잉 책임제의 유지와 관련된다. 기업활동, 교육 활동, 종교활동 등의 근대적 제도들은 ‘가족’이라는 배후지의 뒷받침을 통해 불완전한 기능을 메우고 있다.²¹⁾ 더 나아가 사회의 재생산-출산, 육아, 돌봄-에 필요한 노동의 부담을 상상적으로 구성된 가족공동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²²⁾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저항은 산업화라는 사회변동을 수용하면서도 그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족제도, 가족 관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분절적인 입장의 사회적 표현이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지만 ‘관념적 차원’에서 유지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정의 가족동반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현실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가족변동의 분절성



21) 가족에게 사법적 기능, 종교적 기능, 교육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유교적 가부장제의 유습은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산업화, 자본주의화, 공업화의 압축적 추월 과정과 선택적 친화성을 보인다.

22) 장경섭, 『내일의 종언? : 가족 자유주의와 사회 재생산위기』 집문당, 2018.

2) 원자화된 개인주의

① 자유주의의 선택적 이해

‘자유주의’는 냉전 시대의 진영의 차이를 대표하는 사회사상이었고 탈냉전 시대에도 분단상태에 있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진영 논리의 영향권에 있다. 자유주의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보호’ ‘사생활 보호’와 결합된다. 자율적 개인의 인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이 그 맥락과 관계없이 특정 측면만 선택적으로 수용되면서 이성의 공적 사용, 시민적 규제, 공공영역의 구성을 위한 사회정책의 형성과 갈등을 빚게 만들었다.²³⁾

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동반하여 선택적으로 수용됨으로써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반면 선택된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주도적’ 정책이 하향식으로 실행되었다. 가족영역은 자유주의의 상징으로서 국가개입 최소원칙에 부응해왔다. 반면,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를 위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개입주의가 지속적으로 작동하였다.²⁴⁾

공업화의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따른 ‘소가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으로 출산 억제 정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출산 억제 정책의 정책 목표는 경제적으로 잘살기 위함이었다.²⁵⁾ 가족 부담에 대한 개입과 지원은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자녀출산이라는 사생활의

23) 가족에게 사법적 기능, 종교적 기능, 교육적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온 유교적 가부장제의 유습은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산업화, 자본주의화, 공업화의 압축적 추월 과정과 선택적 친화성을 보인다. 이정옥, 『글로벌 시대의 한국시민사회의 이해』, 조명문화사, 2015.

24) ‘압축적 성장’을 위한 공업화 정책은 ‘국가 개입주의’ 방식을 적용한 반면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원칙을 강조하여 방임을 정당화한다.

25) 배은경, 『현대한국의 인간 재생산-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2012.

영역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책개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자녀의 의미, 가족 관계의 성격까지 변화시키게 되었다. ‘밀어붙이기’식 출산 억제 정책이 표면적으로 거둔 ‘계량적 성과’의 이면에는 가족 역시 잘살기 위한 ‘도구’라는 가족 관념을 이식한 것이다. 발전국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자녀 출산을 경제적인 실용성의 차원에서 계산하게 되면서 저출생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²⁶⁾

② 가족 서비스의 시장화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차원의 가족 관계 구성을 주입받으면서 가족 관계는 급속하게 ‘개인화’되고 가족이 담당했던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필요노동은 ‘시장’화 되고 있다.²⁷⁾ 생존을 위한 필요노동이 시장화되면서 가족 형성을 위한 결혼도 비용의 문제가 되고 배우자 선택도 손해 보지 않는 교환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전통이 결혼의 근거가 되었다가 낭만적 사랑이 결혼의 동기가 되는 시대를 지나 결혼이 내 집 마련, 생활비 마련이라는 현실적 경제적 부담의 차원으로 환원되는 상황에서 결혼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시장’ 상황의 교환으로 치환되고 있다. 결혼중개업체의 등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자녀의 출산 양육 가사 서비스 모든 것이 비용으로 되고 가족은 ‘생산’의 기능을 상실한 ‘비용’ 부담이 되었다.²⁸⁾ 가족 서비스의 시장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가

26) 비용의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을 계산하게 되면 ‘인센티브제’로서는 효력을 볼 수 없다. 산아조절 정책은 경제적 인센티브, 강제, 그리고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집중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동원한 결과였다.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가족주의 관념을 경제주의적 계산으로 변화시키는 데 전방위적인 정책홍보가 작동하였다(배은경, 『현대한국의 인간 재생산-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2012.)

27) 돌봄의 영역을 비롯하여 결혼 시장, 장례식장이 상품화되고 각종 배달 음식은 집밥을 대신해가고 있다.

28) 대가족제의 상상을 허구적으로 그려내는 인기드라마가 농업과 자영업을 배경

족 관계 역시 시장의 교환관계로 환산되는 경향이 있다.

3) 사회정책의 지체와 가족 정책의 분절

근대화가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 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산업화 정책이 정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정치적 차원은 사회운동을 통해 상향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차원은 지체된 상태이다.

정치적 민주화가 탈군사주의, 억압적 국가기구의 민주화,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선거제도의 개혁, 자치와 분권 정책 등 정상적인 공화제를 구성하는 과정은 ‘사회적 동의’를 이루어 내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회정책은 노동정책, 복지정책으로 환원되고 있는데도 해당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수위가 높다.²⁹⁾ 가족 정책은 개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안 대응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왔기 그 때문에 기능과 대상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된 상태다. 기능적으로 분산된 가운데 정작 ‘가족’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다룰 수 있는 통합성은 구성되기가 어렵다.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해체 압력에 대응하여 ‘복지국가’ 체계로 재편한 ‘복지국가들’과는 달리³⁰⁾ 한국에서는 가족 정책은 산업화정책을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호명되었다. ‘선택적 호명’으로 가족 정책은 상호충돌적인 방향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루어진 대표적인 정책인 ‘가족계획’은 ‘산아제한정책’ ‘인구조

으로 하는 것은 생산적 기능이 결합될 때 협동이 가능한 체감현실의 요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9)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도입, 학교 급식 등 부분적인 ‘보편복지’ 도입에 대해서도 ‘자유주의 원칙’의 침해라는 담론과 분배와 복지 확대라는 담론이 경쟁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정상호, 『한국시민사회사』, 학민사, 2017, 15~27면).
- 30) 이정옥,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업과 국가 : 영국과 스웨덴의 비교」, 『女性問題研究』 제20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165~179면.

절 정책’ 등 인구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공업화를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면서³¹⁾ ‘인구조절 계획’이 ‘가족계획’으로 불렸다. 대조적으로 ‘저출생’에 대해서는 ‘가족 정책’이 아닌 ‘인구 보건 정책’으로 범주화된다. 산아제한정책이 가족 단위의 행위 선택과 자녀에 거는 사회적 의미 차원을 고려하여 ‘성공’을 거둔 것과 대조적으로 저출산 정책은 경제적 유인조건 구성에 초점이 맞춰 있고 자녀의 사회적 의미구성의 문제, 가족 단위의 상호작용, 삶의 질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³²⁾

가족해체와 관련된 사회문제인 ‘고독사’, ‘아동 학대’, ‘돌봄에 대한 지원’ 등은 문제에 대한 ‘현안 대응’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징 차원과 상상 차원에서 가족공동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³³⁾ 가족 관련 사건 사고가 나면 가족 정책 차원이 아닌 ‘현안’이 되어 개별 사건의 대응적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 복지 정책과 가족 정책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한다. 가족 정책은 ‘가족’의 개념 및 정의를 두고도 여전히 기존의 관행적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 호주제는 폐지되었지만, 혈연 중심의 상속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데 따르는 문제³⁴⁾,

31) 한국 사회는 공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자녀 개념이 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재 개념화되었다. 자녀 출산이 생의 존재 이유에서 도구적 차원으로 치환되었다. “우리 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덜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표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육 정책 예산 중심인 데 반하여 제3차 기본계획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여성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일과 삶의 균형 확산 및 성차별적 환경 개선. 아동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비혼 출산 수용 - 신혼부부 주택 청약 공공 주택 1만 호 제공 주거비 지원 등으로 선회하고 있다(신경아 외,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 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2020, 5-6면)

33) 직업이동이 가족생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자녀의 성취 지위획득을 위한 ‘기러기 가족’이 등장하는 복합적인 상황은 상상적인 가족공동체에 대한 과잉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나타난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구 단위와 가족 단위가 다른 현실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가족영역은 전통과 근대성, 글로벌과 로컬,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체된 사회발전의 쟁점이 한데 모아지는 결절점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가족 정책의 재통합이 필요한 이유이다. 가족 정책의 변화 방향을 <아래 표>로 요약해 보았다. 원자화된 개인주의와 상상적 가족공동체를 축으로 한 분절성을 넘어 인권과 시민성을 갖춘 개인을 단위로 한 협동적 공동체의 구성을 통해 재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통합은 기존 상태를 한데 아우르는 개념인 데 반하여 재통합은 구성요소의 변화를 전제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공동체의 개념이 전통적인 신분제적 가부장제적 질서와 연고주의를 답습하는 방식이 아닌 평등한 인격적 주체들의 협동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협동적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차별화하고자 한다.

< 가족 정책의 변화 방향 >

가족정책의 성격	가족 정책의 분절성	가족 정책의 재통합
가족공동체 유형	상상적 가족공동체	협동적 가족공동체
개인의 특성	원자화된 개인주의	젠더구조 균열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용
		인권, 시민성의 주체로서의 개인
사회현상	저출생, 고독사, 소비주의	생산적 협업 공동체, 가족과 사회의 경계 넘기, 돌봄사회

- 34) 돌봄 부담과 상속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혈연주의에 기반한 상속제도가 문제 되면서 ‘구하라’법이 발의되었다. 비혈연 가구의 증가 현실과 돌봄 주체의 다양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3. 가족정책과 젠더

1) 젠더구조와 가족정책

통합적 가족 정책 수립에 젠더구조 재편은 선행조건이다.³⁵⁾ 젠더구조는 성별 분업 구조를 기반으로 성 불평등 체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이는 사회의 다른 불평등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³⁶⁾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통합적 가족 정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젠더구조에 대한 천착이 필요한 이유이다.³⁷⁾

현대 사회에서의 젠더구조는 사적인 차원에서의 부분노동을 여성 고유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 경력 단절을 정당화한다. 즉 공사 분리를 성별 분업과 연계하면서 성 불평등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가족의 영역을 사적인 영역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영역으로 규정하면서 가족의 생산과 재생산에 관련되는 노동은 여성이 부분노동으로 전담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으며 이러한 분업의 틀은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직의 전형을 구성하고 여성 직의 노동은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³⁸⁾ 이러한 성별 분업 구조는 ‘평등’을 근대적 가치로 공유하고 그것을 헌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근대국가의 규범과 충돌하며 그것을 통해 젠더구조에 균열과 전복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³⁹⁾ 근대국가의 가족 정책의

35) Hallett Christine (ed.), *Women & Social Policy*, Prentice Hall Europe UK, 1996, 7~9면.

36) Hallett Christine (ed.), *Women & Social Policy*, Prentice Hall Europe UK, 1996, 8면.

37) Hallett Christine (ed.), *Women & Social Policy*, Prentice Hall Europe UK, 1996, 52~64면

38) Walby S, “From Private to Public Patriarchy : The Periodisation of British History”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990, 91-104면.

39) 귀속적 특성에 기반한 인종 차별과 성차별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적 성격을 띠고

방향은 공사 분리구조와 젠더구조에 개입하는 것이다.

젠더 구조를 해체하려는 흐름이 가치의 차원과 제도의 차원에서 현실화하면서 사적인 차원, 다시 말해서 여성전담이면서 부분 노동의 성격을 띠는 돌봄 노동, 가사노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노동으로 전환된다. 가사노동과 돌봄 서비스가 국가 주도로 공적 노동으로 전환되기도 하며 동시에 시장화로 이어진다. 흔히 복지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북구국가들의 특징은 여성들의 공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와 개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춘 모델이다.⁴⁰⁾

전통가족의 상상적 공동체에 대한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여성전담의 가사노동,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공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동시에 가사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을 통해 돌봄 서비스와 생활서비스의 분담이 쟁점이 되면서 실제로 사회적 돌봄역량 자체에 대한 질적 차원의 문제는 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 국가, 시장이라는 영역을 달리하면서 가사서비스와 돌봄 서비스가 분담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돌봄 전담인력은 여전히 여성전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⁴¹⁾ 공사분

있으며 성취 지위에 따른 차별을 용인하는 보수적 차원에서의 근대성의 입장에서조차 지양의 과제로 설정되기 마련이다. 물론 ‘평등’의 당위적 규범은 불평등한 현실과 괴리를 드러내며 그 괴리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정당성을 얻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평등의 문제는 물론 자유의 문제도 공공을 위한 자유권의 규제 문제, 평등권 실현을 위한 보호의 문제로 늘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와는 충돌을 빚는 것이 현실 정책이 놓인 지점이다.

- 40) 돌봄의 가족책임의 범위, 공적 개입의 정도 면에서 영미 모델과 북구모델은 차이를 보인다(Hill Steven, *Europe's Promise : Why the European Way is the Best Hope in an Insecure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pp.72-92).
- 41) 이런 현상을 Walby(1990)에서는 사적 가부장제에서 공적가부장제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리라는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별 분업’구조 그 자체가 우선적인 정책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이 유지되는 한 사회 전체의 돌봄역량은 줄어들고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진다. 사회 전체의 돌봄역량이 높아질 때 전체적으로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전체의 돌봄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돌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⁴²⁾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교육과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시간을 허용하는 노동 생산 체계의 변화가 동시에 동반되어야 한다.⁴³⁾ 성별 분업의 고정관념과 재생산 기반을 허용하지 않는 생산시스템은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의 지연과 저출생이라는 사회문제로 귀결된다(장경섭, 2018). 사회시스템의 변화 없는 출산에 대한 부분적인 인센티브제만으로는 저 출생이라는 구조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이 어려운 이유이다.⁴⁴⁾ 돌봄역량의 사회적 확대와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고려는 사회발전의 지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할 때만 가능하다.

2)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가족 정책

여성 인권 분야는 유엔 차원에서 지속해서 협약을 구성하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동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⁴⁵⁾ 여성 인권의 글

42) 신경아 외,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 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2020, 48면.

43) 신경아 외,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 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2020, 210-211면.

44) 신경아 외,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 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2020, 1-24면.

45)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제도화과정

연도	내용
1979	CEDAW 성에 근거한 구별, 배제, 제약을 차별로 규정하고 성차별철폐를 협약으로 제정

로벌 스탠다드는 그 개념과 영역을 확장하고 실효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일반의 개념에 ‘여성 인권’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과정은 ‘인권선언’을 ‘선언’을 넘어선 구체적인 ‘보장체계’ 구성과 맥을 같이 한다. ‘인권’은 대상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영역의 구체화로 이어진다. 발전권, 평등권, 문화권 등의 영역을 구체화하면서 ‘발전권의 맥락에서 여성 인권’ ‘평화권의 맥락에서의 여성 인권’으로 확장해 가게 된다. 인권선언을 기초로 한 차별철폐의 틀에서 ‘성차별’을 명시적으로 차별로 규정하며 성차별철폐 협약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거버넌스의 틀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대회⁴⁶⁾의 ‘성 주류화’ 선언이다. 북경 선언은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전제로 빈곤·건강·폭력·무력분쟁·경제·의사결정·인권·환경 등 12개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성 평등이 인권 개념에 포괄되면서 ‘권리’의 차원으로 개념화되는 한편 발전과 평화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부각하면서 여성이 ‘피해자’로서의 보호 대상의 차원을 넘어 발전과 평화의 책임 있는 주체로 규정된 것이다. 성 평등 의제는 1995년에 북경 여성대회를 통해 평등권을 발전권과 평화권

1995	성 주류화 :북경 여성대회 평등 평화 발전을 주제로 한 12개 분야 행동강령 설정 후속 회의를 통해 성 평등 지수구성, 모니터링 적극적 조치 제도화
2000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 평화와 안보의 주체로서 여성 규정 이후 8개의 후속 결의안 분쟁하 성폭력의 문제 공적 대응
2015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젠더를 제5항에 별도의 목표로 설정하고 나머지 16개 항의 개별 목표에 모두 통합목표로 설정

46) 유엔 차원에서 성 평등 의제가 세계대회를 통해 표명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전 대회와 ‘북경대회’가 구별되는 것은 규모의 면에서 총 189개국의 정부 대표단, 비정부 관련자 17,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행동강령’을 통한 실천 의지를 다진 점이다.

의 차원으로 확대하였다. 법적 제도적 차별철폐의 소극적 차원을 넘어 여성을 발전과 평화구성의 주체로 부각시킨 것이 북경 여성대회의 선언의 의미이다.

그로부터 5년 후 전쟁과 무력분쟁 속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주목하고 평화와 안보의 영역에서 성 주류화를 규정하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를 채택하였다. 안보리 결의안 1325는 지속적인 후속 결의안을 통해 협치를 실질화하고 있다. 이 개념확대를 토대로 전시 성폭력 피해,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의 문제를 인권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갈등과 분쟁에서의 성폭력을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분쟁지역의 공동체 재건의 주체로 여성을 호명하기도 한다.

2015년에 선언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제에서 성 평등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적 조건으로 구체화하였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성 평등이 제5항으로 별도로 규정된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른 16개 과제에도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천명한 것이다.

유엔에서의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제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인권과 평화라는 유엔의 기본 개념 속에서 여성 관련성을 규정하면서 개념을 확장하고 거버넌스 체계가 실효화될 수 있도록 국가별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전되어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⁷⁾

‘개방적 세계체계’의 단위로 국민국가가 자리 잡은 현실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다차원에서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의 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유엔과 관련 기관을 통해 협약을 통해

47) 북경 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 20주년, 지속 가능한 발전 선언 채택 5주년이 겹치는 2020년에 2020 대한민국 성 평등 포럼을 <성 평등과 코로나 19위기>를 주제로 개최하였다. 글로벌 차원의 흐름의 수용국에서 발전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한 것이다.

제도화된다. 협약은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협치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국제사회의 동의를 제도화된 영역에서는 협치 위반에 대한 다차원적인 배제와 제재 메커니즘이 작동한다.⁴⁸⁾

4. 가족 정책의 재통합 방향 : 여성 인권과 협동적 가족공동체 형성

1) 여성 인권과 가족 정책의 결합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협동적 가족공동체 형성이라는 지향을 담은 그루터기가 마련된 것은 여성가족부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등장하게 된 것은 2005년이다. 2005년에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졌고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1989),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1993),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9),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 건강가정 기본법(200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된 가족 정책 관련 법은 ‘피해자 보호’ ‘지원’ ‘건강/건전가정’ 등으로 요약된다.

가족 관련 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여성 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거점으로서 여성부가 지향했던 정책과 만나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부는 지구촌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향과 한국 민주화의 성과가 조응하면서 출범하였다. 1995년 북경 여성대회의 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 역시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

48) 이정옥, 『가족과 젠더의 사회학』, 조명문화사, 2014, 125-146면.

고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함으로써 법률안 발의권과 국무회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교육, 성평등지수라는 지렛대를 매개로 ‘양성평등’과 성 주류화 정책을 정부 부처 전반에 확산할 수 있는 틀을 갖추었다.⁴⁹⁾ 아직은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엔과 국민국가의 관계처럼 자발성을 기초로 협치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⁵⁰⁾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성 평등 정책을 정부 부처에 확산할 수 있는 조직의 틀을 만들 수 있었다.⁵¹⁾ 또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수직적 성별 분업체계에 대한 정책개입도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페미니즘의 제도화 거점으로 출발한 여성부가 2005년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는 데 대해서는 여성계의 우려가 표명되었다.⁵²⁾ 그러

49) 한국에서는 젠더 관점을 ‘양성평등’이라는 양성 간의 산술적 평등 개념으로 축소하면서 ‘양성’ 간의 영합적인 경쟁과 갈등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여지를 남겼다. 젠더 체계의 해소가 사회의 다른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가치합의가 통합성을 구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50) 성별 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도 해당 부처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5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성 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며 성 평등 과제 발굴을 담당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책담당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52) 가족 내의 부불 노동이 여성전담이라는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것처럼 여겨질 위험과 젠더관점의 적용대상을 가족으로 한정된 나머지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

나 가족 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부처로서의 실행 기능을 갖춘 조직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가 작용하여 여성가족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글로벌 페미니즘의 거점으로서의 여성부의 특성과 전통과 관습의 보루로서의 가족영역의 결합은 한국 사회 전체로서나 여성가족부라는 부처 차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은 갈등할 수도 있고 공존할 수도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샐러드 볼 또는 용광로⁵³⁾도 될 수 있다. 인권 향상이라는 지향을 스스로 삼아서 서로 다른 재료가 공존하는 방식, 더 나아가 용광로 안에서 용융되어 제3의 특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등장을 통해 ‘가족 정책’에 대한 정책지향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의 그루터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협동적 가족공동체 구성 : 가족의 사회화와 사회의 가족화

여성가족부라는 틀에서 제정된 가족 관련 법은 가족의 사회화와 사회의 가족화 즉 공사 분리의 경계 넘기로 특징지어진다. 여성가족부의 틀에서 새롭게 제정된 가족 정책 관련 법으로는 결혼중개업의 권리에 관한 법률(2007), 가족 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 다문화가족 지원법(2008), 아이돌봄 지원법(2012), 양육비 이행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문제에

는 데 한계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더하여 호주제 폐지과정에서 여성계와 유림의 첨예했던 대립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 젠더 법학』 6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53) ‘샐러드 볼’, ‘용광로’ 등의 개념은 주로 이민정책이 다문화의 공존 방식으로 가는지 통합 방식으로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구성된 것인데 여기서는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차용하였다.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지원법’과 ‘결혼중계업법’이며 ‘양육비·‘아이 돌봄’ 관련 법은 가족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틀에서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방문을 통하여 삶의 질 전체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⁵⁴⁾ 한국어 교육 등 한국 사회에 적응과 동화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통·번역 서비스와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통한 상호문화 역량 강화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⁵⁾

54) 생활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구분	대상	내용	종사자 수, 2020년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부모 교육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건강 관리 학교 가정 생활지도 및 가족 상담 정서 지원 서비스	2,240명
방문 : 자녀생활 서비스	만 3세-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독서코칭 숙제 지도 발표토론지도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방문 :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 교육 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사례 관리	다문화가족	가족 관계 개선 및 가족 갈등 등 가족 상담	174명
언어발달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언어발달 평가 후 어휘발달 촉진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300명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담인력으로 양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283명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부모 자녀 상호작용 등 프로그램 지원	180명

(http://www.mogef.go.kr/mp/mp_pcd/mp_pcd_s001d.do?jsessionid=8b0Ufd5zym+htGEMQ0vGDOPc.mogef21?mid=plc503&bbtSn=704771).

55) 다문화가족 지원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호문화 역량강화로 이어진다. 방문지도사를 통해 부모 교육 자녀 생활서비스 통·번역 서비스의 확대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9개 언어로 통·번역하여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상호문화적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방문’을 통한 공사 경계 넘기 방식은 지원 정책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여 한 부모들에게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 지원,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⁵⁶⁾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도록 실질적으로 조력하고 있다.⁵⁷⁾ 조손 가족에게도 전문활동가(키움보듬이, 배움 지도사)를 파견하여 상호작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⁵⁸⁾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부부가정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구성하고 지원은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⁵⁹⁾ 프로그램 내용은 방문서비스 방식으로 ‘돌봄’을 매개로 돌봄 종사자와 수요자의 상호신뢰망 구축과 돌봄의 안전망 구축을 구성하고 있다. 정책의 개입은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지원’ 확대가 보편적 복지로서 이어지게 하여 가족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⁶⁰⁾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8b0Ufd5zym+htGEMQ0vGDOPc.mogef21?mid=plc503&bbtSn=704771).

56) 가족 역량 강화사업은 위기 가족의 사례 관리를 통해 상담 지원, 자녀학습, 정서 지원, 생활지원 및 외부지역사회와 자원연계를 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은 17개 시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79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4.do).

57) 16개의 사업운영기관에서 189호를 지원하고 있다.

58) 이러한 지원체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다.

59) ‘저소득층’ 만을 위해 별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가형(소득분위 75% 이하, 356.2만 원), 나형(120% 이하 569.9만 원), 다형(150% 이하 712.4만 원), 라형(150% 초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아동의 상태에 따라 취학 전, 취학 후, 36개월 이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형’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정부 지원 85%, 나형 55%, 다형 15%, 라형의 경우 전액 자부담이다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은 지역차원의 협동적 공동체 구성을 통해 가족의 사회화를 시도한 정책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주도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육아기 부모세대 자조 모임,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구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이 집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⁶¹⁾ ‘가족 친화 환경조성 사업’은 사회의 가족화 사업의 일환이다. 기업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도록 가족 친화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다.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⁶²⁾ 구체적인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라는 캠페인을 통해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공동체 가족 등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편견 없이 포용하려는 지향을 담고 있다.⁶³⁾

60) 정책 개선 방향은 자부담 비중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아이 돌보미의 자격 기준 강화, 긴급돌봄 등을 위한 연계서비스 확대 등을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중앙 및 광역 지원센터 지정 운영, 아이 돌보미 자격 제재 이력 등 정보 보호자 제공, 요청이 있으면 민간 도우미에 대한 범죄경력 건강상태 신원증명서 발급, 아이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간 확대(1년에서 3년)가 가능해졌다. 아이 돌보미 서비스 지원기관은 223개이며 이 중 74.9%를 건가다가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61) 공동 육아 나눔터는 2011년 60개 2016년 160개였던 것을 2017년 160개 2020년 287개로 확대하였다(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2.do).

62) 인증기업은 2019년 3,833사에서 2020년에는 4,300개사로 늘어났으며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5.do).

63) 한부모 가족 약 16%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며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https://www.data.go.kr/data/3072047/fileData.do>), 결혼이민자의 30.9%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https://www.data.go.kr/data/15048450/fileData.do>). 세상모든가족과함께

여성가족부의 돌봄 정책은 관계지향적, 생활밀착형, 공사경계 넘기, 보편복지 지향, 협동적 공동체구성, 인식 개선 등의 특성을 띠고 있어 기능적 접근과 차별화된다.

3) 양적 확대를 통한 개념의 질적 변화

보편복지나 선별 복지나 논쟁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복지 예산의 범위와 규모를 확장하려는 지향은 사회적 동의를 비교적 순조롭게 구성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지원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었다.⁶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의미는 ‘지원’의 양적 차원을 늘렸다는 의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틀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복지정책의 일반원칙에서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문제에서는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양육비 이행의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정에서도 개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양육비 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의 체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에 근거하여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담부터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 지원 모니터링까지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⁶⁵⁾ 현실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https://www.families.kr/participation/together>)

64) 한부모 가족 152.9만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은 약 38.4만 가구이며 정부 지원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3만 가구이며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13, 5만 명이다. 1989년 모자보건법을 2008년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2018년에 아동양육비를 만 14세 미만 월 13만 원 (청소년 한 부모 18만 원)으로 상향하고 2021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생계급여 병급 및 만 34세 이하 추가 아동 양육비지원을 확대하였다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

65) 2020년 기준 양육비 상담 요청은 16,428건 그 중 접수 건은 1,531건으로 지원에

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⁶⁶⁾ 마침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 규율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육비 문제’를 사인 간 채무 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형사적 규율의 대상인 공적인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⁶⁷⁾ 양육비 이행의 문제를 형사적 사안으로 제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동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가족 정책 재통합의 구심점

가족 정책은 그 범위가 때로 너무 포괄적이고 때로 너무 협소하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가족은 사회구성원 전체 그리고 그에 수반된 사안들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⁶⁸⁾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미는 구성원과 관련되는 개별 기능들 예를 들면 교육, 노동, 국방, 보건복지, 법무 등으로 분화되면 가족 정책은 잔여적 부분으로 여겨져서 ‘빈 등자’로 남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의 가족관련 업무는 다른 부처에서 이관된 업무가 많다.⁶⁹⁾ 기능 중심으로 업무 분담

대한 요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66) 또한, 양육비에 지원의 국가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양육비 이행 신청 가정 중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최대 12개월 월 20만 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9.do).

67)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 금지, 면허 정지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5.do).

68) 영국의 경우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주거, 소득 활동, 교육, 보건, 사회안전 등을 포괄하며 사회정책에 포섭되는 분야는 사회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allett Christine (ed.), Women & Social Policy, Prentice Hall Europe UK, 1996, 2-4면) 젠더차원이 결합될 때는 정체성, 문화, 이데올로기 차원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Hallett Christine (ed.), Women & Social Policy, Prentice Hall Europe UK, 1996, 29면).

69)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을 받았고 일하는

이 이루어지는 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다루는 것과 가족이라는 대상으로 중심으로 젠더 관점에서 업무를 다루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정책을 다룸으로써 다른 부처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은 첫째 젠더 관점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대상 전체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인식과 문화적 통념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양적 차원보다는 질적 차원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평등’과 ‘보호’의 균형점 찾기, ‘지원’에서 파트너십 구성 그리고 자립의 프로세스 연계하는 과정 설계, 기존 개념의 확대 및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자화된 개인의 문제와 상상적 공동체에 위임했던 돌봄 공백, 학대, 폭력, 피해자 보호, 안전망 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재통합적 가족 정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⁷⁰⁾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경제정책 위주로 오랫동안 틀 지워졌던 구조 속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젠더 관점을 포함한 인권의식이 아직은 사회 전반에 확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직문화 속에서의 ‘갑질퇴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직 초기 상태이다.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모든 평가는 기능적으로 분절되고 계량화된다. 통합적 접근과 질적 접근은 정책평가에서 그 자체로 인정받기 어렵다.⁷¹⁾

여성들과 관련된 업무는 노동부로 이관을 받아 출발하였다. 후에 청소년 업무가 추가로 복지부로부터 이관되었다.

70) 언론 또는 민원인에 의해 사회문제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전면에 나서 대응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문제는 기존의 틀 안에서 규범 체계가 갖추어 있지 않거나 처방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존의 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대응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71)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평가할 때 ‘취업률’이 기준이 된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설득의 과정, 취업의욕을 위한 동기부여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경력 단절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은 아동권, 여성인권을 포함한 인권 개념의 복원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선택적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에 도전한다.⁷²⁾ 성별분업체계는 불평등을 제도화하고 돌봄을 저임금 시장 노동으로 대체하게 만들면서 돌봄의 질 저하와 삶의 질 저하를 불가피하게 몰고 온다.⁷³⁾ 성불평등 해소가 사회의 다른 불평등 체계의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인권의식이 아직 일반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간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첨단 산업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인권의식과 신분제적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지체된 사회발전의 민낯이다. 경제발전 정치발전과 같은 차원에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재통합과 그에 대한 확고한 정책구심점 설정이 절실하다.

5. 맺음말

‘발전국가’의 정책지향 속에서 가족 정책은 분절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가족 정책의 분절성은 이념지향과 실행 체계의 상위성, 적극적 국가개입과 소극적 방임의 간헐성, 서로 다른 정책지향의 공존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절성의 기제는 1) 전통에 대한 선택적 기억에 의존하여 드라마 등으로 재현되는 상상적

은 채 취업률로만 단순히 평가하게 되면 정책 성과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2.do).

72) 인권은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보호 사유재산 보호를 앞세우면서 아동권과 여성인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입’에도 ‘저항’이 일고 있다.

73) 신경아 외,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 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2020, 43-113면.

가족공동체 2) 분단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주의’에 대한 선택적 이해 3) 발전국가 지향의 산업화를 위한 배후지 4) 여론에 민감한 반응적 정책 대응이 복합된 결과이다. 분절성의 결과로 가족 과대 책임제를 지탱하는 상상적 가족공동체와 원자화된 개인화가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 개입주의적이고 압축적인 하향식 산업화 정책은 변화에 대한 방과제로 ‘가족주의’를 확대하고 상상적 가족공동체를 미디어를 통해 재현시키고 민법을 통해 혈연주의를 보호하였다. 가족주의 확대로 연고주의와 신분제적 요소가 사회관계를 규율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근대화를 지연시켰다.

분단상태에서 진영의 논리로 ‘자유주의’를 자유시장, 사생활과 사유재산 보호차원으로 선택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기반이 되는 자유의 주체로서의 인권존중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게 되었다.

사회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인 규제와 검열의 대상이 되면서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정당화하였다. 그렇지만 산업화의 필요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을 국가주도적으로 실행하면서 가족관계, 자녀의 의미를 경제주의적이고 도구적인 차원으로 변모시켰다.

가족은 원자화된 개인으로 해체되고 상상적 가족공동체가 담당한다고 믿고 있었던 가사서비스와 돌봄 영역은 빠른 속도로 시장의 상품으로 대체되었다. 가족을 구성하는 상징적 의례인 결혼, 장례 등이 시장 서비스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 출산의 의미, 자녀의 의미도 ‘비용’으로 환산되는 경제주의 뒤통에 빠지게 되었다. 가족 정책은 혈연주의를 보호하는 민법적 규제와 가족해체에 대응하는 ‘지원’과 ‘보호’를 기능적으로 계량적으로 분산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가족 정책의 재통합 가능성은 인권에 기초한 주체적 개인을 단위로 하면서 시장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협동적 공동체 구성 여부에 달려있다. 젠더구조에 대한 균열과 도전 그리고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는 것은 가족정책의 재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성

별 분업체계를 재구성해야 사회 전체의 돌봄역량을 증대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차별 해소, 성 주류화, 피해자에서 주체로의 전환, 여성 인권의 확장 등을 견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은 주권국가의 협약 사안인 동시에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여 사회관계의 근대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의 결합에 도전하는 부처이다.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도화하는 거점으로 출발했던 여성부와 상상적인 전통적 가족공동체에 근거한 가족 복지정책의 결합은 도전적이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은 현재로서는 맞벌이 부부 돌봄 지원,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지역사회단위의 돌봄공동체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잔여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생활세계를 공유하고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문형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보여지듯이 지원에서 역량 강화를 통한 당사자의 주체성 확보, 수직적 수평적 성별 분업체계 해소, 가족과 사회의 공사영역 경계 넘기,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 새로운 접근 법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문제에 대해 아동 지원의 특수성, 아동권을 위한 양육비 이행의 형사적 규제 등 여성인권과 더불어 아동권의 개념 구성을 통해 전통적 가족 개념에 도전하는 질적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가족 정책의 재통합을 위해서는 인권을 갖춘 주체로서의 개인을 단위로 하는 협동적 공동체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권의 주체로서의 개인, 협동적 공동체 구성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구성해 나가야 하는 장기적 과제이다.⁷⁴⁾ 쉽게 성과가 드러나지도 않는 기반조성 사업인 것

74)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현재 제 4차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된 상태이다.

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정책 재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정책을 ‘기능’적 차원이 아닌 대상적 차원으로 다룰 수 있는 거점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사회발전 없이는 정치발전 경제발전 성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배은경, 『현대한국의 인간 재생산-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시간여행, 2012, 1~274면.
- 신경아 외,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 과제 발굴』, 여성가족부, 2020, 1~391면.
- 신용하·박명규·김필동 편, 『한국사회의 이해(신용하 교수 화갑 기념논총)』, 문학과 지성사, 1995, 1~549면.
- 안소니 기든스 저, 배은경 황정미 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1~311면.
-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저,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1999, 1~367면.
- 이정옥, 『가족과 젠더의 사회학』, 조명문화사, 2014, 1~244면.
- 이정옥, 『글로벌 시대의 한국시민사회의 이해』, 조명문화사, 2015, 1~293면.
- 이태영, 『한국 가족법 개정 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출판부, 1992, 1~807면.
- 장경섭, 『내일의 종언? : 가족 자유주의와 사회 재생산위기』 집문당, 2018, 1~304면.
- 정상호, 『한국시민사회사』, 학민사, 2017, 1~446면.
- 조은·이정옥·조주현,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 문제』, 서울대 출판부, 1997, 1~235면.

- 김상준, 「중층 근대성: 대안적 근대성 이론의 개요」, 『한국 사회학』, 41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7, 242~279면.
- 안경희, 「가족법 개정사와 여성운동」, 『이화 젠더 법학』 6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4, 73~128면.
- 이숙진, 「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여성연구소, 2011, 49~83면.
- 이정옥,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업과 국가 : 영국과 스웨덴의 비교」, 『女性問題研究』 제20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2, 165~179면.
- 이정옥, 「중앙아시아 한인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와 역사』 48집, 한국사회학회, 1996, 133~164면.
- 이정옥, 「유럽 통합에 따른 가족 정책의 확산과 수렴」, 『한국 사회』 제2집,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1999, 239~266면.
- 이정옥, 「여성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간 안보」, 『한국 여성학』 제20권 1호, 한국여성학회, 2004, 195~227면.
-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비교사회』 제2호, 한국비교사회학회, 1998, 371~414면.
- 장경섭,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 가족: 한국의 개발 자유주의와 사회 재생산위기」, 『한국 사회정책』 제18집 제3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63~93면.
- 장경섭, 「가족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사회 재생산위기의 미시정치경제학적 해석」, 『사회와 이론』 제32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8, 189~218면.

Hallett Christine (ed.), *Women & Social Policy*, Prentice Hall Europe UK, 1996.

Hill Steven, *Europe's Promise : Why the European Way is the Best Hope in an Insecure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Walby S., "From Private to Public Patriarchy : The Periodisation of British History",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990, pp. 91-104.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정책,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jsessionid=8b0Ufd5zym+htGEmQ0vGDOPc.mogef21?mid=plc503&bbtSn=704771

여성가족부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여성가족부공동육아나눔터 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2.do

여성가족부가족역량강화사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4.do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9.do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15.do

여성가족부한부모 가족지원정책,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사업,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5.do

여성가족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2.do

<https://www.families.kr/participation/together>

■ Abstract

**The Prospect of the Reintegration of Segmented Family Policy
: With the Convergence of Community and Individualization**

Lee Jung Ok

This article has searched the possibility of reintegration of family policy which has been segmented. The segmentation of family policy has been aggravated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1) artificial family community and overburdened family responsibility 2) privatization and market orientation of family burden with arbitrary interpretation of liberalism 3) the contradictory intervention of industrial policy 4) responsive policy orientation sensitive to appeal and petition. The segmented structure has allowed the isolated individualization with an excuse of artificial family undertakings. The challenges of gender structure and global standardization of women's right could be the precondition for the reintegration of family policy with strengthening the societal caring capacity. Family policy within MO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as opened the possibility of reintegration of family policy through the qualitative approaches towards the penetration into everyday life world, interactive relationship building cross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nsitization on the diversity and inclusiveness, conceptualization of women and children's right.

Key words: the segmentation of family policy, reintegration of family policy, artificial family community, cooperative family community, individualization

『쇄미록』에 나타난 오희문의 전란 체험과 가족애

김소연*

— 목차 —

1. 머리말
2.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단절
3. 가족의 재결합과 생계·생존에 대한 근심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전란 속 가족의 일상이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임진왜란 관련 실기인 『쇄미록(瑣尾錄)』에 기록된 오희문(吳希文, 1539~1613)과 그의 가족이 겪는 전란 체험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발현되는 오희문의 가족애를 연구하고자 한다.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서로 단절되었다. 가족과 단절된 동안 그의 가족애는 가족의 부재로 인한 슬픔,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비관적인 예감,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애는 그가 잠들었을 때 꿈으로도 발현되었다.

가족과 재회한 오희문은 본가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가족과 함께 객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된다. 피난 생활을 하는 동안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식량난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염병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가장이었던 그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가족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이를 기록했다. 가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오희문의 모습은 가족에 대한 그의 가족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현대 사회에도 전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내전 및 전쟁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 개인과 가족은 일상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희문 가족이 겪은 전란 체험과, 그 속에서 오희문이 보여준 가족애는 현대 사회에서 전쟁을 겪고 있을 누군가와 그 가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란이 없는 평범한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주제어: 오희문, 췌미록, 전란(임진왜란), 일상, 가족애

1. 머리말

본고는 전란 속 가족의 일상이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임진왜란 관련 실기인 『췌미록(瑣尾錄)』¹⁾에 기록된 오희문(吳希文, 1539~1613)과 그의 가족이 겪는 전란 체험을 살펴보고, 가족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오희문의 노력이 가지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췌미록』은 오희문이 한양을 떠난 1591년 11월 27일부터 환도한 다음날인 1601년 2월 27일까지 만 9년 3개월 동안 임진왜란·정유재란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겪은 일을 기록한 일기다. 그는 자신의 전란 체험을 방대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전란 속 가족의 일상을 서술하고 있다.

임진왜란·병자호란 등 전란을 맞아 수많은 실기가 등장했고, 이들이 모여 실기문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형성되었다. 이 실기문학에서는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전란으로 인해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며 현실에 대응한다.

1) ‘췌미(瑣尾)’는 『시경(詩經)』 「패풍(邶風)」 <모구(旄丘)>의 “자잘하고 자잘스런 유리하는 사람이여[瑣兮尾兮 遊離之子]”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중 임진왜란은 정유재란을 포함하여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조선의 국토에 큰 피해를 입혔다. 국가와 왜적, 민간의 의병과 왜적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향촌의 일반 백성들은 전란으로 인해 일상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왜적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왜적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으며, 유리걸식하며 어렵게 생존하기도 했다.

전쟁으로 인한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도 생존한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갔다. 임진왜란을 겪은 사람들이 기록한 실기에는 작자가 전란 속에서 경험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의식주를 해결하여 개인 또는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나간 것, 관혼상제를 행한 것,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식사한 것, 가족의 경조사를 챙긴 것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일상 속에는 작자 개인의 이야기도 있으면서, 가족의 이야기도 있다. 가족은 혼인·혈연·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가족의 구성원들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상호작용하며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족은 일상적 생활 세계의 핵심 단위가 된다.²⁾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 속에서의 일상을 기록한 작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누군가의 부모 혹은 자식·형제자매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일상을 영위해 나갔다. 임진왜란 관련 실기의 작자들은 전란 속 자신의 일상과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갔다. 이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전란과 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실기문학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란 속에서 실기문학의 저자들이 각각 자신의 처지에 따라 가족애와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 효와 충(忠)·서(恕)의 정신을 발휘했다고 한다.³⁾

2) 한편 여기서 ‘가정[home]’은 일상적인 정서적 교류가 있는 생활의 장이라는 의미가 보다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김종길·박수호, 『디지털시대의 “가족혁명” - 신화인가 현실인가?』, 『사회이론』 38,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55~156면.)

전란은 백성들의 일상과 사회 구성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족을 파괴했다.⁴⁾ 전란 속에서 가족은 적(敵)에 의한 가족 구성원의 죽음 및 피랍, 피난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간의 이산 등 다양한 요인으로 파괴되었다. 가족이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이자 일상적인 생활공동체임을 고려할 때, 전란은 한 개인 및 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이 때문에 전란 속에서는 가족의 안위 및 가족 간의 재결합·가족애 등 가족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부각될 수 있었다.

『쇄미록』에는 어느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오히려문이 잘 드러난다. 그는 『쇄미록』을 통해 전란 속에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가족과 유리됨에 대한 슬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한 모습 등을 절절하게 서술했다. 특히 『쇄미록』은 여타 임진왜란 관련 실기보다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슬픔, 가족과의 재회 및 이후의 일상 등 가족의 이야기를 자세하고 풍부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이 부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쇄미록』을 전란 체험과 가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문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쇄미록』은 그 기록량이 방대하고 상세한 만큼 임진왜란 당시 사대부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받았다. 이 때문에 『쇄미록』에

-
- 3)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이서의 전쟁 경험과 정리 작업 : 이탁영의 『정만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34, 한국사학사학회, 2016, 35~65면.
 우인수, 「임진왜란 시 소년 柳彬의 피란 경험과 그 전승」, 『민족문화논총』 6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359~396면.
 장경남,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325~360면.
 정우락,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157~188면.
 한의승, 「남천 권두문의 “호구일록”을 통해 본 유교이념의 가족윤리 전유 양상과 의미」, 『영남학』 6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53~178면.
- 4) 유남, 「전란 배경의 韓中 17세기 가족 이합 서사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15면.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계에서 생활사 및 미시사에 초점을 맞추어, 『쇄미록』을 통해 당시 사대부의 생활상이나 의식 등을 유추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⁵⁾ 문학 분야에서 『쇄미록』은 전쟁실기와 피난실기로

-
- 5) 김미혜, 「『쇄미록(鎖尾錄)』에 기록된 16세기 사대부가 절사(節祀)와 세시음식(歲時飲食)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5-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20.
 김성진, 「『쇄미록』을 통해 본 사족의 생활 문화 ; 음식 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김성희,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가정과삶의질학회, 2000.
 김효주,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사대부 오희문의 삶과 교육관」,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미혜, 「조선 중기 수령의 가족 부양으로 본 장자의 역할과 家의 범위」,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박미혜, 「조선 중기 例送·贈送·別送으로의 처가부양」, 『한국사회학』 42, 한국사회학회, 2008.
 방기철, 「임진왜란기 오희문의 전쟁 체험과 일본 인식」, 『아시아문화연구』 24,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서병패, 「『瑣尾錄』 解題」, 『서지학보』 8, 한국서지학회, 1990, 75~96면.
 신병주, 「조선 중기 생활사의 보고 『쇄미록』」, 『선비문화』 17, 남명학연구원, 2010.
 신병주, 「16세기 일기자료 『쇄미록』 연구 ; 저자 오희문의 피난기 생활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신병주, 「16세기 일기 자료에 나타난 꿈의 기록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4, 조선시대사학회, 2015.
 오동환, 「임란기 平康地方民의 생활상 연구 - 『쇄미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오동환, 「오희문의 『쇄미록』에 대하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유현승,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양반의 경제생활」,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임학성·이민주·차경희·정치영·조현설, 「16세기 일기 자료를 통해 본 양반사대부의 일상과 의식」, 한국연구재단, 2006.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 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분류됐고, 서술상의 특징과 작자의 의식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⁶⁾

『쇄미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오희문이 사대부 가문의 장자라는 측면에 주목했다. 물론 오희문의 집안은 사대부 가문이 맞으며, 그가 사대부 가문의 장자로서 전란 속에서도 제례를 수행하거나 과거 시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목이 『쇄미록』에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쇄미록』에는 사대부 가문의 장자로서의 오희문뿐만 아니라, 전란 속에서 일상을 지켜가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드러내는 오희문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 본고는 이에 주목하여, 전란 체험을 통해 오희문과 그의 가족이 겪는 전란 체험과 가족애를 분석하고,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지니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단절

오희문은 자 비연(斐然), 본관은 해주(海州)로, 그의 본가는 한양이었다.⁷⁾ 그는 형제 중 맏아들이었는데, 아래로 남동생 오희인(吳希仁)·오희

정성미, 「『쇄미록』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정성미, 「조선 시대 사노비의 사역 영역과 사적 영역 - 『쇄미록』에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38, 전북사학회, 2011.

차경희, 「『쇄미록(鎖尾錄)』을 통해 본 16세기 동물성 식품의 소비 현황」,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3-5,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7.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황폐강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6) 구지현, 「『쇄미록』에서 발견된 허난설헌의 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14, 열상고전연구회, 2001.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황폐강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7) 오희문의 가문은 한양에 기반을 둔 한양사족이었다.(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추탄가문의 사회적 기반과 문화적 지향」, 『(해주 오씨 추탄가문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소론의 존재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76~194면.)

철(吳希哲)이 있었고, 여동생이 4명 있었다. 그는 연안이씨 이정수(李廷秀)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오윤겸(吳允謙, 1559~1636)·오윤해(吳允諧, 1562~?)·오윤함(吳允諫)·오윤성(吳允誠)과 딸 3명을 두었다.⁸⁾ 임진왜란 당시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면서, 누군가의 형이자 오빠였으며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오희문은 1591년 11월 처남인 장수현감 이빈(李贇)·전라도 영암에 사는 매부 임극신(林克愼)과 함께 충청도 영동(永同)의 외가 등 친척들을 두루 방문하고, 장흥·성주 등지에 있는 노비의 신공도 받을 겸 두 명의 종을 데리고 한양을 떠나 남행(南行)한다. 그가 남행하던 도중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이 당시 오희문은 전라북도 장수군 수분원(水分院)에 있었다.⁹⁾

이로써 오희문은 본가인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가족과 유리되고, 그의 전란 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가 맨 처음 겪었던 전란 체험은 가족과의 유리와 피난 생활이었다. 가족과 유리된 이후 오희문은 매일같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한다.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그는 한양에 있는 노모와 처자의 소식을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슬픔을 더 크게 느꼈다.

(가) 슬프다. 우리 생령(生靈)들이 모두 흉한 칼날 앞에 피를 흘리고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유리하여 떠돌아 죽고 산 것을 알지 못하니 밤낮으로 통곡할 뿐이다.... 윤함은 또한 해서의 처가에 있으니 부모가 죽고 산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만드시 울 것이니 더욱 슬픈 일이다. 일찍이 옛날 역사를 보다가 난리 속의 사람이 동서로 도망하여 각자가 살기를 도모하느라고 부모·처자·형제·친척이 서로 보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을 덮고 가슴 아파했는데, 어찌 오늘날 몸소 친히 이 꼴을 보게 될 것을 알았으리오.¹⁰⁾

8) 신병주, 「16세기 일기자료 『쇄미록』 연구 ; 저자 오희문의 피난기 생활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41~50면.

9) 서병패, 「『瑣尾錄』 解題」, 『서지학보』 8, 한국서지학회, 1990, 78면.

(나) 우리 문중 안팎이 무려 백 식구인데 난리에도 망해 흩어질 때 각각 스스로 목숨을 도망하여 그 살아 있고 죽은 것을 실로 알 수가 없으니,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아우·누이 이외에도 오히려 걱정되어 놀랍고 불쌍한 마음이 역시 마음속에 있다. 또 이 고을에 있던 서울 중이 지난 4월 26일에 서울을 떠나서 그믐날 비로소 도착하여, 어머니와 아내의 편지도 또 왔는데 모두 20일에 쓴 글이었다. 그때는 난리가 이처럼 급하지는 않아서 글 속에 민망하고 괴로운 모습은 다 알 수가 없는데도 눈물이 저절로 떨어진다. 어머니 편지 속에는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먼저 나와 임매(林妹)가 유리하는 일만 생각했으니 더욱 통곡하고 통곡할 일이다. 이 편지를 서갑 속에 간수해 두고 때때로 꺼내 보니 근심스런 창자는 찢어지려 하고 슬픈 눈물은 옷깃에 가득하다. 이로부터는 비단 우리 한 집의 소식이 아주 끊어졌을 뿐 아니라, 서울 소식도 역시 얻어들을 수가 없으니 두보가 이른바, “집 편지는 값이 만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다.¹¹⁾

두 인용문은 임진왜란 발발 초기의 기록으로, 오희문이 본격적인 산중 피난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이다. (가)에서 오희문은 가족과 유리된 슬픔을 드러내는데, 노모와 처자의 생사에 대한 걱정이 두드러진다. 이와 함께 아들 오윤겸이 부모의 소식을 알지 못하여 슬퍼할 것을 걱정한다. 전란으로 인해 가족이 흩어지는 것은 역사책으로만 읽었던 내용이었는데, 그 일이 오희문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나)는 오희문이 임진왜란 발발 후 노모와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받은 내용이다. (나)를 통해 오희문의 어머니가 편지로 그와 임매가 서로 떨어지게 될 것을 걱정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매는 오희문의 여동생

10) 오희문, 『임진남행일록』, 『쇄미록』 1, 36면.

본고에서 인용한 『쇄미록』의 인용문은 이민수가 번역한 『쇄미록』 1·2(올재, 2015.)를 참고한 것이다. 인용 시 이민수가 번역한 『쇄미록』의 권수와 면수를 표기하여, “오희문, 부제, 『쇄미록』 권수, 면수.”로 각주를 달고자 한다. 아래도 같다.

11) 오희문, 『임진남행일록』, 『쇄미록』 1, 39면.

중 임극신(林克愼)과 결혼한 여동생으로, 오희문과 사이가 돈독했다. 오희문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 전라남도 영암군 구림촌(鳩林村)에 있는 임매의 집을 방문하여 9일간 머물렀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임매와 오희문은 같은 도에 있었기에 서로 소식을 간간히 주고받을 수 있었다. 오희문이 임매를 만날 것을 알았기에, 그의 노모는 남매를 걱정한 것이었다. 전란 중에 자신의 안위보다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편지는 오희문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특히 어머니와 아내가 오희문에게 편지를 썼던 1592년 4월 20일 당시는 왜적이 부산 동래 앞바다에 침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전란이 더 심해지기 전이었다. 그렇기에 이 편지에는 전란 때문에 가족의 생사를 걱정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희문이 이 편지를 읽는 시점은 전란으로 인해 가족이 이산된 상황이었다. 편지의 내용과 편지를 읽는 시점 사이에 달라진 상황으로 인한 간극은 가족에 대한 그의 걱정과 슬픔을 더욱 배가시켰을 것이다.

오희문은 어머니와 아내의 편지를 간직하며, 가족이 그리울 때마다 편지를 읽곤 했다.¹²⁾ 당시 오희문을 비롯한 사대부는 노비를 통해 편지를 왕래했었다. 하지만 급박한 전쟁 상황과 왜적의 위협 속에서 교통로는 끊어졌고, 지역과 지역 간의 왕래가 힘들지면서, 전라도에서 피난 생활 중이던 오희문이 한양의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졌다. 한양으로 가고자 설불리 움직였다가는 왜적으로부터 기습당할 수도 있었다.

한양에 있는 가족과의 소통의 창구였던 편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오희문은 더 이상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받은 편지는 그에게 만금(萬金)의 가치가 있는 편지였다.

가족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오희문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가족과 유리된 현실을 슬퍼한다. 그 범위는 그의 어머니와 처자식·형제자매

12) 오희문, 「임진남행일록」, 『쇄미록』 1, 69면.

에 이른다. 전란 속에서 들리는 전황(戰況)과 관련한 정보와 부정확한 소문,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족과의 단절은 가족의 안위에 대한 오히문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특히 자신의 본가인 한양의 위급한 소식이나 왜적의 동태가 들리면, 오히문은 자신의 가족이 왜적에게 죽임을 당했을까 봐 걱정했다. 가족과의 유리에 대한 슬픔과 이들 생사에 대한 걱정은, 이후 이들의 생존 소식이 오히문에게 들리기까지 계속 이어진다.

(가) 뜰에 나가서 관을 벗고 빌기를, “원컨대 다시 늙은 어머니를 본다면 비록 죽어도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황천과 후토가 실로 보고 있으니 반드시 서로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두 종이 가기 전에 만일 이 같은 가벼운 차림으로 홀로 올라갈 줄 알았다더라면, 떠나기 전에 도착하여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함께 혹 지기도 하고 혹 이기기도 하며, 혹 자빠지고 혹 엎어져서 함께 어려운 것을 맛보면서 혹 줄이기도 하고 혹 먹기도 하며, 혹 죽기도 하고 혹 살기도 하여 신산함을 같이 했던들 비록 고초를 수없이 당해도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후회하리오. 그런데 몸이 편안한 곳에 있어 잠자고 밥 먹는 것이 전과 같으면서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자매로 하여금 홀로 이 환란을 겪게 했으니, 이제 비록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자매와 함께 풀밭에서 자고 함께 풀뿌리를 먹고 자 한들 될 수가 있겠는가. 말이 여기에 이르니 깊이 통곡하고 죽고자 한다.¹³⁾

(나) 늙은 어머니는 성질이 좁으셔서 평시에 조금만 불안한 일이 있어도 문득 식사를 물리치고 종일토록 들지 않으셨는데, 이제 큰 난리를 만나셨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마음이 초조하실 것이다. 이제 망극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통곡하지 않으랴.

아내는 본래 다리가 아파서 비록 멀지 않은 곳이라도 오히려 걸어서 가지 못했는데, 난리를 만나 도망하느라 산과 내를 넘고 건너려면 또한

13) 오히문, 「임진남행일록」, 『쇄미록』 1, 38면

반드시 고생스러울 터이니, 스스로 머리를 맺은 정을 생각하면 어찌 목이 메지 않으리오. 위로 두 딸은 부도(婦道)에 못 미치는 일이 없어서, 평일에 집이 가난해서 미음과 죽으로도 끼니를 잇지 못할 때도 먹는데 배부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입는데 따뜻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승순(承順)하여 한 가지 일도 거역하지 않으므로 내 항상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왔고, 막내 숙단(淑端)은 얼굴이 곱고 밝으며 성질이 몹시 단아하여 내 몹시 사랑하던 터라, 고운 마음과 눈매가 자나 깨나 눈에 보이니, 『시경』에 이른바, “귀여운 막내딸이 실로 내 마음을 잡는다.”라는 것이로다. 이 두 구절을 쓰노라니 슬픈 눈물이 저절로 옷을 적시는 것을 어찌 금하겠는가. 아들놈은 성질이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기에 지난해 초봄에 너무 과하게 매를 때린 것을 오늘날 생각하니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할 수가 없다.

아우 희철은 혼자서 큰 변을 당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피란하여 어떻게 화를 벗어나는가. 그 아내는 잔약해서 본래 뇌통을 앓았고, 또 짓먹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난리가 창황한 때에 어떻게 온전함을 얻겠는가. 남상문(南尙文)의 아내가 된 누이는 반드시 적성(赤城) 중온(仲溫)의 집으로 달아났을 것이니 보전함을 얻었을 것이오, 김매(金妹)는 별로 피할 곳이 없으나 제 남편 자정(子定)이 있으니 어찌 몸을 피할 곳이 없는 것을 걱정하리오. 다만 깊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한 집의 몸을 피할 곳이니,...

내 처자는 윤겸 형제가 서울에 있으니 반드시 죽고 사는 것을 같이할 것이나, 다만 윤겸은 일찍이 광묘(光廟)의 영정을 모시고 능소(陵所)에 있었으니 한집의 사사로운 일로 해서 버리고 올 수는 없을 것이고, 윤해는 또한 양모와 처자가 있으니, 창황하고 급할 때에 피차가 주선한 대로 형제가 서로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짓먹이 걷지 못하는 자식들이 있는 터이겠는가. 매양 이것을 생각하면 민망하고 망극할 뿐이다.

우리 아버님 신주는 아우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 종가 선조의 신주는 믿을 사람이 없으니, 만일 버려두고 피해 갔다면 반드시 불에 탔을 것이니 또한 민망하고 걱정되는 터이다.¹⁴⁾

14) 오희문, 「임진남행일록」, 『쇄미록』 1, 39면

위 인용문들 역시 오희문이 가족과 유리된 상태에서 쓴 글로, 여기서는 가족에 대한 오희문의 책임감과 흩어진 가족에 대한 그의 그리움이 두드러진다.

(가)에서 오희문은 가족과 재회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족들을 두고 남행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남행할 때만 해도 그는 가족과 유리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오희문은 가족과 유리된 상황을 슬퍼하면서, 자신의 부재 속에서 노모와 자신의 자매들, 처자들이 전란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근심한다. 그리고 자신의 처자식이 가장인 자신 없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 그것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맏아들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 구성원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없이 왜적을 피해 숨어다니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을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걱정했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이 이미 죽었을 거라는 비관적인 예감¹⁵⁾을 하기도 한다.

15) 오희문, 「임진일록」, 7월 14일, 『쇄미록』 1, 112면, “또 더구나 어제 현리 백어룡(白於龍)이 군량을 가지고 병사를 따라 강화부에 도착했다가 돌아가는데 말하기를, 흉적은 비단 경기 근처라, 해서·관동도 어느 고을이나 그들에게 함락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곳이 없고 깊은 산 깊은 골짜기까지도 찾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어, 사람들은 모두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다가 만일 적이 오면 도망하여 탄 곳에 숨어 아침에 옹기고 저녁에는 탄 곳으로 가서 혹시라도 그대로 있지 못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모두 잡혀간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종도 없으니 미리 나가서 망도 볼 수가 없고 또 탄 사람들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니 어찌 구렁에 쓰러지는 화를 면했겠는가?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아우·누이는 적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놀라서 동쪽으로 달아나고 서쪽으로 숨어서 산과 내를 넘고 건너서 혹 서로 붙들고 서로 이끌며, 혹 자빠지고 혹 넘어지면서 울고 떠드는 모습을 자세히 생각하니 천지가 망극하여 소리를 내어 통곡함을 깨닫지 못하겠다.”

오희문, 「임진일록」, 8월 29일, 『쇄미록』 1, 130~131면, “금년 안에는 형세가 적을 평정하지 못할 것이니, 산속에 도망해서 숨은 자들이 처음에는 비록 적의 칼날에 죽지 않았어도 필경 지금쯤 반드시 열고 굶어서 죽었을 것이니,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아우·누이를 생각건대 또한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

특히 오희문의 어머니와 아내·딸들·자매는 대부분 집 밖으로 나간 적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았고, 아내는 평소 다리가 좋지 않아 멀리 건지 못하며, 딸들은 어렸다. 게다가 전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조선 시대의 여성들이 가장 없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오희문은 이들의 신변에 대해 자주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¹⁶⁾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나)에서 오희문이 가족들의 피난과 가문의 신주를 걱정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가족 구성원들 각각의 처지를 세심하게 고려하며 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방법을 생각해 내고 있다. 그 구성원은 자신의 노모와 처자, 자신의 형제자매에 이른다. 이들은 오희문이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부양하는 그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신주를 지키는 것 역시 한 집안의 가장인 그의 의무였다. 조선 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신주를 지키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사대부 가장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예였기 때문이다.

한편, (가)와 (나)에서 오희문은 전란 발발 전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떠올리기도 한다.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라는 속담이

니, 오직 날마다 통곡할 뿐이다.”

오희문, 『임진일록』, 9월 20일, 『쇄미록』 1, 154면, “또 요새 서릿바람이 갑절이나 차갑고 누른 뽕나무가 이미 떨어져 곳곳에 나르는 잎이 이미 산길에 가득하니, 깊이 생각건대, 늙은 어머니와 처자·아우·누이가 이 같은 바람과 서리에 어찌 참는단 말인가?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 16) 오희문, 『임진일록』, 7월 7일, 『쇄미록』 1, 80면, “7일... 이날은 곧 칠석가절이다. 금풍은 쌀쌀히 불고 눈썹 같은 달은 고개에 있다. 깊이 생각건대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지금 어느 곳에 있으며 아직도 오늘을 생각하는가. 감회가 더욱 지극하여 슬픈 눈물을 금하기 어렵다.”

오희문, 『임진일록』, 8월 15일, 『쇄미록』 1, 118면, “오늘은 곧 중추가절이다... 늙은 어머니와 처자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생존하고 있는가? 오늘날을 생각하니 더욱 통곡할 일이다... 유희서(柳熙緒)가 그 어머니와 함께 적에게 죽었고, 김순명(金順命) 형제도 또한 죽음을 당했으며, 성중 사람이 반 넘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니, 저같이 인력이 남음이 있는 자도 오히려 면치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늙은 어머니와 처자가 홀로 어찌면할 수 있겠는가. 통곡함이 끝이 없다.”

있다. 정이 들 때는 드는 줄 모르다가도, 막상 헤어지면 그 정이 두터웠음을 새삼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평소 함께 있을 땐 서로 다투거나 소홀해지기 쉽지만, 큰일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서로 떨어져서 만나지 못할 때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관계가 가족일 것이다.

특히 서로 떨어져 만날 날을 기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족과의 사소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족의 부재 속에서, 더 이상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가족 간에 더 많이 소통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거나, 자신이 가족들에게 부족했거나 잘못된 일만 떠올리기 쉽다. 부모로서 자식을 꾸짖은 일이나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나 부모의 속을 썩인 일에 대한 죄송함, 형제자매 간에 서로 다툰 일에 대한 미안함 등이 그 예이다. 서로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게 미안함이나 오해가 있더라도 이를 해명하거나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오희문 역시 한 가족 내의 구성원으로서, 누군가의 아들·오빠·남편·아버지였기에 이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가)에서 오희문은 가족과 못 만나게 될 줄 알았더라면, 평소 가족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고 후회한다. (나)에서 그는 가족 구성원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들의 건강이나 평소 언행을 상세하게 기억해 낸다. 아들로서 어머니가 전란 속에서 마음을 졸이며 식사를 제대로 드시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남편으로서 다리가 아픈 아내가 제대로 피난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며,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아들들을 꾸짖은 것을 미안해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중 맏이로서, 아우와 자매의 안위를 걱정한다. 평소에 같이 생활했던 가족이라도, 전란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과 서로 간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족에 대한 그의 걱정과 애뜻함은 더 절절하게 드러난다. 이를 통해 오희문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다.

앞서 언급했듯, 오희문이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들었던 당시에 그는 전라남도 장수군에 있었다. 이때 전라도는 민심이 요동치긴 했지만, 경상도·충청도와 달리 왜적의 직접적인 공격로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¹⁷⁾ 그러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선조(宣祖)의 파천 및 조선의 패전 소식들이 오희문에게 들려오더니, 마침내 왜적이 전라도 금산성·무주·용담 및 장수군 북쪽 고천면(孤川面)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오희문은 처남인 이빈과 함께 영취산(靈鷲山)으로 피난하여 석천암(釋川庵)·서남사(西南寺) 등으로 숨는다.¹⁸⁾

산속에서의 오랜 피난 생활로 인해 오희문은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¹⁹⁾, 가족에 대한 그의 걱정과 슬픔은 더욱 깊어져 간다. 특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은 꿈으로도 발현된다.

(가) 3일... 새벽에 꿈을 꾸니 아내도 같은 집에 있는데 완전히 평일과 같다. 막내딸 단아는 분을 바르고 깨끗이 단장했는데, 내가 무릎 위에 안고 앉아 그 볼을 만지면서 말하기를, “너도 내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니 울면서 눈물을 방울방울 흘리다가 바야흐로 아내와 각각 헤어져 있던 외로움을 말하는데,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깨니 몸은 나무 밑에 누워 있고 동방이 이미 밝아 온다. 꿈속의 일을 깊이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다. 난리가 난 뒤로 세 번 꿈속에 보이니 살았는가, 죽었는가. 어찌해서 이렇게 자주 내 꿈에 보이는가. 늙은 어머니는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꿈속 일은 비

17) 하태규, 「임진왜란 초 호남지방의 실정과 관군의 동원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역사문화학회, 2013, 44~46면.

오희문, 「임진남행일록」, 『쇄미록』 1, 36면, “또 이 고을은 지금 놀라고 급한 일이 없고 조석 식사도 옛날과 같으니, ... 영남 사람에게 들으니 섬 오랑캐들이 화를 꾸며 민심이 흩어지는데도 이를 막는 자가 없다고 한다.”

18) 서병패, 위 논문, 78~90면.

19) 오희문, 「임진일록」, 8월 1일·5일, 『쇄미록』 1, 94~95면.

룩 헛일이지만 꿈속에서라도 한 번 뵙고자 해도 또한 되지 않으니, 내 정성과 효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비통함이 더욱더 심하다.²⁰⁾

(나) 14일. 산속에 있어 바위 밑에서 잤다. 밤에 꿈을 꾸니 나에게 막내 아들이 있는 것 같아 나이는 겨우 4~5세인데 병을 얻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내가 무릎 위에 앉히고 있더니 갑자기 죽어간다. 즉시 아내에게 도로 주고 소리 내 통곡하고 금시에 깨었으니 이는 무슨 징조인가? 나에게 네다섯 살짜리 아들이 없는데 꿈 징조가 이와 같으니 생각건대 내 처자가 떠돌다가 반드시 구덩이에 쓰러져 죽은 것이로다.²¹⁾

(다) 9일.... 또 지난밤 꿈에 완전히 아버님을 뵈었는데,... 내가 또 말하기를 우리 처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지는 대답하시기를, 너의 처자는 그저께 배를 타고 제주로 들어갔느니라 한다. 나는 다시, “호남에서 올라올 때 여기 오면 만날 것이라 했더니, 이제 제주로 갔더니 속히 우리 자녀를 볼 수는 없겠군요. 가련하고 가련합니다.”라고 하고 그대로 눈물을 흘렸으니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²²⁾

(라) 6일. 절에 있었다. 밤 꿈에 윤해를 보았는데 완전히 옛날과 같다. 내가 말하기를, “네 아우 윤함이 그때 황해도에 있었는데, 왜적이 물러갔다고 하니 필시 죽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윤해는 대답하기를, “그놈이 왜 죽습니까. 들으니 잘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헤어진 후로 한 번도 꿈에 뵈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보이니, 깨고 나자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내와 윤겸도 또한 어렴풋이 보았는데 그 면목이 자세치 못하니 슬프고 슬프다.²³⁾

네 인용문은 모두 오희문의 꿈에 가족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가)의 꿈은 오희문의 아내와 막내딸 단아가 나오는 꿈이다. 아내와 단아의 모

20) 오희문, 「임진일록」, 7월 3일, 『쇄미록』 1, 77면.

21) 오희문, 「임진일록」, 8월 14일, 『쇄미록』 1, 112면.

22) 오희문, 「임진일록」, 8월 9일, 『쇄미록』 1, 97면.

23) 오희문, 「임진일록」, 9월 6일, 『쇄미록』 1, 144~145면.

습은 평소와 같았고, 오희문은 평소처럼 두 사람과 대화도 했다. 아내와의 대화 내용은 헤어졌던 가족이 서로 재회한 뒤 회포를 푸는 것이었다.

그러나 꿈에서 깨고 난 뒤 그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다. 이는 그가 꿈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재회하여 함께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괴리감에서 오는 슬픔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리워하는 사람인 어머니는 꿈에서조차 나오지 않았기에, 오희문은 더 슬퍼한다. 이는 그리워하는 사람을 꿈에서조차 볼 수 없음에 대한 슬픔일 것이다.

(가)의 꿈은 오희문을 슬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꿈을 통해 그의 소망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의 재회로, 가족과 재회하길 바라는 그의 소망이 꿈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희문이 가족과 유리되었던 기간 중, 그의 꿈에 자주 등장했던 가족은 그의 아내였다. 오희문의 아내는 그가 산속에서의 피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두 번 등장했고, 이후로도 오희문의 꿈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의 꿈에 나왔던 아내의 모습은 (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 없었다. 아내가 등장하는 꿈에서 깨고 나면 오희문은 아내의 생사 여부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으로 슬픔에 잠긴다. 꿈은 무의식의 발현이자 심리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의 꿈에 아내가 자주 등장한 것은 그가 아내를 그만큼 생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나)는 1592년 8월 14일의 기록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린 아들의 죽음에 대한 꿈으로 시작된다. 전란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중에 누군가가 죽는 꿈은 오희문에게 불길한 징조로 다가왔을 것이다. 특히 죽은 이가 자신의 어린 아들이었다는 점은 그로 하여금 자연스레 가족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간밤의 꿈이 처자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하며 슬퍼한다. 이는 전란 속에서 가족의 무소식과 가족과 재회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불안감이 꿈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와 (라)는 오희문이 꿈에서 다른 가족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의 꿈에는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희문에게, 오희문의 처자식이 제주도로 갔다고 한다. 비록 꿈이었지만, 오희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듯하여 슬퍼한다. 그러면서 꿈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라)의 꿈은 오희문이 오윤해와 대화하는 내용이다. 오희문은 오윤해에게 오윤함이 죽었을 것이라 하자, 오윤해는 오윤함이 잘 살아 있다고 한다. 오윤해와 오윤함은 모두 오희문의 아들이다.

실제로 이들 꿈을 꾸었을 당시 오희문은 처자식의 정확한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그만큼 그가 처자식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비록 꿈이었지만, (다)에서 보이듯 오희문과 처자식은 상봉하기 힘들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심지어 (라)에서 오희문은 자기 스스로 아들이 죽었다고 예감했다. 이는 이 당시 오희문이 처자식의 신변에 대해 비관적인 예감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처자식과 재회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오희문은 가족과 유리되었던 동안 가족의 꿈을 꾸었다. 이는 가족의 안위에 대한 오희문의 걱정과 불안으로 연결되었으며, 꿈에서는 만나도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그의 그리움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와 동시에 꿈은 그가 그만큼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오희문의 꿈에서 그의 어머니는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머니에 대한 오희문의 걱정과 그리움 역시 깊었다. 이는 그가 명절이나 사소한 사물을 통해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생일에 어머니의 고생을 언급한 것, 한가위에 햇곡식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한 것, 가을 풍경을 구경하다가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부모님 생각에 눈물을 흘린 것 등이 그 예²⁴⁾이다. 이 역시 전란으로 인해

24) 오희문, 『임진일록』, 8월 15일, 119면, “ 또 비로소 햇밤과 햇대추를 보았는데,

어머니와 단절된 상황 속에서 비롯된 감정일 것이다.

1592년 4월 임진왜란 발발 직후 가족과 단절된 오희문은 6월부터 9월 까지 산속에서 피난 생활을 했다. 그러다 왜적이 같은 해 9월 21에 금산에서 철수하자, 오희문은 9월 22일에 산에서 나와 장수관아(長水官衙)로 돌아오게 된다. 그동안 오희문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가족의 신변에 대해 불안해하며 비판적인 예감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족의 부재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실감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심리는 가족에 대한 꿈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가족과 재회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²⁵⁾

같은 해 9월 27일 오희문은 자신의 노비인 송이(宋伊)로부터 아내와 자식, 자신의 누이, 친척들의 소식을 듣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이런 햇것을 보니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여 감창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다.”. 오희문, 『임진일록』, 9월 7일, 145면, “시내 흐름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흘러가는데, 부모 생각하는 한마음은 저 물과 함께 길구나. 그대로 눈물이 흘렀다.” 오희문, 『임진일록』, 9월 9일, 146면, “늙은 어머니와 처자들과는 사생을 모르고 헤어져 있으니, 어디를 떠돌아 입에 풀칠하면서 서로 우는가. 이 명절을 당하니 생각이 더욱 심하다. 인정이 여기에 이르르면 어찌 슬픈 감회가 없으랴. 국화 한 송이를 꺾어 드니 슬픈 눈물이 가득히 솟는다. 황천이 감동하고 도와서 우리 늙은 어머니를 살려 주시어, 명년 오늘날 수석(壽席)을 마련해 놓고 각각 서로 생각하던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기쁨을 생각지 못했다고 하면 그 다행함이 어떠하겠는가. 길이 빌기를 마지않는다.”

- 25) 오희문, 『임진일록』, 7월 7일, 『쇄미록』 1, 80~81면, “차라리 한 번 죽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싶다. 그러나 어렵게 달아나 피해서 여생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저 하늘이 반드시 화를 내린 것을 뉘우칠 때가 있을 것이요 흉적도 또한 오래 머무를 운수가 없을 것이니, 조금만 죽지 않고 살면 다시 중흥한 해와 달을 보고 늙은 어머니와 처자와 아우·누이와 다시 만나고자 하기 때문이다.” 오희문, 『임진일록』, 7월 25일, 『쇄미록』 1, 89면, “매양 피차가 헤어져 떠돌아 수많은 괴로움을 겪은 지가 세월이 비록 오래였어나, 만일 각각 여생을 보존할 수 있으면 반드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늙은 어머니와 처자·아우·누이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생전에 만나보지 못할 것이다. 밤낮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천지신명도 또한 반드시 감동할 것이다.”

기뻐하며, 어머니와 딸들·손녀들의 신발과 아들들의 이엄(耳掩)을 장만한다.²⁶⁾ 그리고 10월 13일, 홍주(洪州)의 사곡(沙谷) 이언실(李彦實)의 종 돌이의 집에서 오희문은 처자식과 재회한다. 이후 그는 어머니의 소식을 수소문한 끝에, 12월 16일 태안군 소근포에서 어머니와도 재회한다. 마침내 오희문은 어머니와 처자들과 재회하여, 홍주로 모였다가 임천(林川)으로 다 함께 이사하게 된다. 새로이 이사한 곳에서 오희문은 가족과 함께 전란 속에서 일상을 꾸려 나가게 된다.

3. 가족의 재결합과 생계·생존에 대한 근심

오희문은 전란 속에서 몇 달 동안 가족의 생사를 모른 채 가족과 유리되었다가, 마침내 가족과의 재회에 성공한다. 이로써 오희문의 가족은 재결합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과 재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은 종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와 가족은 『쇄미록』이 끝나는 1601년 2월 27일까지 본가인 한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전라도 장수·영암·태인과 충청도 홍주·임천·아산, 강원도 평강 등 객지에서 피난 생활을 한다.²⁷⁾ 전란과 피난 생활 속에서도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종전되기까지 일상을 유지해 간다.

『쇄미록』에 기록된 일상과 가족생활은 임진왜란 이전의 일상과 다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전란 속’의 일상은 ‘전란이 없는’ 일상과 동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전쟁의 속성에 기인한다. 전란은 전쟁으로 인한 난리이다.

전쟁은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交戰)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전쟁은 생사가 좌우되는 극한의 상황

26) 오희문, 「임진일록」, 10월 3~4일, 『쇄미록』 1, 161면.

27) 정성미, 「『瑣尾錄』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5면.

이고, 집단의 차원에서 전쟁은 전쟁 당사 집단의 생사·소멸·변형을 강요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평화의 상태를 정상으로 본다면, 전쟁은 파괴와 살상이 허용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²⁸⁾ 전쟁 속에는 죽음에 대한 위협, 계획되지 않은 수많은 변수와 우연, 굶주림·피로·추위·더위 등으로 인한 고통, 정보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이는 전란 속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안전을 위협한다.²⁹⁾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임진왜란 속 가족의 일상은 전쟁이 없는 일상과는 매우 달랐다.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왜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었고, 전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토와 수많은 사람이 죽은 상황 속에서 질병에 대한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계유지 방법 역시 전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오희문의 근심과 염려는 『쇄미록』에도 잘 드러난다.

먼저 가족의 생계유지에 대한 오희문의 근심과 책임감이다. 전란으로 인해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본가인 한양을 떠났고,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식량을 구하기 힘들어졌다. 전란으로 인해 국토가 유린되어 생산 활동 및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오희문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오희문과 그의 가족이 피난 생활을 하던 전라도는 곡창지대로서, 나라에서 식량을 많이 의지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전라도의 논밭은 관리가 안 되어,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가 되었다. 전란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망하여 흩어지고, 논밭에 심을 곡식의 종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³⁰⁾ 즉 전란으로 인해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식량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희문과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

28) 은창일, 『전쟁론』, 집문당, 2007, 19면.

29) 클라우제비츠(김만수 옮김), 『전쟁론』 1, 갈무리, 2006, 148~163면.

30) 오희문, 「갑오일록」, 4월 27일, 『쇄미록』 1, 408~409면.

여, 조선의 백성들이 식량난과 생계유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된다. 특히 당시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餓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기에, 오희문과 그의 가족에게 식량 확보는 생계를 유지하는 길이었으며, 식량 확보를 통한 생계유지는 곧 생존과 직결되기도 했다.

(가) 18일. 오늘은 동지다. 팔죽을 쑤는 날인데 팔을 얻지 못해서 아이들이 먹지 못하니 탄식한다.³¹⁾

(나) 또 들으니 윤희의 처가 태기가 있어 새달에 해산한다는데 미역을 먹고 싶어 한다고 하나 집에 마침 떨어져서 보낸 것이 몹시 적으니 한탄스러우나 어찌랴.³²⁾

(다) 2월 28일. 함열군수가 전인해서 뱅어 한 동이를 보냈으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다만 양식이 없어서 밥을 지어 먹지 못하고 뱅어만 지져 먹으니 탄식스럽다. 내일은 곧 외조모 제삿날인데, 뱅어탕만 먹으니 가소롭다.

29일. 어제 송노를 정산에 보냈으나 정산군수가 없어서 그대로 돌아왔다. 오직 온 집안이 양식 얻어 오기만 바랐는데 마침내 빈손으로 돌아오니 탄식할 일이다.

3월 1일. 요새 양식이 떨어져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 다만 송피만으로 상하가 같이 씹으면서 긴 해를 보내고 있으니 한탄한들 무엇하랴. 아침에는 나와 두 아들은 함께 공죽 반 그릇씩을 먹었고, 집사람과 세 딸은 전혀 얻어먹지 못하고 긴 해를 지내느라니, 둘째 딸은 낮에 피곤해서 누워 일어나지 못하다가 나물국을 끓여 마신 후에 비로소 안정되었다. 저녁에는 쌀 한 되를 얻어서 나물과 섞어 죽을 쑤어서 나누어 먹었으니, 어른들은 그래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주림을 이기지 못하니 차마 볼 수가 없다.³³⁾

31) 오희문, 「임진일록」, 11월 18일, 『쇄미록』 1, 175면.

32) 오희문, 「기해일록」, 1월 20일, 『쇄미록』 2, 401면.

33) 오희문, 「갑오일록」, 2월 28일~3월 1일, 『쇄미록』 1, 387면.

(가)는 1592년 동짓날의 기록이다. 동지에는 팔죽을 먹으며 액을 막고 잡귀를 쫓는다고 한다. 이에 오희문은 가족에게 팔죽을 먹이고자 하나, 집에 팔이 없어서 가족에게 팔죽을 먹이지 못한다. 이 당시는 임진왜란의 초기로, 오희문과 그의 가족이 피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다. (나)에 나오는 윤함은 오희문의 아들이다. 당시 오희문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모에게 좋다는 미역을 보내고자 하나, 집에 미역이 별로 없어서 소량의 미역만을 며느리에게 보낸다. 이에 그는 임신한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한다.

(다)는 1594년 2월 말~3월 초에 대한 기록이다. 이 당시 오희문은 그의 처자와 충청도 임천(林川)에 있었고, 오희문의 어머니는 충청도 태인에 있었다. 이 시기의 오희문과 그의 이웃들은 집집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오희문의 경우 집에 양식이 없어서 노비들을 자신의 누이 집으로 보내어 먹였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 어려웠을 정도였다.

그는 식량을 얻고자 정산군수에게 노비를 보냈다. 그러나 정산군수는 없었고 노비는 식량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전날 함열군수가 뱀어를 보냈을 뿐,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자들을 넉넉히 먹일 만한 양의 식량이 모이지 않았다. 식량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희문과 그의 처자들은 나무껍질과 죽으로 허기를 면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오희문은 자신의 딸과 손자가 굶는 것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드러낸다.

인용문에서 보이듯, 전란 속에서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식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 식량이 없어서 가족 전체가 굶거나 초근목피로 끼니를 해결하는 날도 있었다.

당장 가족의 배고픔조차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동지와 같은 절기나 집안의 제례, 그리고 며느리의 임신과 같은 집안의 경조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임진왜란 전 한양에서 거처할 때, 한양의 사족으로서 식구들이 많았던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굶주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다. 절기와 제례·경조사를 챙길 음식이 부족하리라는 걱정 또한 없었다. 그러나 전란으로 인한 식량난은 사족이었던 그의 가족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희문은 가족을 위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

(가) 중 안손이 달려와서 장수[이빈]의 부음을 전하니 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내 처자가 살아서 호서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나에게 말하기를 남쪽 고을로 데리고 와서 가까운 이웃에 살도록 하면, 조식으로 물자를 나누어 먹자고 정녕하게 말했었다. 그러므로 처자가 남쪽으로 온 것은 오로지 이것을 믿었던 것인데, 이제 이 지극한 데에 이르니, 비단 마음이 상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집이 다시 의뢰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하늘이 반드시 내 처자로 하여금 길에서 굶어 죽게 하는 것이로다.³⁴⁾

(나) 다만 들으니 함열군수가 부인의 초상을 당했다고 하니 놀랍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한집의 연명을 오로지 함열에게 의뢰했었는데, 불의에 초상을 당했으니 반드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민망스럽다.... 또 환상(還上)은 거친 벼 두 석을 받아 왔다. 넉넉한 수량을 바랐는데 겨우 두 석을 주었다.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청한 사람들은 모두 많이 얻었는데, 나는 관원에게 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인 것이다. 관원의 힘이 도리어 아전의 손쓰는 것만 못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또 집주인의 채마전 두어 두둑을 빌어서 삼색 채소를 갈았으나 너무 작아서 많은 식구가 어떻게 계속해 먹일 수 있으랴.³⁵⁾

(다) 10일. 막정을 함열에 보내서 양식을 구해 오게 했다. 또 송노·한복을 시켜 한복의 매지 않은 눈을 매게 했다.³⁶⁾

34) 오희문, 「임진일록」, 11월 29일, 『쇄미록』 1, 178~179면.

35) 오희문, 「갑오일록」, 5월 5일, 『쇄미록』 1, 411면.

36) 오희문, 「을미일록」, 5월 10일, 『쇄미록』 1, 597면.

(라) 12월 1일... 또 종과 말을 부여로 보냈으니 이는 구호의 물자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또 생원의 말을 팔려고 종 춘기로 하여금 끌고 대흥(大興)장에 보냈더니, 값이 싸서 팔지 못하고 돌아왔다. 말은 많고 풀이 없으니 걱정이다.³⁷⁾

(마) 또 요즘 집안에 찬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터인데 들리는 바에 제주도에서 온 장삿배가 미역을 싣고 가까운 갯가에 와서 정박하고 있다가에 허찬으로 하여금 어제 장에서 닭과 바꾼 쌀을 가지고 가서 미역과 바꾸어 오도록 했더니 이미 다 팔렸다고 도로 돌아오고 말았다. 안타깝다... 23일. 요즘 집안에 먹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굴을 지고 와서 파는 자가 있기에 쌀 3승을 주고 바꾸어서 저녁에 국을 끓여 같이 먹었다....

집안에 반찬거리가 없는데 마침 새우젓을 팔러 소리 지르고 다니는 자가 있어서 불러들였다. 좋은 벼 1두를 주고 4종지와 바꾸었는데 겨우 반 사발이나 되겠다. 쓰임새도 없는 새우젓 값이 이와 같으니 탄 것은 미루어 알 만하다. 곤궁한 가운데 조식을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항차 새우젓을 반찬으로 이야기하다니 말이 안 된다. 집안 형편이 이와 같으니 아픈 아이들이 더욱 먹으려 하지 않는다.³⁸⁾

위 인용문들은 오희문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행했던 일들에 관한 글이다. 먼저 지역의 관리나 지인로부터 식량을 얻어 온 사례이다. 당시 오희문의 아들과 사위, 처남이었던 이빈 등 그의 친지들은 여러 지역의 관리를 역임하고 있었다. 함열군수를 역임했던 신응구(申應渠, 1553~1623)는 오희문의 아들 오윤겸과 친한 친구였다. 이러한 인맥은 전란 속에서 오희문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그는 지역의 관리를 직접 만나 식량과 물자를 구하기도 했고, (다)·(라)에서 보이듯 노비를 관청으로 보내어 식량과 물자를 얻어 오기도

37) 오희문, 「갑오일록」, 3월 4-6일, 『쇄미록』 1, 389면.

38) 오희문, 「병신일록」, 10월 20·23·28일, 『쇄미록』 2, 127~130면.

했다. 그리고 (나)에서 나오듯 관청에 가서 환상곡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에서 보이듯 이빈이 죽고 만다. 이에 오희문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과 물자를 확보할 길이 막혔다며, 가족이 굶을 것을 걱정한다. (나)의 첫 번째 문단에서도 오희문은 함열태수가 상처했다는 소식에 생계를 먼저 걱정한다. 이빈의 죽음과 함열태수의 상처는, 식량을 구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에게 위기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렇기에 오희문은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한 인간의 죽음을 온전하게 슬퍼하기만 할 수 없었다. 식량과 물자 확보가 어려워지면 가족 구성원들이 굶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희문 스스로가 식량을 확보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 사례도 있었다. (나)의 세 번째 문단과 (다)에 나오는 농사가 그것이다. 오희문은 노비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 식량으로 삼기도 했다.

때로는 상행위를 통해 돈을 벌거나 양식을 얻기도 했다. 오희문은 사대부였지만,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상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라)의 경우처럼, 오희문은 노비로 하여금 말과 같은 물자를 팔게 하여 돈을 벌었다. 그리고 상인과의 거래를 통해 필요한 물자나 식량을 확보하기도 했다. (마)에서 오희문은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가지고 상인과 거래하여 새우젓·굴 등을 얻어 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희문은 가장으로서 식량을 구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자 갖은 방법으로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은 굶는 일이 잦았다. 전란으로 인해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희문의 근심은 더 깊어져 갔다.

다음으로 가족의 생존에 대한 염려이다. 임진왜란 중에는 왜적·질병·굶주림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오희문은 전란 중에 왜적이 조선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였다는 소식이나, 특정 지역에서 많은 백

성이 아사하거나 객사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였다. 심지어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전란으로 인해 버려진 가족이나,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거적에 덮인 것을 직접 목격³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희문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란 속에서의 질병은 왜적만큼 개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가족 구성원 일부 혹은 전부의 생명을 앗아갔다. 예방 의학과 방역(防疫)이 발달한 근대사회라도, 전쟁의 발발이나 기근의 유행과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질병의 발생률이 급증한다.⁴⁰⁾

임진왜란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적의 침입으로 선조가 파천하고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공격받으면서 정부의 행정체계가 마비되고, 사회 조직과 위생 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란 속에서 왜적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고, 식량난으로 사람들의 체력과 면역이 약해졌으며, 전란 이전과 달리 사람들은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전란으로 인해 물자의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질병을 치료할 약재를 구하는 것 또한 힘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임진왜란 중에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기 쉬웠다. 당시 오희문이 피난 생활을 하던 전라도 태인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이 많았고, 실제로 오희문은 친지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이가 많다고 했다.⁴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쇄미록』에는 오희문과 그의 가족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학질 등으로 고초를 겪는다. 심지어 가족 구성원 간에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오희문

39) 오희문, 「갑오일록」, 5월 5일, 『쇄미록』 1, 411면.

40) 전종휘, 『한국 급성전염병 개관』, 최신의학사, 1975, 21~22:50~55면. ; 김성우,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 - 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2020, 231면.

41) 오희문, 「갑오일록」, 4월 27일, 『쇄미록』 1, 408~409면.

오희문, 「계사일록」, 11월 15일, 『쇄미록』 1, 322면.

과 그의 가족은 서로 다른 집으로 가 떨어져 지내기도 한다. 오희문은 가족들의 질병에 대해 그 증세와 호전 상태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는 그가 병에 걸린 가족의 상태를 꼼꼼하게 관찰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가족의 건강에 대한 그의 걱정 어린 마음이 드러난다.

(가) 단아 역시 극심한 두통으로 신음하다가 오후에는 인사불성이 되고 말의 조리를 잃으면서 수족이 차가워지고 안색이 또한 변해 가므로 약황으로 부동켜안고 마침 오래 묵은 청심환 1개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갈아 가지고 동변에 섞어 먹이고 또 두 번 먹인 후 얼마 동안 지나서 마침내 소생하였다. 목덜미와 온몸에서 땀이 나고 차차 수족이 더워지기 시작했으나 말하는 것이 아직도 분명하지 못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속이 막힐 듯이 답답하다.⁴²⁾

(나) 이 고을(평강) 태수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 오이지와 가지 그리고 김치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더니 태수가 답장과 같이 구해서 보내 주었다. 단아가 병중에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가까운 이웃에서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태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된 것이다.... 또 단아가 새벽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여전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종일 누워 있으니 답답하고 걱정이다. 큰 병을 겪고서 겨우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깥출입을 조심성 없이 하였으니 찬바람에 감기가 겹쳐서 마침내 도로 아프게 된 것이다. 스스로 자초한 낭패라 하겠으나 원기가 탈진한 상태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⁴³⁾

(다) 2월 1일. 단아는 지난밤 초경 후에 다시 두통이 시작되어 아침까지 아프다고 소리친다. 전일에도 역시 이와 같았으므로 심상히 여기고, 이른 아침을 먹고 수원부사를 가 보려 했더니, 새벽이 지난 뒤로부터 병세가 몹시 더해진다. 내가 들어가 보니 인사를 차리지 못하고 애태우고 괴로운 것이 몹시 심하다. 생원이 껴안고 앉았는데 내가 양쪽 손을 잡았

42) 오희문, 「병신일록」, 9월 24일, 『쇄미록』 2, 113~114면.

43) 오희문, 「병신일록」, 10월 3일, 『쇄미록』 2, 119면.

더니, 조금 있다가 기운이 위로 치밀면서 담 증세까지 겹쳐서 말이 통하지 못한다. 이에 죽력·청소·달걀노른자·동자변 등을 무수히 썼으나 약 기운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고 담과 영켜 끊어서 소리가 나면서 끝내 내려가지 않고 콧구멍으로 도로 나오고 역시 말 한 마디도 하지 못하다가 사시(巳時)에 이르러 엄연히 가 버리니, 붙들고 통곡하니 망극함을 어찌하리오.

지난해 9월 20일에 졸지에 이 병을 얻어 여러 달 동안 고생하다가 여기에 이르러 아주 가 버리니 애통한 마음이 더욱 지극하여 가슴과 창자가 찢어지는 것만 같다.⁴⁴⁾

위 인용문들은 오희문의 막내딸 단아의 병세에 대한 기록이다. 단아는 1596년 9월 20일부터 약 5개월 동안 병으로 앓다가 1597년 2월 1일에 죽게 된다. 오희문은 단아가 죽기 직전까지 단아의 상태와 단아에게 처방한 약재, 치료법을 상세히 매일매일 기록한다.

단아에게 처음으로 병세가 나타났을 당시, 오희문의 기록을 보면 아뿐만 아니라 오희문의 아내와 며느리도 질병에 걸렸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은 치료를 받고 며칠 내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단아의 경우 중간에 잠시 차도를 보이다가, 다시 병이 악화되고 만다.

단아의 증세에 대한 오희문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어린 단아가 병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했음을 보여준다. 오희문은 단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재를 먹이고, 의원을 불렀으며, 단아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구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단아를 살리려는 오희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아는 목숨을 잃고 만다. 단아가 목숨을 잃던 날에도 오희문은 단아의 증세를 비롯하여, 단아가 병을 앓기 시작한 날까지 기록한다. 그만큼 오희문이 단아의 병세를 주의 깊게 살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단아의 병세와 관련한 세세한 기록을 통해,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 오희

44) 오희문, 「정유일록」, 2월 1일, 『쇄미록』 2, 165~166면.

문의 애타는 마음 역시 절절하게 묻어낸다. 특히 단아는 평소 오희문이 아끼던 딸이었기에, 아버지로서 소중한 딸을 잃은 그의 슬픔은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가족의 병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가족에 대한 오희문의 관심과 걱정을 드러낸다. 가족들의 병세가 심화될 때 그는 염려와 슬픔을, 병이 낫는 기색이 나타나면 오희문은 기쁜 마음과 안도를 감추지 못했다.

전란 속에서 겪었던 식량난과 질병은 오희문과 그의 가족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희문은 가족들이 굶는 상황을 한탄하거나 민망해하며, 타인에게 식량을 얻어 오거나 농사·상행위를 하는 등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의 병세를 상세히 기록했다. 기록을 통해 그는 병에 걸린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가족들이 병으로부터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 전란 속에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근심하고, 가족의 건강을 살피는 오희문의 이 같은 모습은 가족애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4. 맺음말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 서로 유리되는 경험을 했고, 약 6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가족과 유리되어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동안, 그의 가족에는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현된다. 그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없이 전란 속에서 위협에 처할까 염려하는 마음을 자주 드러낸다. 이는 그의 어머니와 자매들, 아내, 딸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때로는 가족 구성원의 신변을 비관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가족과의 유리에 대한 절망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전란 전 가족에 대한 기억과 가족

과의 일상을 떠올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실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그의 감정은 꿈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재회 후 본가인 한양을 떠나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한다. 전란 속 이들의 일상은 전란이 있기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전란 속에서 이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하며 일상을 영위하지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질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 시달린다. 이는 전란 체험으로 인해 이들 가족이 겪는 위기라고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오희문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질병에 걸린 가족들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이를 통해 오희문은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 이는 가족에 대한 오희문의 가족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전란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가족의 안위를 염려하고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가족애를 잘 보여준다.

오희문 가족이 겪은 전란 속 위기의 일상과, 그 속에서 오희문이 보여준 가족애는 시대를 넘어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의 경험은 시대적 배경이 조선이지만, 전란 속의 일상이라는 점에서 현대에도 상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소말리아·시리아·아프가니스탄 등, 현대 사회에도 전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분쟁 및 내전으로 인해 일상을 위협받는 상황이 존재한다. 내전 지역의 사람들은 포탄과 기습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롭고, 질병에 걸려도 의료 시설의 파괴 및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국가적 행정과 방역망의 혼란 속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와 식량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이들의 가족 역시 내전 속에서 총과 포탄,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포탄을 피해 서로 유리되기도 한다. 유리된 가족은 극적으로 다시 결합하기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목숨을 잃거나 서로의 행방을 몰라서 영영

재회하지 못하기도 한다.

시대와 양상은 다르지만, 이들 역시 생존의 위협과 가족 간의 이산이라는 위험성이 도사리는 상황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일상을 유지해 나간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 사회에서의 내전 및 국가 간의 전쟁 속의 가족들이 겪는 일상은 오희문의 가족이 겪었던 전란 속 일상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오희문의 『쇄미록』에 담긴 이들 가족의 전란 체험과 위기는, 현대 사회에서 전쟁을 겪고 있을 누군가와 그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란이 없는 평범한 일상과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가족애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 참고문헌

- 오희문(이민수 역), 『쇄미록』 1·2, 올재, 2015.
온창일, 『전쟁론』, 집문당, 2007.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전중휘, 『한국 급성전염병 개관』, 최신의학사, 1975.
클라우제비츠(김만수 옮김), 『전쟁론』 1, 갈무리, 2006.
황패강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 구지현, 「『쇄미록』에서 발견된 허난설헌의 시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14, 열상고전연구회, 2001.
김미혜, 「『쇄미록(鎖尾錄)』에 기록된 16세기 사대부가 절사(節祀)와 세시음식(歲時飲食)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5-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20.
김성우, 「임진왜란과 1593~1594년 계갑대기근 - 경상도 성주 도세순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2020, 217~256면.

- 김성진, 「『쇄미록』을 통해 본 사족의 생활 문화 ; 음식 문화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 김종길·박수호, 「디지털시대의 “가족혁명” - 신화인가 현실인가?」, 『사회이론』 38, 한국사회이론학회, 2010, 143~177면.
-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추탄가문의 사회적 기반과 문화적 지향」, 『해주 오씨 추탄가문을 통해 본』 조선후기 소론의 존재 양상』,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47~228면.
- 김효주,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사대부 오희문의 삶과 교육관」,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미혜, 「조선 중기 수령의 가족 부양으로 본 장자의 역할과 家의 범위」,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 _____, 「『조선 중기 例送·贈送·別送』으로의 처가부양」, 『한국사회학』 42, 한국사회학회, 2008.
- 박인호, 「임진왜란기 지방 이서의 전쟁 경험과 정리 작업 : 이탁영의 『정만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34, 한국사학사학회, 2016, 35~65면.
- 방기철, 「임진왜란기 오희문의 전쟁 체험과 일본 인식」, 『아시아문화연구』 24,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 서병패, 「『瑣尾錄』 解題」, 『서지학보』 8, 한국서지학회, 1990, 75~96면.
- 신병주, 「조선 중기 생활사의 보고 『쇄미록』」, 『선비문화』 17, 남명학연구원, 2010.
- _____, 「16세기 일기자료 『쇄미록』 연구 ; 저자 오희문의 피난기 생활상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 _____, 「16세기 일기 자료에 나타난 꿈의 기록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4, 조선시대사학회, 2015.
- 오동환, 「임란기 平康地方民의 생활상 연구 - 『쇄미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_____, 「오희문의 『쇄미록』에 대하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우인수, 「임진왜란 시 소년 柳紜의 피란 경험과 그 전승」, 『민족문화논총』

- 6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359~396면.
- 유남, 「전란 배경의 韓·中 17세기 가족 이합 서사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유현승,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양반의 경제생활」,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문학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임학성·이민주·차경희·정치영·조현설, 「16세기 일기 자료를 통해 본 양반 사대부의 일상과 의식」, 한국연구재단, 2006.
- 장경남,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325~360면.
-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 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 정성미, 「『瑣尾錄』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조선 시대 사노비의 사역 영역과 사적 영역 - 『쇄미록』에 나타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38, 전북사학회, 2011.
- 정우락,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157~188면.
- 차경희, 「『쇄미록(鎖尾錄)』을 통해 본 16세기 동물성 식품의 소비 현황」,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3-5,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7.
- 하태규, 「임진왜란 초 호남지방의 실정과 관군의 동원실태」,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역사문화학회, 2013, 37~72면.
- 한의승, 「남천 권두문의 “호구일록”을 통해 본 유교이념의 가족윤리 전유 양상과 의미」, 『영남학』 6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53~178면.

■ Abstract

The Oh Heemoon's experience of the war and love for his family on 《Shaemirock》

Kim So Yeon

This paper examines Oh Heemoon(吳希文, 1539~1613)'s experience of a war with his family and love for the family, based on the family's ordinary in a wa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made him part from his family. When he was isolated from his family, he felt sad about his circumstance, worry about his family, missing for family, and presentiment of family's safety. In addition, he dreams about his family, because of his concern for family.

But he finally met again his family, and they started a life of refuge. They were badly off for a living and prevention from disease. In this situation, Oh Heemoon tried to obtain some food and goods for his family, as the head of household. He also carefully checked and meticulously described his family members who were ill. These things were based on his love for the family.

Their experience made us think about a person or family who suffer from wars, ordinary life without wars, and the precious about family.

Key words: Oh Heemoon, shaemirock,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ordinary, love for family

이 논문은 2021년 9월 1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1년 9월 17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경당 장홍효의 가족애 및 가문 형성과 그 의미

-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

김종구*

목차

1. 머리말
2. 장홍효의 가족 사랑
3. 장홍효의 가문 형성과 그 의미
4.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있는가? 본 논의는 경당 장홍효의 『경당일기』를 통해 이를 밝히고자 했다. 장홍효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분석하고, 그 확장된 모습을 확인했다.

장홍효의 가족 사랑은 우선,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집안 구성원의 안녕과 친족의 문제 등을 해결하거나 주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이다. 즉 그의 아내와 딸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다. 그의 딸, 장계향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선비가 행하고 드러나는 면모와는 달랐다. 자연스럽게 외손에 대한 관심으로 전이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모임을 주관하고 제사 및 예례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의 문하생과 동료, 이웃까지 애정을 쏟고 있었다. 나아가 가족 사랑은 향촌사회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졸업.

장홍효의 가족에는 가문을 형성하고 확장하게 된다. 여중군자 장계향의 탄생이 그러하다. 그녀는 효도, 내조, 집안 자제 교육과 관리, 향촌사회 실천 등으로 군자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정신은 손자 이현일 형제에게 이어져 명예로운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영남 사림의 영수인 이현일 역시 가족을 사랑하며, 가문을 이어가고자 자식, 손자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홍효는 퇴계-학봉(서애, 한강, 송암)에게 敬사상과 心學을 전수받게 된다. 장홍효는 敬을 주재하며, 일상에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이 사상은 딸과 외손자에게 전해져 조선의 훌륭한 가문으로 성장하게 된다. 바로 장홍효가 가족에게 敬을 실천함으로써, 후대에 명예로운 가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경당 장홍효, 경당일기, 가족 사랑, 가문, 장계향, 이현일, 이회일, 敬, 心學

1. 머리말

조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가능했는가? 훌륭한 선비가 탄생하기도 어려운 사회이었는데, 이러한 문화는 우리와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敬堂 張興孝(1564-1633)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조선의 성리학은, 즉 위기지학의 수신과 실천을 강조했다. 훌륭한 가문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수신과 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장홍효는 학봉, 서애, 한강, 송암의 제자이다. 주로 학봉계열이라고 하지만 장홍효는 학문에 대한 탐구와 노력은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퇴계의 高足으로 지칭되는바 장홍효는 더욱 모든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결국 그 귀결점은 ‘敬’이다. 퇴계의 心學과 실천을 중시한 敬은 장홍효가 호로 사용할 만큼 평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선비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개 선비들은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신만의 출사 및 학문만 지향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남성중심의 신분사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장흥효의 『경당일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다. 장흥효는 隱求之士이기에 자신의 학문과 제자 양성에 부단한 노력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장흥효의 일상과 생활을 통해 가족애와 가문 형성의 출발점을 찾고자 한다.

장흥효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리학 사상과 학문 및 학단에 관한 논의가 많다. 장윤수¹⁾, 심순옥²⁾이 대표적이다. 성리학, 敬 사상에 대한 언급과 학단의 지형도를 조명하고 있다. 우인수³⁾는 장흥효의 가문의 제사에 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경당일기』의 기록을 통해 당대 안동과 장흥효 집안의 제례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경당일기』에 관한 논의⁴⁾도 소략하고, 장흥효에 대한 연구도 소략하다. 그의 장계향에 관해서는 최근에 대중서⁵⁾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

-
- 1) 장윤수, 「敬堂 張興孝와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성리학에 관한 연구」, 『哲學研究』 99, 2006, 313-365면.
장윤수, 「敬堂及門諸賢錄 연구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性理學界의 동향-」, 『한국학논집』 40, 2010, 321-374면.
장윤수, 「敬堂日記를 통해서 본 張興孝 學團의 地形圖와 性理學的 思惟」, 『哲學研究』 107, 대한철학회, 2008, 329-371면.
 - 2) 심순옥, 「敬堂 張興孝 敬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논문, 2014.
 - 3) 우인수, 「17세기 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 『국학연구』 21, 2012, 445-473면.
 - 4) 김종구는 「『敬堂日記』에 나타난 꿈의 양상과 그 의미」(『南冥學研究』 6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213-248면.)에서 『경당일기』에 기록된 꿈을 분석하고 있다. 장흥효는 꿈 속에서 조차, 문답, 강학, 일상의 敬을 실천하고 이루고자 노력하여, 持敬과 求道를 완성하고자 했다.
 - 5) 장계향의 철학, 여성성 및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논의는 장흥효-장계향-이현일의 가족애, 가문 의식을 중심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전체 선행연구는 제시하지 않고 경향만을 제시한다. 이처럼 장흥효의 『경당일

고 있지만, 신사임당 연구에 비해 이제 시작인 셈이다. 게다가 가족과 관련된 논의는 장홍효의 외손, 갈암 이현일과 존재 이휘일에 관한 논의도 소략하다. 특히 이 집안의 가문의식을 연결해서 논의해 정치하게 분석한 경우도 부족하다. 조선 중기 사대부 및 선비들의 가문의식은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

본 논의는 조선 중기 隱求之士의 가족사랑에서 시작한다. 장홍효는 오로지 학문만을 탐구하고자 했기에, 그의 가족 및 일상에 관한 모습은 중요하다. 신분제 사회의 선비의 가족사랑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과 집안 구성원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당일기』를 중심으로 장홍효의 가족애를 살펴보고, 논의를 확장해 그의 딸과 손자를 인물평과 관련된 글을 통해 가문이 형성되어, 명예로워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를 중심으로 고찰한 부분이 적고, 가족사 및 생활사로 접근 경우는 소략하다. 이하 관련 내용은 생략한다.

장선희, 「장계향의 삶과 철학에 나타난 자아실현 과정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0.

김복희, 「17世紀 張桂香의 生涯에 나타난 意識과 禮節의 現代的 照明 : -禮節이 自己效能感과 家族健康性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권부욱, 「17세기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여성리더십 유형과 현대적 조명 : 여성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자기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최재목, 「聖人을 꿈꾼 조선시대 여성철학자 張桂香」, 『陽明學』 37, 한국양명학회, 2014, 143-175.

장윤수, 「여중군자 장계향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 『퇴계학과 유교문화』 56,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279-312면.

홍순희, 『(조선중기 여중군자 정부인)장계향 삼종지도 3.0』, 빛을 여는 책방,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김서령, 『안동 장씨, 400년 명가를 만들다』, 푸른역사, 2010.

정동주, 『장계향 조선의 큰어머니』, 한길사, 2013.

2. 장흥효의 가족 사랑

1) 집안의 대소사 관리

장흥효는 隱求之士이다. 벼슬을 하지 않은 채 학문과 도를 실천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그의 학문의 요체는 敬이다. 敬은 실천을 담보한다. 敬과 義가 함께 논의하지만, 敬 가운데 실천적 義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장흥효가 일상생활에서 敬을 잘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그의 진솔한 일기, 『경당일기』를 통해서다. 특히 가족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장흥효의 면모는 그의 敬사상과 학문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가) 20일 甲子

집에 病患이 있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

(나) 27일 辛未

머리를 빗지 않았다. ○ 拜禮를 폐하였는데 집에 병환이 있었기 때문이다.⁷⁾

주지하다시피 장흥효는 은일하여 학문만 탐구한 선비이다. 그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敬을 주재해 실천하고자 했다. 『경당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居敬窮理’의 함양과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평소 일상생활 역시 강학, 강론, 담론 등으로 학문에만 전념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흥효는 집안의 대소사까지 염두에 두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6) 장흥효, 『敬堂日記』中, 「(閏八月)二十日[甲子]」, “家有病患, 不得不用慮.”(이하 자명은 생략한다.)

7) 『경당일기』중, 「(閏八月)二十七日[辛未]」, “不櫛, 廢拜禮, 家有病患故也.”

위의 (가)와 (나)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 장홍효는 항상 선조에게 배례를 하고, 머리와 용모를 단정하게 했다. 이처럼 배례를 폐할 경우는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조심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거의 공부일기로 지칭할 수 있는 『경당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장홍효의 집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그 누구보다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가) 23일 丙戌 맑음

金是稅·張裕慶·權尙遠이 찾아왔다. ○ 琴生이 가지고 온 술을 마셨다.
○ 집에 병든 사람이 있어서 芎夏湯을 사용하였다.⁸⁾

(나) 22일 癸巳

李宜寧의 집에 편지를 보냈다. ○ 외숙부가 편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았다.⁹⁾

金是稅은 처숙이다. 金濩(1558-1631)은 학봉의 장남인데, 김시절·김시권·김시강·김시추 등은 김집의 아들 및 조카이다. 학봉의 부인과 장홍효의 모친이 사촌 자매지간이라는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장홍효는 학봉의 제자이었기 때문에 학봉의 후손들은 장홍효에게 와서 배우고 있었다. 비록 강학과 술을 마시며 하루 일과를 보냈지만, (가)에서 보듯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 몸소 궁하탕을 사용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나)는 장홍효가 몸소 외숙부에게 병문안을 가는 장면이다. 장홍효는 주변 친인척에게 자주 편지를 보내고 있는 점도 확인된다. 영해의 이의

8) 『경당일기』 중, 「(五月)二十三日[丙戌]」, “晴, 金君是稅, 張君裕慶, 及權尙遠來見, 飲琴生酒, 家有病患, 用芎夏湯.”

9) 『경당일기』 중, 「(正月)二十二日[癸巳]」, “折簡于李宜寧家, 舅氏有不安節, 往候其門.”

령[사돈], 이회숙[사위]¹⁰⁾, 그리고 딸[장계향]에게 편지를 보내, 집안의 형편과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 즉, “寧海 李宜寧의 편지를 받고 곧바로 답장을 하였다.”¹¹⁾과 “이회숙과 딸의 편지를 받았다.”¹²⁾등의 기록이 많다. 이는 좁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과 나아가 멀리 시집간 딸 가족을 직접 챙기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秀才 李三達의 편지를 받았다. 답장을 하였다.”¹³⁾라고 하며, 어린 외손자에게 받은 편지를 『경당일기』에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외손자 존재 이휘일에 대한 사랑¹⁴⁾이 각별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 17일 壬戌

나쁜 무리들[惡少輩]이 族人이 집에 있지 않은 틈을 타서 난동을 부리기에 가서 일을 해결하였다.¹⁵⁾

(나) 1일 甲辰

權挺立 군·李櫓 형제·再從弟 輔가 찾아왔다. ○ 모든 집이 추위에 떨게

10) 사위인 이회숙과의 편지는 철학적으로 논의한 것이 있다. 사위의 물음에 장흥효가 성과 정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다.(장흥효, 『경당집』 1, 「答李晦叔時明」, 참조)

11) 『경당일기』 중, 「(七月)四日[壬申], “得見李宜寧, 卽答書.”

12) 『경당일기』 하, 「(五月)三日[戊戌]. “得晦叔書及女息書.”

13) 『경당일기』 하, 「(九月)二十四日[乙亥], “得李秀才三達書, 答書.”

14) 장흥효는 「答外孫李徽逸書 癸酉正月十日」(『경당집』 1)에서 손자에게 마음이 지향하는 바, 뜻이 이미 잘 세워져, 점차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인의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주장한 고요한 마음을 보존하고 움직일 때 항상 성찰하여 격물치지, 성의정심의 공부를 권면하고 있었다. (“心之所向, 此志既立, 不爲外物所搖奪, 則他日所就, 其可量歟, 仁義禮智之根於心, 譬如品物之根於土, 苟得其養, 理無不長, 物無不盛, 不得其養, 理無不滅, 物無不消, 靜存動察, 格致誠正之功.”참조) 이는 바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의 실천이자, 心學의 단계인 것이다. 그리고 어린 손자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

15) 『경당일기』 중, 「(七月)十七日[壬戌], “有惡少, 乘族人不在家, 作亂, 往救解之, 姻姪權慶蘭過見.”

되었으니 그 누구를 허물하겠는가?¹⁶⁾

(다) 3일 癸酉

李晦叔 군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였다. ○ 權景元·洪君受 군이 와서 모였다.¹⁷⁾

장흥효는 본인 집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주변 친인척까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는 족인의 집에 불상사가 있었는데, 장흥효가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자신의 추위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의 추위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는 사위인 이시명을 전송하는 장면이다. 이시명은 장흥효의 제자이기도 하다. 그는 『경당일기』에서, “30일 己巳, 이회숙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였다.”¹⁸⁾라고 한 것처럼, 여러 번 사위를 전송하는 장면이 나온다. 제자이자, 사위인 이시명을 전송하는 모습은 다음 장에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장흥효는 “10일 癸丑, ○ 族人의 초대에 나아가 과음하여 안으로 心志를 어둡게 하고 밖으로 威儀를 잃었으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¹⁹⁾라고 하여, 친척 집 또는 주변 교유활동에서 과음을 한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있다. 이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후회와 반성,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居敬을 잃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장흥효는 가정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에서도 조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생각하면 안팎으로 조심하지만, 특히 가정에서의 그의 처신은 가족의 구성원에게 모범을 보이며, 거경

16) 『경당일기』 중, 「十月一日[甲辰]」, “權君挺立, 李君櫓昆季, 再從弟輔來見, 使渾舍呼寒, 誰任其咎.”

17) 『경당일기』 중, 「(三月)三日[癸酉]」, “送李君晦叔還家, 權君景元, 洪君君受來會.”

18) 『경당일기』 중, 「(四月)三十日[己巳]」, “送李晦叔還家.”

19) 『경당일기』 중, 「(十月)十日[癸丑]」, “赴族人召, 飲酒過量, 內昏心志, 外喪威儀, 後悔何及.”

궁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 가짐을 가지며, 장흥효는 집안의 대소사를 살피고, 모범이 되어 집안을 이끌고 있었다.

(가) 3일 丙子

들으니 吳景虛 군이 석방되어 집에 돌아왔다 하므로 무슨 기쁨과 다행이 이와 같겠는가? ○ 밤에 꿈속에서 사람들의 다그침을 받았다.²⁰⁾

(나) 24일 丙申

선현배례를 폐하였다. ○ 權克敬 군이 찾아왔다. ○ 權大立이 질병으로 집에 돌아갔다. 바람이 차가운데 어찌 견디며 가겠는가?²¹⁾

장흥효의 이러한 마음 가짐은, “21일 癸未 비, 『心經發揮』에 마음을 두고 완미한 지 오래됨에 자못 경계하고 반성하는 곳이 있었다.”²²⁾라고 한 것처럼 『心經』에 몰두하며 居敬하는 생활이 몸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강 정구를 뵙고, 심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집에 편지를 보내 가정의 안녕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처럼 장흥효의 편지는 집을 떠나 있을 때 집으로 보내는 편지가 많았다.

위의 (가)는 오경허가 석방되어 집에 돌아온 사실에, 장흥효가 자신의 일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같은 날 일기에 꿈속에서 사람들의 질책을 받아들이며 반성하는 모습은 평소 인자하고 자애로운 장흥효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나)역시 선현에 대한 배례를 폐하고 권대립의 질병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픈 권대립이 찬 바람을 맞으며 가는 모습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장흥효는 이러한 일들을 소상히 『경당일기』에 기록하고 있었다.

20) 『경당일기』 중, 「(九月)三日[丙子]」, “聞吳君景虛得釋還家, 何喜幸如之, 夜夢爲人所迫.”

21) 『경당일기』 중, 「(十一月)二十四日[丙申]」, “廢拜先賢禮, 權君克敬來見, 權大立以疾還家, 風寒, 何以堪行.”

22) 『경당일기』 중, 「(九月)二十一日[癸未]」, “雨, 心經發揮, 潛玩久之, 頗有警省處.”

장흥효는 “28일 癸巳 맑음, 나에게서 道에 거의 가까웠던 顏淵의 학문은 없고, 집에 양식이 자주 떨어졌던 안연의 가난은 있다.”²³⁾라고 하여 안연의 安貧樂道를 추구하고, 학문에 대한 겸손함을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집안의 대소사를 보살피는 한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애정어린 관심을 가졌다. 남의 기쁨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았고, 남의 상사를 자신의 슬픔으로 여겼다. 장흥효는 학문을 탐구하며 수행하는 隱求之士이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주변 동료 제자 등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 『경당일기』에는 敬을 일상, 가족에게 미쳐 실천한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다.

2) 아내와 딸에 대한 관심

조선은 남성 중심의 신분제 사회이었다. 그러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특히 사대부 가문의 선비가 여성에 대한 인간적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 가령 당대에 직접 그러했을지라도, 선비가 직접 기록을 남기긴 쉽지 않다. 당대의 문화를 저버리고, 후대의 인식변화와 그 영향을 위해 과감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흥효는 시대를 앞서 가고 있었다. 여기서 여성 중, 아내와 딸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을 살펴보자.

4일 乙丑 맑음

李晦叔의 처가 解産하는데 날이 이미 辰時가 되었다. ○ 온 집안이 분주하고 바빴다. 집사람이 이 때문에 병이 심해져 집안일을 살피지 못할 지경이 되었으니, 그 민망함을 말할 수 있으랴! ○ 세수하지 못하고 머리를 빗지 못하였다.²⁴⁾

23) 『경당일기』 중, 「(三月)二十八日[癸巳]」, “晴, 無顏氏之庶幾, 有顏氏之屢空.”

24) 『경당일기』 중, 「(十一月)四日[乙丑]」, “晴, 晦叔之妻, 解身, 日已辰矣, 渾舍奔遑, 室人因此, 疾革, 以至不省人事, 其悶可言, 不盥櫛.”

위의 글은 장흥효가 자신의 딸의 아이가 태어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회숙은 李時明(1580-1674)으로 장계향의 남편이다.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활동을 했으며, 161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康陵參奉을 제수받은 인물이다. 1640년에 石溪草堂(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을 세웠다. 1655년에는 英山書堂을 대상으로, 서원 승격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이시명은 英山書院으로 승격시켰다. 이시명은 장흥효와 『주자서절요』 등 여러 경전을 강독한 기록이 『경당일기』에 나온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내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아내는 이회숙의 처, 딸의 해산을 돕고 있으며, 상세히 기록으로 남기고,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아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비는 집안의 일을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평소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져 있다. 장흥효가 당대 여성에 대한 기록을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4일 丁未 맑음, 張汝車·河子偉·李晦叔·金子中·權景元·權汝澄·權景初·洪君受·金子學·金欽卿·權季述·崔極甫·金子高·金直卿·權景淑·李而晦·權子基·權汝安·金敬之·權子平·權克吉·金次得·李再煥·權渾·金而得·權胤宗·南丙生·李再燁·李再煜·權是均·權是精·李敬達·權繼宗 및 朴泰鎮 등 35명이 와서 술로써 대접하였다.”²⁵⁾처럼, 제자 및 교유 인물들이 항상 장흥효의 집을 방문했기에, 그 접대는 아내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여러 차례 일기에다 기록을 남기고 있다. 다음을 좀 더 살펴보자.

25) 『경당일기』 하, 「(十二月)四日[丁未]」, “晴, 張君汝車, 河君子偉, 李君晦叔, 金君子中, 權景元, 權君汝澄景初, 洪君君受, 金君子學欽卿, 權季述, 崔生極甫, 金君子高直卿, 權君景淑, 李君而晦, 權君子基汝安, 金君敬之, 權君子平, 權生克吉, 金生次得, 李生再煥, 權生渾, 金而得, 權生胤宗, 南生丙生, 李生再燁再煜, 權生是均是精, 李生敬達, 權生繼宗及朴泰鎮, 三十五人, 來饋以酒, 奉邀表叔李君彥受氏, 權君時若, 李君伯任, 裴君克紹, 饋之以酒.”

(가) 22일 辛未 비

이른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이미 아기를 낳았다. ○ 어제 庚午 未時에 외손자가 태어났으니, 어떤 경사가 이와 같겠는가? 큰 추위가 지극하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있다고 한 것이 진실로 빈말이 아니다.²⁶⁾

(나) 23일 壬申 맑음

金時亮·柳元之 군이 위문하러 왔으나 예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産室과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不潔할까 모든 일용에 행하는 예를 모두 폐하였다.²⁷⁾

위의 글은 장홍효가 딸의 출산에 관한 기록을 한 것이다. 외손자의 탄생에 기뻐하고, 경사로 생각하며 흥겨워하고 있다. 조선은 남성을 선호했기에, 여느 할아버지처럼 아들의 출생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홍효는 여성 즉 딸의 산실을 신성하게 생각하며 조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평소 일상의 ‘禮’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산실과 멀지 않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죽은 자를 조상하는 것보다, 산 자의 새 생명을 소중히 여겨, 일체 불결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는 바로 자신의 아내이다.

(가)에서 큰 추위가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온다고 비유한 것은 아내의 상사가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에 대한 기록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장홍효는 아내의 병환을 걱정하기를, “20일 己亥 맑음, 꿈이 매우 煩亂하였다. ○ 아내의 병환이 사람을 쇠약하고 늙게 한다.”²⁸⁾, “24일 癸卯 맑음, 아내의 병환이 나날이 심하여 다만 애타는 심

26) 『경당일기』 하, 「(十月)二十二日[辛未], “雨, 侵晨還家, 女息已解身矣, 昨日庚午未時孫男生, 何慶幸如之, 大寒之極, 必有陽春者, 信非虛語也.”

27) 『경당일기』 하, 「(十月)二十三日[壬申], “晴, 金君時亮, 柳君元之來唁, 而未成禮數, 産室未遠故也, 以不潔, 凡日用行禮俱廢.”

려만 더할 뿐이다. ○ 權愼初 씨가 찾아왔다. ○ 李晦叔 군이 단양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아내의 병환 때문에 계속 머물렀다.”²⁹⁾라고 하였다. 그의 염려가 사위의 발걸음을 머물게 했던 것이다.

(가) 6일 壬寅 비

拜禮를 행하였다. ○ 10명이 와서 공부하였다. ○ 李晦叔 군의 편지를 받아보고 딸의 병이 매우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우려되는 마음 견딜 수 없다.³⁰⁾

(나) 3일 癸亥

어제 벗의 초대로 鏡光書齋에 갔다가 바로 돌아왔다. ○ 이회숙의 편지를 받고 딸이 출산 후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놀라움과 걱정을 견딜 수 없다.³¹⁾

(다) 3일 戊戌 가뭄

배례를 폐하였다. 7~8명이 와서 공부하였다. ○ 李宜寧의 편지를 받았다. ○ 이회숙과 딸의 편지를 받았다.³²⁾

장흥효는 사위인 이회숙, 즉 이시명과 많은 편지를 주고 받는다. 이시명은 제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딸, 장계향의 남편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그 중 학문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경당일기』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았다. 위의 글은 장계향의 병이 매

28) 『경당일기』 하, 「(九月)二十日[己亥], “晴, 夢甚煩亂, 家間病患, 令人衰老.”

29) 『경당일기』 하, 「(九月)二十四日[癸卯], “晴, 家間病患, 日甚一日, 徒增煎慮而已, 權君愼初氏來見, 李君晦叔欲還丹陽, 以家間病患止.”

30) 『경당일기』 하, 「(三月)六日[壬寅], “雨, 行拜禮, 十人來問字, 得李君晦叔書, 憑悉女息病患極重, 不勝憂慮.”

31) 『경당일기』 하, 「(二月)三日[癸亥], “昨赴友人召, 往鏡光書齋, 卽還, 得李晦叔書, 知女息產後有疾, 无任驚慮.”

32) 『경당일기』 하, 「(五月)三日[戊戌], “旱, 廢拜禮, 七人來問字, 得李宜寧書, 得晦叔書及女息書.”

우 위증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염려되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그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날짜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나)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장흥효는 사위인 이회숙의 편지를 받고 딸인 장계향이 출산 후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놀라움과 걱정을 견딜 수 없어 마음을 다스리며, 『경당일기』에 남기고 있다. 조선의 선비가 여성에 대한 기록을 한다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다. 장흥효는 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았기에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을 하면서도 항상 딸의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에서 장흥효는 딸과의 편지 교류가 빈번한 사실과 그 애정을 알게 해 준다. 장흥효는 이회숙과의 편지뿐만 아니라, 딸인 장계향과도 직접 편지를 주고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편지에 함께 안부와 인사를 나눌 수 있는데, 장계향은 직접 아버지인 장흥효에게 편지를 주고 받으며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날짜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장흥효와 딸인 장계향의 관계는 돈독하고, 인자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와 사랑스런 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에서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 29일 乙丑 저녁에 비

신한촌을 출발하여 저녁에 飛蓋里에 도착하였다. 그 곳에 머무르며 氷月軒에서 雲岳 어른을 뵈었다. 이회숙 군과 딸 및 어린 손자가 문밖에서 기쁘게 맞이하여 그대로 雲麓堂에서 하루를 묵었다.³³⁾

(나) 11일 丙子 맑음

이 날 집으로 돌아오려고 운악 어른께 인사하였다. 또 딸 및 어린 손자와 작별하려니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별의 아픔이 밀려온다. 이회숙

33) 『경당일기』 하, 「(三月)二十九日[乙丑], “夕雨, 發神漢村, 暮投飛蓋里, 謁雲岳丈于氷月軒, 李君晦叔及女息弱孫, 歡迎于門外, 因留宿雲麓堂.”

이 멀리 30리 밖까지 전송 나왔으니 성의가 지극하다. 眞城의 金會之
군 집에서 유숙하였다.³⁴⁾

위의 글은 雲岳 李涵(1554-1644)의 생신을 맞이하여, 영해(지금 영덕)를 방문한 기록이다. 이함은 이시명의 아버지로, 장계향의 시아버지가 된다. 장흥효와 이함의 관계는 사돈지간인 것이다. 『경당일기』에서는 “어제 寧海의 고을 수령에게 편지를 보냈다.”³⁵⁾처럼, 장흥효가 李宜寧에게 보낸 편지가 많다. 이함은 자는 養源이고, 大海堂 黃應淸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학봉 김성일 형제와 교류하며, 심성 수양법을 배웠다. 장흥효는 이함이 의령현감을 지냈기 때문에 이의령이라고 편지를 보낸 듯 하다. 이함의 아들, 이시명과 함께 보내는 편지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추증이 간다.

비개리는 지금의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의 마을로, 뒷산이 학이 날아갈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나아가 장흥효는 “3일 戊辰 맑음, 李晦叔군의 형제, 李景顯·柳元定과 함께 나는 듯이 觀魚臺에 올랐다. 주위의 모든 산이 공손히 읊하는 듯하고 푸른 바다가 끝도 없이 아득히 펼쳐진 것이 참으로 人世의 경치가 아니었다. 대 아래에는 온갖 소나무가 울창하였는데, 사람들이 전하기로는 奉·李·盧 세 수령이 심었기 때문에 ‘奉松亭’이라 명명했다고 하였다. 종일 실컷 감상하다가 저녁 무렵에야 돌아왔다.”³⁶⁾라고 한 것처럼 사위와 함께 동해에서 노니는 풍류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풍류보다는 (가)에서 알 수 있듯이 장흥효는 딸과 손자를 만나는 기쁨이 더 컸다.

34) 『경당일기』 하, 「(四月)十一日[丙子]」, “晴, 是日還家, 拜辭雲岳丈, 又與女息及弱孫別, 不覺離情酸苦, 李晦叔, 遠送于一舍之外, 誠意之致也, 宿于眞城金君會之家.”

35) 『경당일기』 중, 「(正月)二十三日[甲午]」, “昨, 折簡于寧海倅.”

36) 『경당일기』 하, 「(四月)三日[戊辰]」, “晴, 與李君晦叔兄弟, 李景顯, 柳元定, 飛上觀魚臺, 衆嶽拱揖, 滄海極望無際, 非人境也, 臺下萬松, 蔚蔚蒼蒼, 人傳云, 奉李盧三倅所植, 故因名奉松亭焉, 飽賞終日, 乘暮而還.”

장홍효는 영해에 거주할 동안 딸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과 함께, 이함과 책상을 마주하며 『퇴계집』·주자글·『주역』·『서경』 등도 논하고 있었다. (나)는 짧은 가족과의 만남을 아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홍효는 딸인 장계향과의 이별이 가슴 아픈 것이다. 어린 손자와의 이별은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이에 사위인 이시명이 30리 밖까지 전송하니, 얼마나 가족간의情理가 가득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홍효가 가진 아내와 딸에 대한 관심은 지극했다. 첫째 부인이 사별하고, 뒤늦게 둘째 부인을 맞이했지만, 자식 또한 자신의 딸보다 늦게 태어난다. 그는 둘째 부인에 대한 기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고, 장계향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다. 하지만 장계향은 둘째 부인을 맞이할 때 몸소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도 있다. 장홍효는 이러한 장계향에 대해 그 애정이 남달랐다. 장홍효가 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장계향은 훌륭한 인품을 간직한 여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훗날 장계향은 효녀가 되었고, 시부모도 잘 섬기고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 교육도 잘하고 손자, 손녀도 지극히 사랑하는 여중군자가 된다.

3) 모임 및 제사와 예례의 참석 주관

장홍효는 은일을 하여 학문만 탐구했던 것은 아니다. 집안과 마을, 그의 스승, 동료, 제자들과 모임을 하며 교유를 하였다. 먼저 그의 집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다. 이는 그의 명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집안의 제례를 꼼꼼히 챙기고, 주관하기도 했다. 그러지 못한 경우도 기록하고 있다. 당대 제사문화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장홍효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한 예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와 같은 예를 주변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장홍효의 가족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향촌사회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장홍효를 중심으로 모임 및 회합을 한 경우이다.

(가) 22일 癸亥

선현 배례를 폐하였다. ○ 마을 사람 및 젊은 벗 십여 명이 와서 모였다.

○ 權武伯이 왔다.³⁷⁾

(나) 8일 甲辰 맑음

拜禮를 행하였다. ○ 14명이 와서 공부하였다.³⁸⁾

(다) 17일 己未

族人の 초대에 나아가 한참 지나서야 돌아왔다.³⁹⁾

장흥효의 집은 강학처이었다. 주변 동료와 제자들이 찾아와 배움을 청하거나, 강학을 하는 곳이었다. 긴장과 이완이 조화를 이뤄야 하듯이 공부뿐만 아니라 작은 모임, 회합이 이뤄지고 있었다. (가)처럼 벗이 모여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 (나)처럼 무리가 와서 공부를 하기도 했다. (다)처럼 장흥효가 초대를 받아 소소한 모임을 이루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장흥효의 명성과 인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후에 퇴계-학봉-장흥효-이현일을 잇는 학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장흥효는 송암 권호문, 서애 류성룡, 한강 정구에게도 배움을 받았다. 작은 모임과 회합이 장흥효의 학문과 학통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된다. 바로 장흥효 집에서 이뤄진 회합은 문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장흥효의 학단이 굳건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장흥효의 「及門諸賢錄」⁴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흥효의 外孫 存齋 李徽逸이 편찬한 것이다. 현재 「급문제현록」에는 총 221명이

37) 『경당일기』 중, 「(二月)二十二日[癸亥], “廢拜先賢禮, 洞人及少友十餘人, 來會, 權武伯來.”

38) 『경당일기』 하, 「(三月)八日[甲辰], “晴, 行拜禮, 十四人來問字.”

39) 『경당일기』 중, 「(十二月)十七日[己未], “赴族人召, 移時乃還.”

40) 장윤수(『敬堂及門諸賢錄 연구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性理學界의 동향-』, 『한국학논집』 40, 2010, 321-374면.)의 글 참조바람.

등재되어 있다. 바로 『경당일기』에 등장하는 인물, 문집, 만사, 제문 등을 남긴 제자들이다. 장흥효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하생들은 결국 그의 집을 중심으로 모임, 회합, 강학이 자연스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례와 관련된 것을 살펴보자.

(가) 11일 辛卯
집에서 증조부 기제를 행하였다.⁴¹⁾

(나) 1일 庚戌
再從弟 집에서 고조 기제에 참석하였다.⁴²⁾

(다) 24일 壬申
집에서 외조부 기제를 행하였다.⁴³⁾

(라) 1일 戊申
집에서 俗節禮를 행하였다.⁴⁴⁾

조선 선비의 집안에서 제사 및 제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장흥효는 당대 안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집안의 제사를 직접 주관하거나, 참석 또는 참석 못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장흥효는 친, 외족의 제사를 모두 챙기고 있었다. 제사가 집안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흥효는 4대 봉사의 기제사를 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四時祭를 지낸 기록이 나온다. 사시제는 춘하추동의 중간 달, 2·5·8·11월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節祀, 俗節禮라고 표현하면서, 당연히 명절 제사도 지내

41) 『경당일기』 중, 「(八月)十一日[辛卯]」, “行曾祖父忌祭于家.”

42) 『경당일기』 중, 「九月一日[庚戌]」, “參高祖忌祭于再從弟家.”

43) 『경당일기』 중, 「(十一月)二十四日[壬申]」, “行外祖忌祭于家.”

44) 『경당일기』 중, 「乙卯一月一日[戊申]」, “行俗節禮于家.”

고 있었다. 항상 4대 명절이 다가오면, 조상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있었다.⁴⁵⁾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불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선조 사당에 배례를 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 예를 행한 경우를 살펴보자

(가) 22일 己亥

松巖先生 향사례를 행하였다. ○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⁴⁶⁾

(나) 27일 丁酉

어제 저녁, 상을 당한 사람의 집에 가서 술과 과일을 제수로 올렸다.⁴⁷⁾

(다) 29일 庚子

어제 表兄 玉璿 군이 방문하였으나 마침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에 그 禮에 답하였다.⁴⁸⁾

『禮記』 「樂記」의, “禮와 樂은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⁴⁹⁾ 와 『논어』 「학이」의, “禮라는 것은 천리의 절문이요 인사의 의칙이다.”⁵⁰⁾라고 한 것은 예를 잘 설명한 것에 해당한다. 주자와 공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장흥효는 마음속으로 항상 敬을 주재하고, 밖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예를 몸소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것이다.

45) 제사와 관련해서는 우인수(『17세기 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 『국학연구』 21, 2012, 445-473면.)의 논의에 자세히 나와 있다.

46) 『경당일기』 중, 「(二月)二十二日[己亥]」, “行松岩先生享祀禮, 夕還家.”

47) 『경당일기』 중, 「(三月)二十七日[丁酉]」, “昨夕, 往致酒果之奠于有喪者之家.”

48) 『경당일기』 중, 「(正月)二十九日[庚子]」, “昨, 表兄玉璿過問, 適出不見, 追答其禮.”

49) 『예기』 「악기」, “禮樂不可斯須去身.”

50) 『논어』 「학이」, “禮者, 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

위의 (가), (나), (다)는 비록 집안의 일은 아니지만, 스승, 마을 사람, 제자에 대한 예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암은 스승이기에 당연히 찾아가서 예를 행해야 된다. (나)처럼 마을의 상사에 항상 찾아가 술과 과일 등으로 제수를 올리고 있었다. 특히 (다)처럼 자신의 출타로 만나지 못한 경우에 다시 이후에 예를 실천하는 경우는 장흥효의 인간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신분의 상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예를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행한 예는 자신의 수양과 함양이 되고, 나아가 집안을 태평하고 조화롭게 하는 이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居敬과 예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7일 戊寅

李櫓 군의 편지를 받았다. ○ 4일 權澗 군의 편지를 받았다. ○ 마을 尊老 李部將의 부음을 듣고 哀痛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 마을은 존로가 가장 많아 장수하는 고을로 수년간 일컬어졌는데 근간에 계속해서 “사망했다.” 하니 슬피 곡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장의 諱는 應福이다. ○ 喪次에 가서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다. ○ 權沆 군이 찾아왔다.⁵¹⁾

장흥효는 집안을 챙기며, 나아가 주변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위의 글은 이를 뒷받침한다. 집안에서 자신의 수양과 아내 딸 집안 사람들을 돌보며, 선조에 대한 예도 지극히 실천하고 있었다.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멀리까지 출타하여 실천을 하고 있었다. 尊老에 대한 예우는 미덕이다. 하지만 직접 실천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는 그가 敬에 실천을 담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벼슬은 하지 않고 근원을 찾아, 수양과 학문만을 탐구했던 장흥효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51) 『경당일기』 중, 「(正月)七日[戊寅]」, “得李君櫓書, 四日得權君澗書, 聞洞中尊老李部將訃音, 不勝哀痛之至, 此洞裏尊老最多, 以壽鄉稱, 數年間相繼云亡, 不能不爲之慟哭, 部將諱應福, 往喪次, 日夕乃還, 權君沆來見.”

마을의 존로들은 그들의 삶과 경험, 성취한 학문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이다. 『경당일기』에는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담론을 하거나, 오히려 존로인 듯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은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장흥효는 이러한 존로의 상사를 애통해하며, 자신의 집안 상사인 듯 슬프게 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직접 상차에 찾아가 예를 행하고, 다시 제자에게 강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선비가 은일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수신과 학문완성이다. 자신을 위한 학문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 명성에 제자들이 찾아들기 시작한다. 그다음에는 제자와 강학을 하며, 여유롭게 유람을 하는 것도 기록으로 남긴다. 하지만 장흥효는 일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가 공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와 향촌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당일기』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과 제례 및 예는 장흥효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어서, 그의 집안을 더욱 仁義禮智 및 敬을 실천하는 가문으로 성장시키게 된다.

3. 장흥효의 가문 형성과 그 의미

1) 여중군자 장계향의 탄생

신사임당에 비해 장계향은 대중들에게 덜 알려진 편이다. 장계향은 최초의 한글 음식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의 저술자로 많이 알려지고 있다. 최근 관련 논저가 나오고 있지만, 그녀의 업적과 명성에 비해 소략한 편이다. 장계향은 장흥효의 딸이자, 李時明의 부인이다. 그리고 갈암 이현일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또 송대 侯夫人은 程顥·程頤 형제를 기른 어머니로 기록되고 있으며,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를 기른 어머니

로 기억된다. 하지만 장계향은 본인의 업적뿐만 아니라, 이휘일·이현일 등 6남 2녀를 대성시켰고, 남편을 훌륭한 학자로 이름나게 했다. 이러한 장계향의 삶은 본원은 바로 아버지인 장홍효인 것이다.

(가) 두려워하여 삼감은 복의 터전이요	懼爲福之基
소홀히 함은 재앙의 문이라	忽是禍之門
경의 때나 사의 때나 마음을 망령되이 갖지 마라	毋忘敬肆間
성스럽고 광폭함 이에 따라 나누어 지노라	聖狂從此分 ⁵²⁾
(나) 성인이 살던 시절 나지 못해	不生聖人時
성인의 얼굴 보지 못해도	不見聖人面
성인의 말씀은 들을 수 있고	聖人言可聞
성인의 마음도 볼 수 있네	聖人心可見 ⁵³⁾

(가)는 장홍효의 「벽에 시를 지어 붙임」이다. 장홍효는 ‘敬’을 주재하여, 실천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그는 벼슬을 하기보다 은일을 하여, 마음을 수양하고 학문을 탐구하고 있었다. 이후 수 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와 배움을 청하고, 함께 노닐며 강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홍효의 삶은 敬을 실천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경당일기』에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 후인들의 모범이 된다. 장홍효의 사상은 그의 딸, 장계향에게 전수되게 된다. 물론 사위인 이시명이 그의 제자이기도 하나, 장계향은 점점 여중군자로 성장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나)이다. 일반적으로 10세 전후에 쓴 것으로, 「성인을 읊음」이다. 그녀의 나이가 10대인 것을 생각한다면, 대단한 포부와 성찰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그녀를 더욱 성장시킨 것은 아버지

52) 장홍효, 「題壁」, 『敬堂集』 1

53) 장계향, 「聖人吟」, 「장계향의 한시와 서간과 시각 메모」, 『장계향학문헌자료(上)』,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

인 장흥효이다. 그는 딸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가지면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딸의 성장을 유심히 관찰 조력했을 것이다. 이미 벌써 장계향은 ‘순 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도를 행하는 사람 역시 것처럼 될 수 있다.’⁵⁴⁾라고 한 안연의 기상을 마음에 품고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부의 휘는 興孝인데 학문을 좋아하고 행실을 독실히 하여 학자들의 사표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이른 바 敬堂 선생이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부인은 성품이 총명하고 자애로우며 효성스러웠고 善言을 듣기를 좋아하였다. 선생에게는 딸 하나뿐이라서 매우 사랑하여 『小學』과 「十九史」를 가르쳤는데 힘들이지 않고 글 뜻을 통달하였다...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 지극히 효도하고 삼갔으며, 60년 가까이 선친을 받들면서 공경하여 서로 대하기를 손님같이 하였고, 매사를 반드시 여쭙 뒤에 행하였다. 전부인의 자식을 기르고 사랑하기를 자기가 낳은 자식과 다름없이 하여 가르치고 꾸짖기를 지극히 하였고, 혼인시킬 때에는 婚需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후하게 하였다. 어린 계집종을 딸처럼 대하여 병이 들면 반드시 음식을 먹이고 간호하여 완전히 낫도록 보살폈고, 잘못이 있으면 조용히 훈계하여 모두 감복하게 만드니, 다른 집의 종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두 부인에게 부림 받기를 원하였다. 가는 곳마다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진휼하고 도와주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근심하였고, 집안이 곤궁하다 하여 게을리하지 않았다. 때로 몰래 물건을 보내어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웃의 외로운 노인들이 모두 그 덕에 감격하였고 祝壽하고 복을 빌며 죽어서라도 반드시 보답하겠다고까지 하였다. 항상 옛 성현의 말은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늘 글 따로 사람 따로인 폐단에 대해 한탄하였다.⁵⁵⁾

54) 『맹자』 「등문공 상」, “舜何人也, 予何人也, 有爲者亦若是.”

55) 이현일, 『갈암집』 27, 「先妣 贈貞夫人張氏行實記」, “父諱興孝, 以好學篤行, 爲學者師, 世所謂敬堂先生者也...性聰明慈孝, 樂聞善言, 先生惟一女, 奇愛之, 授以小學十九史, 不勞而文義通...逮事舅姑, 孝謹備至, 奉承先君子近六十年, 敬相待如賓, 每事必稟而後行, 撫愛前夫人之子, 無間已出, 而教誨課責亦至到, 及當嫁娶, 粧需資給, 厚

위의 글은 이현일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어머니인 장계향의 행실기이다. 비록 아들이 남긴 글이라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반대로 정확한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하고 삶을 경험한 아들 이현일이 기록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제일 먼저 서두에 성씨 소개 이후, 바로 아버지인 장흥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뛰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벌써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된다. 그녀의 이러한 아버지와의 담론은 추후 출가를 하고, 시어른과 남편을 모시며, 아이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

위는 긴 글의 일부이지만 대체로 행실기에 나타난 장계향은 다음과 같다. 장계향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시부모에게 효도하며, 남편 내조를 잘했고, 엄격히 자녀를 교육시켰고, 집안의 모범과 조화를 이뤘고, 향촌을 교화시켰다. 특히 남편에게 『소학』과 性理書를 講하게 하고, 鄉射禮를 통해 선비들이 서로 교류하게 하며, 後學을 권면시킨 점은 훗날의 영예로운 이시명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그녀가 향촌사회에 실천한 모습을 보면 자녀를 대하듯이 했고, 집안의 일꾼과 이웃사람에게 똑같이 선으로 인도하며, 인의예지를 구현⁵⁶⁾하고 있었다.

장계향은 여성이기에 앞서 성인을 지향한 한 인간이었다. 이는 아버지인 장흥효로 인해, 居敬과 心學, 그리고 성인의 학문과 실천에 더욱 다가갈 수 있었다. 단순히 장계향을 여성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시대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사상과 실천을 통해 장계향은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장흥효-장계향의 가문은 점진적으로 이름나게 되고 형성되어 가게 된

於己子, 視小婢使如兒女, 有疾病, 必爲之飲食調護, 俾獲全安, 作過惡, 從容教戒, 使皆化服, 人家僕隸聞之, 莫不願爲之役屬, 所至, 凡有孤惇鰥寡年老無依者, 軫恤賙給, 如己隱憂, 不以貧蹙困窮而有所倦也, 或陰爲饋遺而勿令知之, 隣翁里媪無不感德, 至有祝壽祈福, 死必冥報之願, 常以爲古聖賢言必可師法, 每歎書自書人自人之弊.”

56) 장계향의 사회적 실천은 장윤수의 글, 「여중군자 장계향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에 잘 나타나고 있다.

다. 그 정점은 다음 장에 논의할 갈암 형제 대에서 그 극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2) 갈암 이현일 형제의 명성

퇴계 사후 그 高足들은 우위를 다투고, 점차 그 진통이 심해지게 된다. 즉 17세기 영남학파의 결속이 저해되고⁵⁷⁾ 있었던 것이다. 이즈음 17세기 중후반을 중심으로 영남 사림을 결집한 인물이 바로 이현일이다. 영남 사림의 한 계보가 퇴계-학봉-경당-이현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장흥효가 중요한 지점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영남인으로 처음 遺逸로 천거되어 이조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하늘이 사문을 도우시어	天相斯文
선생이 마침내 태어나셨으니	先生乃生
약관의 나이에 높은 뜻을 지녀	弱齡崇志
이미 높은 명성이 있으셨습니다	已有俊聲
연방이 아울러 우뚝하였는데	聯芳并峙
이에 어진 형이 있으셨으니	爰有賢兄
사려와 역량이 옹호하고	思豪力雄
기상이 원대하셨습니다	厲遠凌空

...

학문은 집안에서 받았고	學承于家
행동은 몸에서 닦았으니	行修于身
의리를 궁구함을 즐거워하고	芻豢義理
항상 성현을 사모하였습니다	夢寐聖賢
마침내 끊어진 맥을 이어	乃尋墜緒

57) 이에 관해서는 김학수의 「갈암 이현일의 학문과 경세론 연구」(『청계사학회』 19, 2004, 89-148면.)를 참조할 수 있다.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니	乃泝乃沿
생각하고 분석하여	乃思乃辨
은미한 이치를 궁구하였습니다	探蹟窮微

...

연세가 더욱 많아져	年齡彌高
도가 높아지고 덕이 완성되니	道尊德成
유림의 영수로서	領袖儒林
사방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儀刑四方 ⁵⁸⁾

위의 글에서 영남은 추로의 유풍이 있었는데, 퇴계가 사종이 되어 그 맥의 이어짐이 끊어질까 두려웠는데, 이현일이 나타나 잇는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이현일은 존재 이휘일, 즉 형이 있어 함께 학문을 논할 수 있었다고 역설한다. 그가 20-30대에는 석계초당 등을 오가며 중형 存齋와 아우 恒在 등 형제들과 함께 강학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흥효-장계항에게 이어받은 가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현일은 영남 유림의 영수가 되어 사방의 모범이 될 수 있었다.

존재 이휘일 역시 『심경』·『근사록』·『성리대전』·『역학계몽』·『주자절요』·『퇴계집』 등을 탐구하여, 성리학의 명성을 이룬 사람이다. 그는 13세 때 외할아버지 장흥효의 문하에 들어갔고, 장흥효가 남긴 외손자의 탄생 기록 및 어릴 적의 편지 등을 봐서도 많이 아끼던 손자이었다. 이휘일은 『맹자』, 『주역』, 周敦頤의 태극설 등을 배우며 가학을 잇고 있었다. 그리고 선현들의 仁에 대한 글을 모아 『求仁略』을 저술하여 아침저녁으로 독송하기도 했다.

사문의 지결을	師門旨訣
누굴 시켜 넓힐 것이며	將誰使闡
洪範을 敷衍하는 일은	極之敷言

58) 이현일, 『갈암집』 「갈암집 부록」 5, 「祭文[權斗寅]

누구에게 하게 할 것입니까	將誰使衍
...	
또한 세상일을 잊지 않아	亦非忘世
진실로 나라의 기둥이셨으니	展也邦楨
자나 깨나 형님은 나라 걱정하여	興言寤歎
훌륭한 정치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出入綸經
...	
지난겨울 수비에서는	首比前冬
대엿새를 모셨는데	五六朝暮
밤새워 다정히 나눈 이야기는	晤言終夕
은둔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非爲遯逋
그래서 의당 나랏일을 함께 도와서	謂宜協贊
큰일을 이루리라 여겼습니다	有潰于成 ⁵⁹⁾

이휘일은 아들이 없었기에, 이현일은 둘째 아들을 양자로 보낸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이휘일은 이현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더욱 슬픈 것이다. ‘사문의 지결’은 바로 장흥효의 학맥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이휘일은 『洪範衍義』를 편찬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 이후 1686년(숙종12)에 이현일이 이 책을 완성했다. 그래서 항상 학문을 강하고 논하는 장면, 홍범에 관한 이야기 등 형인 이휘일에 대한 글이 이현일의 문집에 여러 차례 나온다.

위의 글에서 형을 직접 모시며 답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 더욱 그 우애를 짐작할 수 있다. 이휘일이 장흥효에게 가장 먼저 배웠고, 그의 어머니에게서도 가장 많은 학문과 교육을 받았기에 이현일은 더욱 슬픈 것이다. 비록 짧은 생이지만 이현일과 더불어 이휘일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이었던 것이다. 이현일 가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59) 이현일, 『갈암집』 22, 「祭仲氏存齋先生文」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장흥효와 장계향의 가족애와 가문의 식은 장흥효의 손자 대에 와서 융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이 무더위 속에 물을 건너고 고개를 넘어 삼천리 먼 길을 오느라 정신이 가물가물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홀연 너희들의 편지를 받아 보매 文辭와 筆劃이 모두 진보되었기에 문득 마음이 열리고 눈이 환하였으니 위로되고 후련한 마음 이루 형언할 길이 없더구나. 다시금 바라건대 더욱 부지런히 노력하여 마침내 우리 門戶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거라. 이것이 나의 바람이다.

나는 다행히 水土가 좋은 곳으로 오게 되어 병이 생길 우려는 거의 없게 되었으니 이밖에 다시 무엇을 바라겠느냐. 이만 줄인다.⁶⁰⁾

위의 서간은 이현일이 71세에(1697, 숙종23) 함경도 중성에서 유배를 벗어나, 호남의 광양 땅으로 이배된 후 보낸 것이다. 손자들을 못본지 몇 해가 되었기에, 노년의 이현일은 젊은 손자의 편지글에 즐거워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손자의 학문의 진전과 자신의 다행스러운 처소에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이뤄야 한다는 경계이다.

이현일이 가족에게는 보낸 서간은⁶¹⁾ 근엄하고 애정이 있으며, 늘 학문을 권장하며 힘쓰라고 경계하고 있다. 이 학문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어받은 퇴계의 敬이다. 장계향 역시 正道, 正學, 善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현일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 穰는 그의 중형 存在의 後嗣가

60) 이현일, 『갈암집』 17, 「答諸孫燻 烜 燦 燿 輝 焜 燿 丁丑」, “蒙犯潦災, 跋涉三千, 使我昏昏欲死, 忽得汝等書, 文辭筆畫, 俱至進益, 便覺心開目明, 慰豁不可言, 更願益加勤勉, 終作門戶光榮, 寔所望也, 吾幸得水土好處, 庶免生病之處, 此外更何望, 餘不一一.”

61) 이현일의 서간문에 관한 논의는 권병도의 「葛庵 李玄逸의 書簡 研究」(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9.)에 잘 나타나고 있다. 참조바람.

되었고, 셋째 裁는 부친인 이현일을 모시고 다니면서, 퇴계의 학문과 학통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된다. 그래서 그의 외손 李象靖(1711-1781)에게 전수하여 퇴계학의 학통이 이어지게 했다.

이현일의 「금양급문록」⁶²⁾에는 그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금양은 이현일의 강학처, 고종처이다. 그의 문인은 34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대 영남 사림의 영수로 명성을 얻는다. 이러한 사실로만으로도 장흥효부터 이어온 가학으로 집안의 영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장흥효인 것이다.

4. 맺음말

장흥효는 학봉, 서애, 한강, 송암 등을 통해 퇴계의 心學을 전수받았다. 그는 학문에만 침잠하며 敬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과 실천은 가족의 구성원을 대하는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장흥효의 모범적인 삶과 실천적 행동은 그의 딸 장계향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장계향 역시 아버지처럼 居敬에 종사하여 집안과 향촌사회에 실천을 하게 된다. 바로 이휘일, 이현일 등 형제가 꽃을 피워 가문은 명예로워지게 된다.

『경당일기』는 장흥효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가 공부한 내용, 즉 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일상 생활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 그는 항상 수첩을 가까이 두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아쉽게 『경당일기』가 일부 소실되었지만, 전해지는 일기만으로도 그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의는 『경당일기』에 나타난 隱求之士 장흥효가 가진 가족애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다.

62) 「금양급문록」에 나타난 문인에 관해서는 김학수의 「갈암 이현일의 학문과 경제론 연구」(『청계사학회』 19, 2004, 89-148면.)에 상세히 논의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조선의 선비는 여성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언급이 상세하지 않다. 장흥효의 가족 사랑은 우선 집안의 대소사를 몸소 관리를 했다.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챙기거나, 집으로 찾아온 제자 및 동료의 안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향촌사회까지 뻗어나가게 된다.

다음으로 아내와 딸에 대한 관심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의 선비들은 여성에 대한 언급이 소략하다. 더욱이 조선은 남성 중심 신분제 사회이다 보니, 여성에 대한 언급은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흥효는 여성, 딸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다. 어릴 적부터 성인에 대한 담론을 했고, 아내의 병환을 지켜보는 딸의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딸이 출가한 이후에도, 편지를 주고 받으며, 직접 사돈댁을 방문하여 정한의 회포를 풀기도 하고, 외손자를 지극히 아끼는 모습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장흥효는 집안의 모임과 제례를 참석 주관하였다. 그에게 배우는 문인이 많았기에 직접 관리를 하였다. 많은 사람을 접빈객하는 것이, 항상 아내에게 미안했기 때문이다. 그의 봉제사는 당연한 시대적 책무이었지만, 성실하게 임하고 상세히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그리고 당대 안동 지역의 제사문화를 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향촌사회에 행한 예는 진정한居敬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흥효로 인해 그의 가문은 명성을 점차 가지게 된다. 그 중심에 장흥효가 있고, 이를 잘 전승한 것이 그의 딸 장계향이다. 「음식디미방」의 저자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신사임당에 버금가는 인물이다. 그녀는 남편을 훌륭한 유학자로 만들었고, 시아버지 운악 이함과 향촌사회에 仁義를 실천했다. 장계향은 이회일, 이현일 등 자녀를 잘 교육해서, 아버지의 사상을 이현일에게 전수하게 된다. 즉 그녀는 여중군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장계향으로 인해 이현일 형제는 영남학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퇴계-학봉-장흥효-이현일의 계보가 형성되고, 그는 17세기 당대 영

남 사람의 영수가 되는 명예를 성취하게 된다. 이현일 역시 항상 어머니, 형제들, 자식들을 챙기며, 가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가 유배시 손자와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이를 증명한다. 즉 장흥효의 가족 사랑이 장계향, 그리고 이현일에 이르러서는 가문을 잘 선양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흥효-장계향-이현일 형제 등 다른 문학에 나타나는 가족 및 생활사에 대한 관심이다. 둘째, 퇴계-학봉-장흥효 시대의 가족에 대한 관심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隱求之士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및 향촌사회에 이바지 한 부분이 많다. 그중에 여성과 향촌 구성원[당대 약자]에 대한 관심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장흥효 지음, 강정서 외 옮김, 『경당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12.

장흥효, 『경당집』

이현일, 『갈암집』

『논어』

『맹자』

『예기』

유교넷, 선인의 일상 생활, 일기(<http://diary.ugyo.net/>)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권병도, 「葛庵 李玄逸의 書簡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9.

권부옥, 「17세기 장계향의 생애에 나타난 여성리더십 유형과 현대적 조명

- : 여성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자기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 김복희, 「17世紀 張桂香의 生涯에 나타난 意識과 禮節의 現代的 照明 : -禮節이 自己效能感과 家族健康性에 미치는 影響을 中心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김서령, 『안동 장씨, 400년 명가를 만들다』, 푸른역사, 2010.
- 김종구, 「『敬堂日記』에 나타난 꿈의 양상과 그 의미」, 『南冥學研究』 6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213-248면.
- 김학수, 「갈암 이현일의 학문과 경세론 연구」, 『청계사학회』 19, 2004, 89-148면.
- 심순옥, 「敬堂 張興孝 敬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논문, 2014.
- 우인수, 「17세기 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 『국학연구』 21, 2012, 445-473면.
- 장계향, 「聖人吟」, 「장계향의 한시와 서간과 시작 메모」, 『장계향학문헌자료(上)』, 경상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2.
- 장선희, 「장계향의 삶과 철학에 나타난 자아실현 과정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0.
- 장윤수, 「敬堂 張興孝와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성리학에 관한 연구」, 『哲學研究』 99, 2006, 313-365면.
- 장윤수, 「敬堂及門諸賢錄 연구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性理學界의 동향-」, 『한국학논집』 40, 2010, 321-374면.
- 장윤수, 「敬堂日記를 통해서 본 張興孝 學團의 地形圖와 性理學的 思惟」, 『哲學研究』 107, 대한철학회, 2008, 329-371면.
- 장윤수, 「여중군자 장계향과 운악 이함의 사회적 실천」, 『퇴계학과 유교문화』 56,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279-312면.
- 정동주, 『장계향 조선의 큰어머니』, 한길사, 2013.
- 최재목, 「聖人을 꿈꾼 조선시대 여성철학자 張桂香」, 『陽明學』 37, 한국양명학회, 2014, 143-175.
- 홍순희, 『(조선중기 여중군자 정부인)장계향 삼종지도 3.0』, 빛을 여는 책방,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6.

■ Abstract

Family love and the meaning of Gyeongdang Jangheunghyo's family

- Centered on Gyeongdang Diary -

Kim Jong Gu

Is there a Noblesse oblique in Joseon? This discussion was intended to be clarified through the Gyeongdang Jangheunghyo's Gyeongdang Diary. Jang Heung-hyo analyzed his love for his family and confirmed his extended appearance.

Jang Heung-hyo's love for his family was, first of all, managing the family's major affairs. He was either solving or watching for the well-being of family members and problems of relatives. Next, interest in women. In other words, he was very interested in his wife and daughter. His interest in his daughter, Jang Gye-hyang, was different from that of a scholar in general. It was naturally shifting to a one-handed interest. Finally, he was in charge of family gatherings and attending ancestral rites and ceremonies. His subordinates, colleagues and neighbors were loving him. Furthermore, family love was expanding to the local community.

Jang Heung-hyo's love for his family forms and expands his family. This is the birth of Jang Gye-hyang, a female soldier. She was showing off her superiority by filial piety, support, education and management of household restraint, and practice of local community. This spirit leads to the honor of his grandson, Lee Hyun-il, and the honorable family. Lee Hyun-il, the recipient of Yeongnam Sarim, also loves his family and wants to continue his family, Jang Heung-hyo, who is devoted to his children and grandchildren, will be transferred to Toegye-Hakbong (Seoae, Han River, and Songam).

Jang Heung-hyo presided over the respect and tried to practice it in his daily life. Jang Heung-hyo presided over the respect and tried to practice it in his daily life. This idea was passed on to the daughter and grandchild, and grew into a great family of Joseon. As Jang Heung-hyo practices respect for his family, an honorable family is forming in the future.

108 『가족과 커뮤니티』 4집

Keywords: Gyeongdang Jangheunghyo, Gyeongdang Diary, Family Love, a family crest, Jang Gyehyang, Lee Hyunil, Lee Huiil, respect, the study of the mind

이 논문은 2021년 7월 31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1년 9월 17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김미라*·홍은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논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원이론을 바탕으로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가정건강성 강화를 위한 환경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 6차자료를 사용하여, 총 9602사례 중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고(n=6732), 일하고 있는 여성(n=5441)에 해당하는 3876사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자원은 가계별로 차이가 컸으며, 대다수의 가계들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다. 둘째, 대인적 자원은

*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강사.

**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높고, 친지와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의 순이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결혼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대인적 자원을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맞벌이여성, 가족자원, 경제적 자원, 대인적 자원, 결혼만족도

1. 서론

최근 1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7%로 2016년의 17.8%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이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낮아서 20대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7%로, 96.3%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통계청, 2020).

또한 초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줄어든 생산연령인구가 고령인구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전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여성취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변화하여 여성의

취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가구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로 여겨지던 생계부양의 의무를 여성과 공유하며, 여성의 역할로 여겨지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등을 분담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외벌이 가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계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맞벌이와 외벌이의 경우 크게 차이가 없어서, 맞벌이 여성은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에 처하게 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나아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맞벌이 여성은 다중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정생활 기여도는 높으나, 가정생활 기여도가 높을수록 신체적 피로와 시간제약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인 갈등 및 대체고용에 따른 경제적 지출 등의 이유에서 가정생활만족이 그다지 높지 않다(장병옥·이정우, 1998).

국가나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통상 기혼남의 결혼만족도가 기혼녀의 결혼만족도보다 높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성별차이는 매우 큰 편이므로(이윤석, 2012), 여성의 결혼만족도 제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이 가진 가족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정구성의 기본이 되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를 포함한 가정의 건강과 직결되며, 가정의 건강은 가정을 둘러싼 근접환경에 그리고 광역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역으로 불만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시 미시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는 개인 및 가정뿐만 아

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화와 조작화는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행복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단일요소 척도나 의사소통, 관계평등, 갈등해결, 성만족 등의 6개 ~ 12개 영역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동안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혼과 관련한 인지, 심리, 행동적 측면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결혼의 이득과 비용과 같은 경제학적 요소들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개념화와 측정에 관한 연구들이 가족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해결되어야 하는 부부문제와 가정문제가 여전히 많으며, 또한 가정의 건강성이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주로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특성 변인(김미라 등, 2020; 김소정, 2018; 박주희, 2015; 박태영, 1998; 유공순, 2008; 조혜선, 2003; 최정혜, 2006; Archuleta et al., 2011; Berry & Williams, 1987; Britt et al., 2008; Chung et al., 2010; Dew, 2007, 2008; Mugenda, 1988),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인과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 대인적 특성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으며(권희경, 2009; 김미령, 2009; 김효민·박정윤, 2013; 유계숙 등, 2011; 조성희·박소영, 2010; 조혜선, 2003; Berry & Williams, 1987), 자아효능감, 성격이나 성역할태도 등과 같은 개인심리적 특성 변인(김주현·문형주, 2020; 김효민·박정윤, 2013; 손연정·유문숙, 2008; Dean et al., 2007; Rowan et al., 1995), 노동/여가/가사노동 시간이나 일과 관련된 특성 변인(김경희·공주, 2014; 김미령, 2011; 김숙, 2018; 유성경·임영선, 2016; 이희정, 2010; 정애경·함은혜, 2018; Kalmijn, 1999), 이외에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

이 포함되어 왔다.

먼저 시간과 일 관련 특성 변인으로 노동시간단축, 탄력근무, 육아휴직제, 또 비임금노동 또는 가사노동시간 등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일·가정 균형을 강조하는 이러한 흐름의 연구들은 균형이 삶의 질에 중요함을 인식하지만 아직 여전히 달성하지 못한 문제이고 지향해야 하는 방향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만족도에 일관련 변인을 포함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가정의 문제에 사회적인 맥락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시각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실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기도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재무문제나 재무스트레스가 가족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김숙, 2018; Aniol & Snyder, 1997; Archuleta et al., 2011; Dean et al., 2007; Papp 등, 2009; Vinokur 등, 1996). 가족의 경제적 자원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희소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가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가장 친밀하고 특수한 조직인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대인적 자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대인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연구는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지지, 의사소통 등을 다루고 있는데,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을 한 틀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 현실에서도 교육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추가예산을 투입하거나, 복지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사회·심리적 배려가 없이 단순히 금전만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적인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동안 경외시해 온 대인적 자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Foa, 1971).

모든 가족은 가족원의 목표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족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자녀양육에 있어서 좋은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친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서처럼, 풍부한 경제적 자원으로 부족한 대인적 자원을 보충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양질의 대인적 자원이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보완해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가족자원을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방적, 임상적, 정책적 수준의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가족자원

가족자원은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통한 가족복지의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말하며, 개인별로 그리고 가구별로 보유한 양과 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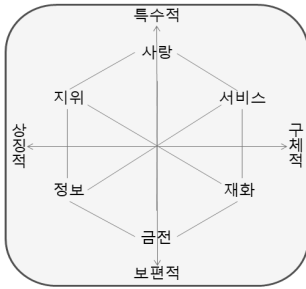
이러한 가족자원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자원은 다시 지식, 태도, 시간 등 개인 자체의 자원을 의미하는 개인적 자원과 리더십이나 배려와 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되고 활용되는 자원인 대인적 자원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비인적 자원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유형자산과 예금이나 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이 이에 포함되며, 물적 자원이라고도 한다.

1971년 Uriel Foa에 의해 처음 공표된 자원이론은 인간이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과 관계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통찰에서 시작하여 대인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 틀에서 자원은 옷이나 꽃과 같은 유형의 재화와 금전, 사랑, 감사 등 사람들 간에 교환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되었다(Foa 등,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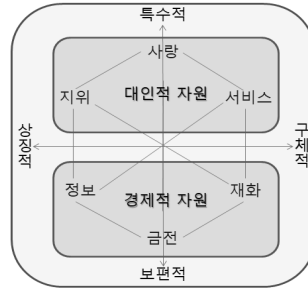
Foa는 이러한 자원을 사랑(love), 지위(status), 정보(information), 금전(money), 재화(goods), 서비스(services)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구체적-상징적(concrete-symbolic)’과 ‘보편적-특수적(particularistic-universal)’을 두 축으로 하는 2차원의 평면에 나타냈다. 각각의 자원 유형은 가까운 두 개의 이웃이 있으며,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의 자원과 거리가 가장 멀다. 즉 각각의 위치는 자원의 상대적 근접성을 보여준다(<그림 1> 참고). ‘구체적-상징적’ 축에서, 재화와 서비스는 활동이나 제품의 교환을 포함하므로 구체적인 자원으로 분류되고, 정보와 지위는 언어적으로 전달되므로 상징적인 자원으로 분류되며, 사랑과 금전은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로 교환되므로 중간에 위치한다. 그러나 ‘보편적-특수적’ 축에서, 사랑은 특정 대상과 관련이 깊어서 특수적으로 분류되고, 금전은 어떤 관계에서든지 동일한 교환 가치를 가지므로 보편적으로 분류되어 서로 반대편에 위치하며, 서비스와 지위는 사랑보다는 보편적이지만, 재화와 정보보다는 더 특수한 자원이다.

대인적 관계에서 재화와 금전을 교환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매우 구체적인 것에 비해, 언어나 미소와 같은 것은 상징적이다. 대인적 관계에서 자원의 교환은 부모자녀 관계와 같이 매우 특수한 경우에서도, 판매자와 구매자와 같은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구체적-상징적’ 차원은 교환되는 자원이 무엇이나 즉 대상물에 관련이 되어서 자원교환을 돕거나 방해하는 환경조건이며, ‘특수적-보편적’ 차원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즉 대상이 되는 사람과 관련이 깊으며 자원교환의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2> 참고).



<그림 1> Foa의 6가지 사회적 자원



<그림 2> Foa의 대인적/경제적 자원

‘특수적-보편적’ 차원의 양 끝에 있는 사랑과 금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면, 지위/서비스와 정보/재화의 차이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보편적 자원(이른다면 금전)을 효율적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문제해결에 특수적 자원(이른다면 사랑)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경제적 자원의 분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한 자원 즉, 대인적 자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Foa, 1971).

자원 이론은 여러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으나, 교환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의 의미에 따라 자원의 유형을 분류하므로 자원의 분류체계에 있어서 여전히 혼동가능성이 있지만, 대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원교환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을 포함하였고, 경제적 자원과 비경제적 자원을 하나의 틀 안에서 개념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러 연구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자원이론은 대인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Rettig와 Bubolz(1983)

는 자원이론이 제안한 자원 간 구조적인 관계가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밝혔고, Berg와 McQuinn(1986)은 교환되는 자원의 유형을 중심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관계의 과정을 조사하였다.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현주 등(2006)은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자원교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수진과 이기영(2011)은 취업모와 학령기 자녀 간의 자원교환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박미석과 김미영(2012)은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하여 가정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수준별로 중년기 기혼남녀를 분류하고 생활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중년기 기혼남녀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대인적 자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Foa의 자원이론에 근거하여, 가족자원을 크게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분류한다.

2) 결혼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① 경제적 자원과 결혼만족도

경제적 측면에서 갈등의 수준이 높으면 결혼만족도의 수준은 낮아진다(이선미·전귀연, 2001). 실제로 부부들은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력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유공순, 2008). 비록 경제적인 문제가 부부갈등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아니지만, 비경제적 문제에 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비교적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Papp 등, 2009).

경제적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의 연구가 다양한 경제적 자원을 고르게 포함하지 않고 소득만을 분석하는 한계를 보였는데, 대체로 소득과 결혼만족도가 정적인 관계(김소정, 2018; 손연정·유문숙, 2008; 유공순, 2008; Archuleta et al., 2011; Berry & Williams,

1987; Chung et al., 2010)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었다(김경희·공주, 2014; 박주희, 2015; 박태영, 1998; 조혜선, 2003; 최정혜, 2006; Britt et al., 2008; Dew, 2008).

자산과 부채 등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Dew(2007)는 자산이 선택의 기회를 늘려주므로 결혼만족도에 정적이고, 부채는 소비를 제한하고 상환시 시간과 금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부적일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으나 자산과 부채 둘 다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Dew(2008)는 소득, 자산, 부채의 변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부채만 부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Mugenda(1988)도 순자산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금융자산이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김미라 등, 2020)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자원으로 소득, 유형자산, 금융자산을 사용한다.

② 대인적 자원과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대인적 자원은 주로 남편과의 관계나 의사소통과 같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들과(김효민·박정윤, 2013; 유계숙 등, 2011; 조성희·박소영, 2010; 조혜선, 2003; Berry & Williams, 1987), 시댁이나 친정 가족들과의 관계(김경희·공주, 2014), 자녀나 친구의 지원(권희경, 2009) 등이 사용되고 있다.

부부관계 요소로 남편과의 관계나 가사분담 등을, 부부관계 외적요소로 시댁가족만남과 친정가족만남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 김미령(2009)의 연구에서는, 남편과의 관계가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시댁가족만남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대부분 단일 문항으로 측

정되었다는 자료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가족 내에서 경제적 자원 자체가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 조혜선(2003)은 자원모델, 성역할관 추가모델, 관계성 추가모델의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여, 결혼만족도는 경제적 자본이라는 객관적 상황만이 아니라, 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성 역할관과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관계성이나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적이고 맥락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한 관계성 추가모델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됨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관계성 척도를 부부싸움양보정도, 외출정도, 의사소통정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이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 연구는, 가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족 외부 지원이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임을 보여주며, 실제적인 측면에서 가족 외부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가족 외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권희경, 2009).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대인적 자원으로 남편과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사용한다.

③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등이 분석되고 있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대체로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남성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소정,

2018; 유계숙 등, 2011; 이윤석, 2012; 최정혜, 2006; 허미화, 2004; Chung et al., 2010; Mohammed, 2016), 여성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보고(Ayub & Iqbal, 2012)와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들(박주희, 2015; 이정은·이영호, 2000; Archuleta et al., 2011; Britt et al., 2008)도 있다.

연령 또는 결혼기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김미라 등, 2020; 김미령, 2009; 김효민·박정윤, 2013; 손연정·유문숙, 2008; 유계숙 등, 2011; 유공순, 2008; 유성경·임영선, 2016; 조성희·박소영, 2010; 조혜선, 2003)이 많으며, 특히, 유성경과 임영선(2016)은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단분석으로,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신혼효과로 결혼초기에 결혼만족도의 수준이 가장 높고, 자녀학령기까지 감소하다가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결혼만족도가 다시 회복되는 U자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김경희·공주, 2014; Berry & Williams, 1987)과 정적인 관계(Archuleta et al., 2011)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김소정, 2018; 박공주·강성금, 2019; Britt et al., 2008)도 있다.

교육수준과 결혼만족도는 많은 연구들이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면서(김경희·공주, 2014; 김나비·유영주, 1999; 김소정, 2018; 박은옥, 2001; Archuleta et al., 2011; Chung et al., 2010), 고학력자들이 결혼생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저학력자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외에도 부적인 관계(Kalmijn, 1999)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하는 연구들(김미라 등, 2020; 김소정, 2018; 김효민·박정윤, 2013; 박주희, 2015; 조혜선, 2003; Berry & Williams, 1987; Britt et al., 2008)이 보고되고 있다.

가구원수 또는 자녀수는 대체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경희·공주, 2014; 김미라 등, 2020; 김미령, 2009; 조혜선, 2003; Berry & Williams, 1987; Britt et al., 2008), 정적 관계(김소정, 2018) 또는 부적 관계에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Archuleta et al., 2011; Mugenda, 1988)도 있다.

이상과 같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연구마다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를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가족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여성가족패널조사의 2016년 6차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만 19세 ~ 64세 이하 여성 약 1만명을 패널로 구축하여, 가구의 기본현황과 소

득, 소비, 자산, 부채 등의 객관적인 가계 재무적 특성을 포함한 가구용 설문, 가족관계, 가족관련 가치관, 일상생활 등을 포함한 개인용 설문, 구직경험, 일만족도 등을 포함하는 일자리용 설문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분석은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9602사례 중에서 현재 배우자가 있고(n=6732), 일하고 있는 여성(n=5441)에 해당하는 3876사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변인의 측정방법

① 가족자원

가족자원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경제적 자원 변인은 월평균 소득, 유형자산, 금융자산이다. 이 중 월평균 소득은 원자료의 지난 1년간 가구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유형자산은 원자료의 거주주택가치를 제외한 유형자산 총액에 자가의 경우 거주주택가격률,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금을, 그리고 월세인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보증금으로 계산한 거주주택 가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금융자산은 원자료의 금융자산 총액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인적 자원 변인은 남편과의 관계, 친지와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로, 남편과의 관계는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을 신뢰한다’의 4문항으로 구성된 남편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크롬바흐 알파 값은 .804이다. 친지와 관계는 ‘친정 형제자매와 서로 간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인가’, ‘친정 형제자매와 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는 편인가’, ‘남편의 형제자매와 서로 간에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터놓고 대화하는 편인가’, ‘남편의 형제자매와 시부모님이나 집안일에 관하여 서로 상의하는 편인가’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크롬바흐 알파 값은 .768이다. 이 문항들은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도록 역점수로 변환하였고,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10문항 중에서 ‘직장 내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도록 역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1>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측정방법

구분	변인	원자료의 변인명	내용	
경제적 자원	월평균 소득	HH03TI03	가구용 원자료의 ‘지난 1년간 가구 총소득’ / 12개월을 연속변인으로 사용	
	유형자산	HH05TA11 H02HS02~5	가구용 원자료의 유형자산과 거주주택가치를 합산하여 연속변인으로 사용(자가주택가격, 전세보증금, 월세((월세*12)/전월세전환율1)+월세보증금)	
	금융자산	HH05FA14	가구용 원자료를 연속변인으로 사용	
가족 자원	남편과의 관계	P07TH01~3 P07TH04A	개인용 원자료를 역점수로 변환하여 평균값 사용	
	대인적 자원	친지와의 관계	P24TK04 P24IF01 P25TK04 P25IF02	개인용 원자료를 역점수로 변환하여 평균값 사용
		직장동료 와의 관계	W02ST06G	일자리용 원자료를 역점수로 변환하여 사용
		결혼만족도	P28ST14	개인용 원자료의 ‘결혼생활에 대한 느낌’ 연속변인으로 사용

1) 전월세 전환율은 통계청 2021년 5월=5.7 적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tblId=DT_30404_N0010

②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현 남편과의 요즈음 결혼 생활에 대한 느낌’을 매우 불행하다는 1점에서 ~ 매우 행복하다는 10점으로 측정된 단일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변인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4)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맞벌이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자원 및 결혼만족도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가족자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족자원 유형별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에는 SPSS 2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여성의 연령, 남편의 연령, 여성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가구원수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더하여 주거점유형태와 여성의 일자리 특성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맞벌이 여성의 연령은 평균 52.42세(표준편차 : 10.81)로 40대가 가장 많은 33.0%였고 다음은 50대, 60대 이상, 30대 이하의 순이었고, 남편의 연령은 평균 55.60세(표준편차 : 11.57)로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34.8%였으며 50대, 40대, 30대 이하의 순이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평균

11.70년(표준편차 : 3.58)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38.8%였고 다음은 대학 이상,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하의 순이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평균 12.43년(표준편차 = 3.51)으로 대학 이상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의 순이었다. 가구원수는 평균 3.4명으로, 4명이 가장 많은 38.5%였고, 2명 이하, 3명, 5명 이상의 순이었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8.7%(n=336)였으며, 이 경우 미취학자녀수는 평균 1.29명(표준편차 : 0.49)이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78.3%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당평균근로시간은 39.69시간(표준편차 : 13.93)이었고, 맞벌이 여성의 종사상지위는 임금노동자가 54.5%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정규직(46.3%)이 비정규직(53.7%)보다 적었으며, 전일제(75.2%)가 시간제(24.8%)보다 많았다.

4. 연구결과

1)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

<연구문제 1>에 따라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① 가족자원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447만원(표준편차 : 263.33)이었고, 유형자산은 약 20,994만원(표준편차 : 16,363.25)이었고, 금융자산은 약 4,116만원(표준편차 : 4,449.46)이었다.

경제적 자원의 모든 변인들은 최소값과 최대값 간의 차이가 크고, 범위가 넓은 것에 비해 1st quartile과 3rd quartile이 모두 중위수에 비교적 가깝고, 중위수가 평균값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가계들이 평

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가계별로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빈도		%	
여성의 연령 M(SD)= 52.42(10.81)	30대이하	409	10.6	남편의 연령 M(SD)= 55.60(11.57)	30대이하	256	6.6
	40대	1279	33.0		40대	1019	26.4
	50대	1232	31.7		50대	1240	32.2
	60대이상	956	24.7		60대이상	1345	34.8
여성의 교육수준 M(SD)= 11.70(3.58)	중학교 졸업 이하	1070	27.7	남편의 교육수준 M(SD)= 12.43(3.51)	중학교 졸업 이하	869	22.5
	고등학교 졸업	1495	38.8		고등학교 졸업	1388	36.0
	대학 이상	1295	33.5		대학 이상	1603	41.5
가구원수 M(SD)= 3.40(1.12)	2명 이하	1021	26.3	주거 점유형태	자가	3036	78.3
	3명	807	20.8		전세	405	10.5
	4명	1491	38.5		월세	306	7.9
	5명 이상	557	14.4		기타	129	3.3
미취학자녀수 (n=336) M(SD)= 1.29(.49)	1명	243	72.3	주당평균 근로시간 M(SD)= 39.69(13.93)	40시간 미만	1224	31.6
	2명	88	26.2		40~60 시간미만	2284	58.9
	3명	5	1.5		60시간이상	368	9.5
여성의 종사상지위	임금노동자	2113	54.5	일자리 구분 (n=2113)	정규직	979	46.3
	개인사업자	773	19.9		비정규직	1134	53.7
	무봉사자	848	21.9		전일제	1589	75.2
	특수고용직 노동자	142	3.7		시간제	524	24.8

4점 척도로 측정된 남편과의 관계와 친지와의 관계는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대인적 자원 변인들은 모두 5점 척도의 중간값인 3점 이상이었으며, 남편과의 관계 점수가 평균 3.59점(표준편차 : 0.56)으로 가장 높았고, 친지와의 관계가 평균 3.54점(표준편차 : 0.61)으로 중간 정도였으며,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평균 3.37점(표준편차 : 0.6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관계와 친지와의 관계는 중위수가 평균값보다 크고 3rd

quartile값과도 같아서, 대다수 조사대상자들이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며, 이와 반대로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중위수가 평균값보다 작아서 대다수 가계들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결혼만족도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의 수준도 대인적 자원 변인들의 값과 비교하기 쉽도록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즉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평균 3.36점(표준편차 : 0.74)으로 세 가지 대인적 자원 변인들의 수준보다 낮았으며, 중위수가 평균보다 컸으며, 각 측정값들이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표준편차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가족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박희정(2017)의 연구에서 보고한 3.48점(표준편차 : 1.25, 5점으로 환산)보다 낮으며, 맞벌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손영미·박정열, 2014)에서 보고한 2.99점(표준편차 : 0.94)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표 3>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수준
(단위 = 만원 / 5점)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사분위수	
						1st	3rd
경제적 자원							
월평균 소득	446.46	263.33	1.25	416.67	3570.00	261.25	583.33
유형자산	20,994.39	16,363.25	546.32	17,200.00	155,000.00	10,000.00	27,500.00
금융자산	4,115.61	4,449.46	9.00	3,000.00	55,000.00	1,300.00	5,000.00
대인적 자원							
남편 관계	3.59	.56	1.00	3.75	5.00	3.44	3.75
친지 관계	3.54	.61	1.00	3.75	5.00	3.13	3.75
동료 관계	3.37	.66	1.00	3.22	5.00	3.00	3.67
결혼만족도	3.36	.74	.50	3.50	5.00	3.00	4.00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연구문제 2>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표 4> 참고).

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자원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적 자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소득은 여성이 40대 이하인 경우, 남편이 50대 이하인 경우, 여성도 남편도 대학 이상인 경우,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높았으며, 유형자산은 여성도 남편도 50대 이하인 경우, 여성도 남편도 대학 이상인 경우,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 높았으며, 금융자산은 여성이 50대인 경우, 남편이 50대 이상인 경우, 여성도 남편도 대학 이상인 경우에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40대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수준이 높았으며, 50대 이하의 경우 유형자산, 50대는 금융자산의 수준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들의 수준이 더 높음을 일관성있게 보여주었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월평균 소득과 유형자산의 수준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적 자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성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고, 남편도 이와 같았다. 여성이 대학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의 순이었으며, 남편은 대학 이상의 경우가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보다 높았고,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가 3명 이하의 경우보다 높았다. 친지와 의 관계와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 여성이 40대 이하인 경우, 남편이 30대 이하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2명 이하인

경우보다 3명 이상인 경우가 높았다.

즉, 연령이 낮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가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았다.

②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30대 이하,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며, 남편도 30대 이하, 40대, 60대 이상의 순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의 순이었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경우가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보다 높았고, 가구원수가 4명인 경우가 3명인 경우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가족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변수	구분	경제적 자원			대인적 자원			결혼 만족도
		월평균 소득	유형자산	금융자산	남편과의 관계	친지와 의관계	직장동료 와의관계	
		평균 / D	평균 / D	평균 / D	평균 / D	평균 / D	평균 / D	
여성의연령	30대 이하	520.55 a	23072.41 a	3492.33 a	3.81 a	3.67 a	3.52 a	3.60 a
	40대	539.31 a	23217.41 a	3974.39 ab	3.66 b	3.62 a	3.46 a	3.43 b
	50대	480.88 b	22204.34 a	4505.36 b	3.53 c	3.52 b	3.34 b	3.29 c
	60대 이상	245.23 c	14699.98 b	4063.96 ab	3.48 c	3.40 c	3.24 c	3.25 c
	F값	317.33***	49.83***	5.41***	45.87***	30.17***	30.10***	28.54***
남편의연령	30대 이하	516.12 a	23842.33 a	3226.56 a	3.89 a	3.71 a	3.54 a	3.69 a
	40대	539.22 a	23873.62 a	3851.26 ab	3.68 b	3.65 ab	3.49 ab	3.44 b
	50대	520.68 a	22178.21 a	4309.52 b	3.57 c	3.56 b	3.40 b	3.34 bc
	60대 이상	296.19 b	16761.93 b	4325.94 b	3.50 c	3.42 c	3.24 c	3.26 c
	F값	272.29***	39.39***	5.49***	47.50***	34.31***	35.53***	29.66***
여성의교육수준	중학교 졸이하	261.72 a	14033.05 a	3867.38 a	3.49 a	3.42 a	3.20 a	3.23 a
	고등학교 졸이하	456.89 b	20169.87 b	3797.96 a	3.55 b	3.53 b	3.36 b	3.31 b
	대학교 졸이하	587.05 c	26948.36 c	4674.80 b	3.72 c	3.65 c	3.53 c	3.52 c
	대학 이상	582.13***	175.29***	13.67***	54.60***	40.54***	75.83***	51.01***
	F값	582.13***	175.29***	13.67***	54.60***	40.54***	75.83***	51.01***
남편의교육수준	중학교 졸이하	253.58 a	13541.50 a	3639.51 a	3.50 a	3.43 a	3.18 a	3.23 a
	고등학교 졸이하	428.21 b	18879.89 b	3804.55 a	3.53 a	3.50 b	3.35 b	3.27 a
	대학교 졸이하	568.51 c	26315.95 c	4658.41 b	3.70 b	3.64 c	3.50 c	3.51 b
	대학 이상	512.38***	178.64***	17.50***	53.57***	39.79***	71.31***	56.83***
	F값	512.38***	178.64***	17.50***	53.57***	39.79***	71.31***	56.83***
가구원수	2명 이하	262.57 a	15478.82 a	4175.58	3.54 a	3.44 a	3.27 a	3.34 ab
	3명	437.77 b	19873.74 b	3945.99	3.54 a	3.54 b	3.38 b	3.31 a
	4명	555.44 c	24288.40 c	4211.97	3.64 b	3.61 b	3.43 b	3.40 b
	5명 이상	503.94 d	22757.32 c	3987.12	3.60 ab	3.55 b	3.39 b	3.34 ab
	F값	17.21***	54.91***	.72-	9.65***	16.58***	11.91***	3.08*

* $p < .05$, ** $p < .01$, *** $p < .001$

3)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

① 독립변인들 간의 공선성

<연구문제 3>에 따라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의 연령과 남편의 연령, 여성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교육수준의 상관계수가 각각 0.959, 0.811로 매우 높아서 이 중 남편의 연령, 남편의 교육수준을 제외하였다(<표 5> 참고).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공차와 분산팽창계수를 통해 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는 0.443 ~ 0.962로 모두 1.0보다 낮았으며, 분산팽창계수는 1.039 ~ 2.257로 모두 10보다 낮아서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를 Durbin-Watson 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1.587로 2에 가까워 잔차에 독립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에는 여성의 연령, 여성의 교육수준, 가구원수가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고, 경제적 자원 변인으로 월평균 소득, 유형 자산, 금융자산이, 대인적 자원 변인으로 남편과의 관계, 친지와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포함되었다. 경제적 자원 변인들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값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 로그(log)를 적용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5>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여성의 연령	1										
② 남편의 연령	.959 ***	1									
③ 여성의 교육수준	-.688 ***	-.697 ***	1								
④ 남편의 교육수준	-.596 ***	-.617 ***	.811 ***	1							
⑤ 가구원수	-.546 ***	-.539 ***	.474 ***	.418 ***	1						
⑥ 월평균 소득	-.403 ***	-.414 ***	.503 ***	.473 ***	.375 ***	1					
⑦ 유형자산	-.177 ***	-.194 ***	.330 ***	.323 ***	.178 ***	.398 ***	1				
⑧ 금융자산	.041 *	.039 *	.098 ***	.118 ***	.002	.353 ***	.199 ***	1			
⑨ 남편과의 관계	-.187 ***	-.191 ***	.146 ***	.144 ***	.068 ***	.178 ***	.081 ***	.091 ***	1		
⑩ 친지와와의 관계	-.165 ***	-.175 ***	.150 ***	.136 ***	.084 ***	.157 ***	.075 ***	.006	.163 ***	1	
⑪ 직장동료와의 관계	-.159 ***	-.172 ***	.208 ***	.207 ***	.076 ***	.199 ***	.129 ***	.056 ***	.128 ***	.089 ***	1

* $p < .05$, ** $p < .01$, *** $p < .001$

②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은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 1>과 이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적 자원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를 추가 투입한 <모형 2>, 대인적 자원 변인들을 추가 투입한 <모형 3>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모형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0.80, p < .001$), 상대적 영향력은 교육수준($\beta=.109$), 가구원수($\beta=-.081$), 연령($\beta=-.076$)의 순으

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이러한 변인들은 결혼만족도 변량을 2.1%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자원 변인들을 추가 투입한 <모형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21.46, p < .001$),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Delta R^2 = .021, p < .001$), 투입된 경제적 자원 변인들의 영향력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량을 4.2% 설명하였다. 또한 <모형 1>에서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변화하였는데, 여성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여성의 연령과 가구원수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유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인적 자원을 추가 투입한 <모형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105.74, p < .001$),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Delta R^2 = .204, p < .001$), 투입된 대인적 자원 변인들 중에서 남편과의 관계와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은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 변량을 24.6% 설명하였다. <모형 2>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여성의 연령과 월평균 소득, 금융자산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하였다.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가지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남편과의 관계($\beta=.433$), 직장동료와의 관계($\beta=.127$), 유형자산($\beta=.068$), 가구원수($\beta=-.0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유형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만족도에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유계숙 등, 2011).

<표 6>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영향력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β	B	β	B	β
상 수		7.242		4.555		-1.93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여성의 연령	-.011	-.076***	-.012	-.083**	.001	.005
	여성의 교육수준	.044	.109***	.016	.040	.014	.036
	가구원수	-.104	-.081***	-.140	-.108***	-.078	-.060**
경제적 가 족 자 원	월평균 소득			.180	.082***	.082	.037
	유형자산			.160	.091***	.119	.068***
	금융자산			.071	.054**	.023	.018
자 원 대인적 자원	남편과의 관계					1.147	.433***
	친지와의 관계					.043	.018
	직장동료와의 관계					.275	.127***
F값		20.80***		21.46***		105.74***	
R ²		.021		.042		.246	
ΔR^2				.021***		.204***	
D W						1.587	

* $p < .05$, ** $p < .01$, *** $p < .001$

③ 가족자원 유형별 맞벌이 여성 결혼만족도의 차이

추가로,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제적 자원 변인인 유형자산과, 대인적 자원 중에서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결혼만족도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고).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제적 자원의 수준은 낮으나 대인적 자원의 수준은 높은 집단, 경제적 자원의 수준은 높으나 대인적 자원의 수준은 낮은 집단, 두 자원이 모두 낮은 집단의 순이었으

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높은 두 집단이,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낮은 두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대인적 자원으로 남편과의 관계 대신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대입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과 가족관계 만족도를 기준으로 유형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박미석·김미영(201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7> 맞벌이 여성 결혼만족도의 이원분산분석

			대인적 자원(남편과의 관계)			F값
			상	하	합 계(n)	
경제적 자원 (유형자산)	상	평균	3.63	3.12	3.34	160.27***
		표준편차 (n)	.61 (983)	.72 (400)	.75 (1383)	
	하	평균	3.53	3.00	3.48	
		표준편차 (n)	.67 (1265)	.76 (730)	.68 (1995)	
합 계(n)			(2248)	(1130)	(3378)	

*** $p < .0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원이론을 바탕으로 맞벌이 여성의 가족자원과 결혼만족도의 수준을 살펴보고,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가정건강성 강화를 위한 환경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적 자원은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자원은 가계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다수의 가계들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별 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가족자원의 관점에서 맞벌이 여성 가구의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족 내적·외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우선 가족내에서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역할분담과 가족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기업은 가족친화정책을 격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여성 일자리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검토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 지원제도의 수준과 내용을 점검하며,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 등 현재 시스템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보다 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인적 자원은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경제적 자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대인적 자원은 남편과의 관계와 직장동료와의 관계였으며, 이 중 남편과의 관계가 더 큰 상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관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편의 이자간의 문제이므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을 포함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지자체의 정책마련을 위한 수요조사는 부부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고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외에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모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조사결과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잔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맞벌이 여성과 그 가정의 건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맞벌이 여성 가구의 대인적 자원의 수준은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높고, 친지와와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의 순이었다. 이러한 대인적 자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원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효과적인 대인적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과 갈등대응전략 등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족자원의 관점에서 대인적 자원의 양과 질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히 가장 낮은 수준인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굳이 전이이론(spillover model)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체계에서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가족이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임계점을 넘으면 큰 충격이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직장동료와의 관계개선은 맞벌이 여성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조모임과 수퍼비전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 외 의사소통개선 등의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료들간 관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갖춘다면 직원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이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결혼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경제적 자원이나 대인적 자원이 상호 복합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과 대인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

으며, 이에 앞서 체계적인 요구사정을 통해 각 가계별로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가들 간의 통섭이 필요하다. 가족상담가는 내담자의 경제적 자원을 깊게 살필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재무상담가는 특히 남편과의 관계를 포함한 대인적 자원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재무문제를 상담하고 코칭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협업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하겠다.

다섯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 그리고 결혼만족도의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족자원 지원 전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대상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은 가계가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수준이 낮았고, 결혼만족도의 수준도 낮았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관계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긴 노인기를 맞이하는 고령층의 경우 가족자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이는 결혼만족도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은 먼저 이들을 타겟으로 하여 개별적 요구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노인일자리제공과 같은 소득증대방안을 확충하고, 또 유형자산이 결혼만족도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 바, 보유 주택을 사망시까지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주택연금제도와 같이 사회적·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요구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인적 자원의 증가를 위해,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의 모든 단계에서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역민의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보

여중으로써, 맞벌이 여성의 복지 제고를 위해 경제적 자원과 함께 대인적 자원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분석을 실시하여 종단적 추이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의 변화와 이로 인한 결혼만족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지 못했으며,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경제적 자원과 대인적 자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소득을 원천별로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식으로 더 세분하거나 대인적 자원에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추가로 본 연구 결과와 맞벌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보다는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희경,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한국가정관리학회, 2009, 59~68면.
- 김경희·공주, 「맞벌이 기혼여성의 시간사용과 결혼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6(4), 한국가족학회, 2014, 139~165면.
- 김나비·유영주, 「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연구 - 학동기 자녀를 둔 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한국가족관계학회, 1999, 81~106면.
- 김미라·민수진·안용주, 「가계경제적 변인과 일만족도가 기혼 직장 여성의

-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3), 한국가정관리학회, 2020, 17~33면.
- 김미령,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26,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9, 35~62면.
- 김미령,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여성연구』 8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69~101면.
- 김소정, 「기혼 직장인들의 직무만족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 폭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8, 61~86면.
- 김숙, 「재무스트레스가 부부간 가계재무관리 갈등 및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주현,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 만족과 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0, 109~126면.
- 김현주·이선이·이여봉,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 자원교환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가족과 문화』 18(4), 한국가족학회, 2006, 35~64면.
- 김효민·박정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본인 및 배우자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3), 한국가정관리학회, 2013, 125~140면.
- 박공주·강성금,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4), 한국융합학회, 2019, 247~255면.
- 박미석·김미영,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정자원 수준 및 집단별 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3),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2, 35~51면.
- 박은옥,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4), 여성건강간호학회, 2001, 508~517면.
- 박주희,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원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4),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 71~94면.

- 박태영,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1998, 27~50면.
- 박희정, 「부부갈등 수준과 대체 방식에 따른 여성의 결혼생활 만족도」,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손연정·유문숙, 「기혼 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2), 한국모자보건학회, 2008, 143~154면.
- 손영미·박정열,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변인과 결과 변인의 차이연구: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2), 한국심리학회, 2014, 161~190면.
- 유계숙·강수향·오아람·이주현,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1, 117~136면.
- 유공순, 「기혼여성의 결혼생활 중요도인식과 결혼생활만족」, 『한국사회과학연구』 30(2),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191~220면.
- 유성경·임영선,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일만족도 변화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3), 한국심리학회, 2016, 415~439면.
- 이선미·전귀연, 「결혼초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갈등과 갈등대처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한국가정관리학회, 2001, 203~220면.
- 이윤석, 「한국의 연령과 부부관계만족도」,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2012, 79~84면.
- 이정은·이영호,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한국심리학회, 2000, 531~548면.
- 이희정, 「수입, 가사분담, 일가족균형과 결혼만족도가 취업모의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2010(4),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0, 77~102면.
- 장병욱·이정우,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한국가정관리학회, 1998, 39~52면.
- 정애경·함은혜, 「배우자의 비임금노동참여가 기혼직장여성의 결혼만족과

-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9(2), 한국상담학회, 2018, 259~277면.
- 조성희·박소영,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9(8), 한국가족복지학회, 2010, 149~174면.
- 조수진·이기영, 「일·가정양립태도와 환경이 취업모가 지각한 모자간 자원 제공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6), 대한가정학회, 2011, 23~37면.
- 조혜선, 「결혼만족도 결정요인: 경제적 자원, 성 역할관 관계성 모델의 비교」, 『한국사회학』 37(1), 한국사회학회, 2003, 91~116면.
- 최정혜, 「맞벌이교사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3),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6, 163~173면.
-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05&tblId=DT_205006_C005_2020&vw_cd=MT_ZTITLE&list_id=205_YT2598_001_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20.
- 허미화,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Aniol, J. C., & Snyder, D. K., 「Differential Assessment of Financial and Relationship Distress: Implications for Couples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3), 1997, 347~352면.
- Archuleta, K. L., Britt, S. L., Tonn, T. J., & Grable, J. E., 「Financial Satisfaction and Financial Stressors in Mari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Reports』 108(2), 2011, 563~576면.
- Ayub, N., & Iqbal, S., 「The Factor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A Gender Difference in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ocial Sciences』 6(7), 2012, 63~73면.
- Berg, J. H., & McQuinn, R. D.,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986, 942~952면.
- Berry, R. E., & Williams, F. L.,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1), 1987, 107~116면.
- Britt, S., Grable, J. E., Nelson Goff, B. S., & White, M., 「The Influence of Perceived Spending Behavior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9(1), 2008, 31~43면.
- Chung, K., Kamo, Y., & Yi, J., 「What Makes Husband and Wif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s: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 『한국인구학』 33(1), 2010, 133~160면.
- Dean, L. R., Carroll, J. S., & Yang, C., 「Materialism, perceived financial problems, and marital satisfaction」,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5(3), 2007, 260~281면.
- Dew, J.,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Differing Roles of Assets and Consumer Debt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1), 2007, 89~104면.
- Dew, J., 「Debt Change and Marital Satisfaction Change in Recently Married Couples」, 『Family Relations』 57(1), 2008, 60~71면.
- Foa, U. G., 「Interpersonal and Economic Resources」, 『Science』 171, 1971, 345~351면.
- Foa, U. G., Converse, J., Jr., Törnblom, K. Y. & Foa, E. B., 『Resource Theory :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CA: Academic Press, 1993.
- Kalmijn, M.,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the Perceived Stabi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5), 1999, 409~421면.
- Mohammed, H. M., 「Resilience as Moderator Variabl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Workers of Married Couples in Egypt」, 『Indian Journal of Health & Wellbeing』 7(5), 2016, 493~499면.
- Mugenda, O. M., 「Socioeconomic and Process Variables Influencing Households' Satisfaction with Future Plans, Financial Status and Quality of Life」, Iowa State University Capstones, Retrospective Theses and

Dissertations, 1988.

- Papp, L. M., Cummings, E. M., & Goeke-Morey, M. C., 「For Richer, for Poorer: Money as a Topic of Marital Conflict in the Home」, 『Family Relations』 58(1), 2009, 91 ~ 103면.
- Rettig, K. D., & Bubolz, M. M., 「Interpersonal Resource Exchanges as Indicators of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1983, 497 ~ 509면.
- Rowan, D. G., & Compton, W. C., 「Self-actualization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Reports』 77(3), 1995, 1011 ~ 1016면.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1996, 166 ~ 179면.

■ Abstract

Family Resource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Dual-Income Women

Kim Mi Ra·Hong Eun Sil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conomic resources and interpersonal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of working married women. Data came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2016. The final sample size was 3876 working married women in South Korea. Stepwise regression is used for the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resources of the subjects varied by household, and most households were at a level lower than the average. Second, for interpersonal resources, the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was the highest, followed by the relationship with relatives and the relationship with co-workers. Third, the level of economic resources, interpersonal resources, and marital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urth, the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relative infl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Fifth, when the level of economic resources is the same, marriage satisfaction is higher when the level of interpersonal resources is higher and vice-versa.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integrated approach that considers not only economic resources but also interpersonal resources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s needed to improve marital satisfaction of dual-income women.

key words: dual-income women, family resources, economic resources, interpersonal resources, marital satisfaction

이 논문은 2021년 8월 16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1년 9월 17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서평: 권용혁, 『가족과 근대성』(이학사, 2021)

가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읽다

김기성*

오늘날 전지구화된 신자유주의의 급류 속에서 국제질서의 정치적 재편과정뿐만 아니라 각 국가 내 사회의 지각변동과 연동된 ‘가족(家族, family)’을 둘러싼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와 그에 대비하는 국가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한국 학계의 경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법학, 사회학, 인류학, 그리고 특히 여성학의 영역에서 가족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에 비해 철학의 영역에서 가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 올해 초 출판된 『가족과 근대성』은 가족을 중심으로 탈식민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근대성 및 근대화에 관한 철학적 성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당장 눈에 띄는 『가족과 근대성』이라는 책 제목에서 두 개념의 병렬적 결합은 어딘가 어색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것이다. 저자도 서두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 ‘근대성(modernity)’ 개념에 관한 서구적 이해에 친숙한 연구자일수록 특히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어가다 보면, 저자의 문제의식, 연구의 전제와 대상에 대한 역사적 분석 그리고 이 분석에 근거해서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들과 전략들, 또한 저 독특한 책 제목에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그에 비해 저자가 전망하는 21세기 가족주의의 미래는 선뜻 동의하기가 주저되는, 사뭇 성급한 이론적 정당화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

*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교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사회철학적 시도는 학문적 담론 지형에 생산적 물음들을 자극하면서 한국 가족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탐구하려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숙고해야 할 목직한 과제들을 남겨 놓았다.

문제의식

우선 『가족과 근대성』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계는 서구의 개념과 이론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때 ‘지식의 지정학’, 달리 말해 발생론적으로 볼 때 지식의 장소 의존성 혹은 ‘장소 착근성(마이크 크랭 & 나이절 스티프트)’을 간과해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연구자는 자신의 전통 속에 살아 숨 쉬는 근대성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고, ‘지금, 이곳’에서 진행되었던 근대화 과정을 사태 그 자체에 밀착해서 추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념과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경험적 사태의 불일치를 직시하지 않은 채 서구 사상의 범주나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한국 사회의 현실을 기술하거나 분석하는 데, 혹은 비판하거나 해석하는 데 급급했던 학계의 풍토가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이라는 틀 안에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상의 나라를 맘껏 펼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준을 구성”¹⁾하기 위해, 더 나아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기준점”(97)을 잡기 위해 더 이상 학문의 원리나 규범을 발화자가 발 딛고 있는 시공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을 참조하되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주체적 시각을 바로 세우려는 고심이 『가족과 근대성』의 문제의식에 배어있다.

1) 권용혁, 『가족과 근대성』, 이학사, 2021. 7쪽, 이하에서는 인용 쪽수를 본문에 표시함.

연구의 전제와 방법론

저자는 『가족과 근대성』의 연구전제를 “가족과 근대성이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 보완적이었다”(5)는 자신의 현실적 경험치로부터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달리 말해 가족의 형태 및 지위의 변화 과정은 다름 아닌 한국 사회의 근대화가 전개되어 온 과정의 축소판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은 뒤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유교적 근대’, ‘식민지 근대’, ‘미국적 근대’의 서로 다른 결들이 역사적으로 중첩되고 중층적이면서 혼성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서구 근대 사회와 달리) 개인이 아닌 가족을 기본적인 구성단위로 삼았고, 개인주의가 아닌 가족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구조화되었다. 따라서 가족과 가족주의의 구조변동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은 다름 아닌 그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온 한국적 근대를 복합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전제로부터 출발하면서 저자는 가족주의라는 범주를 분석틀로 설정하고 가족 개념을 렌즈로 삼아 20세기 한국 사회의 특징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의 미래상을 전망하려고 시도한다.

저자의 시도는 마치 현대 사회과학에서 제기된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비견할만한 ‘방법론적 가족주의’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사회의 모든 현상을 개인의 의식, 행위, 동기의 결과로서 혹은 개인들 간 사회적 행위들의 결합에 의한 구성 효과(effect of composition)나 결속 효과(effect of aggregation)로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저자는 가족주의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관통하면서 20세기 한국 사회의 현재를 통찰하고자 한다.

하지만 저자는 한국 특유의 근대성 및 근대화 현상을 가족주의로만 환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그 현상의 복합적 사태에 합당한 복합적 성찰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나 방법론적 전

체주의 혹은 전체론적 실재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다.

가족주의의 정의

이제 『가족과 근대성』의 핵심적 논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저자가 연구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가족주의(familism)’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신념”, 즉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집단이며 가족 집단은 국가를 포함한 다른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우선시된다”(95)는 무의식적 혹은 잠재의식적 층위에서 구조화된 정서적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 이 메커니즘은 에리히 프롬의 언어로 말하자면 한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적 성격(social character)”²⁾과 유사해 보인다.

유가 문화권에서 가족과 가족주의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 문화권에서 가족은 서구와 달리 독립적인 단위가 아니었다. 가족은 독자적으로 영속하는 공동체로서의 관념적 ‘가(家)’에 소속된 것이었고, 직계 가족이나 가문(家門)이나 문중(門中)이라는 관계망 속의 일부, 즉 “현재의 가족원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상과 미래의 자손 그리고 가산으로 이루어진 초시간적인 제도체”(176)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가와 국(國)은 분리되지 않은 일체로서 전제되었고,

2) 프롬은 사회적 성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회적 성격은 인간의 본성이 사회구조에 동적으로 적응한 결과다. 사회적 조건이 변화하면 사회적 성격도 변하여 새로운 욕구와 불안이 생긴다. 이 새로운 욕구는 새로운 사상을 낳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에 민감해지게 한다. 이 새로운 사상은 다시 새로운 사회적 성격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이바지한다. 바꿔 말하면 사회적 조건은 성격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념적 현상에 영향을 준다. 한편 성격은 사회적 조건에 수동적으로 적응한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생물학적으로 내재해 있거나 역사 발전의 결과로 내재적이 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조건에 동적으로 적응한 결과인 것이다.” 에리히 프롬, 김석희 옮김, 『자유로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2019, 1304쪽.

무수한 가들을 대표하는 윤리적 존재로서 아버지이자 정치적 지배질서 체계의 최고 정점에 있는 통치자로서 천자가 바로 군왕(君王)이었다.

동양의 유교적 가족주의는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를, 다른 한편으로 친친(親親)과 인(仁) 사상을 이념적 배경으로 삼고 있었다. 가족은 가 혹은 문중이라는 세대 간 연속성을 구체화한 현실태였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 인간은 천륜과 인륜을 구현하는 운명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가족은 집약적 이식형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집단노동의 기초 단위로 기능했다.

이상과 같은 정치적 지배질서 체계, 이념적 배경, 경제적 토대에서 (시민계급이 봉건체제의 신분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사회를 형성했던) 서구와는 전혀 다른 유교적 근대성이 태동했고, 동아시아 각국의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근대화가 전개되었다. 저자는 유교적 근대성에 관한 예시로서 송대(960~1279)에 이미 발견되는 “관료 제도, 사창·환곡 등의 부조 제도”(265), “신분제의 붕괴, 전 백성의 양반화, 과거를 통한 관료 제도 정착, 소농의 사적 소유권의 존재, 채권 의식, 유교적 공공성과 공론장, 계의 민주적, 결사체적 특성”(271)을 열거한다.

유교적 근대성은 “관계 중심적 인간관, 개인의 가족주의나 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 오랫동안 시행된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 천하위공적 정치관, 유학자들의 비판 정신 등”(94) 문화적, 정치적, 사상적 혹은 종교적 배경과 한 묶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유교적 근대성이 서구적 (이성 중심의) 근대성과는 다른 양상의 유기적 통일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 탄생

유교적 가족주의는 조선 왕조의 정통성과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자장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것은 유교적 이념

의 실천으로서 『소학』과 『주자가례』의 전국적 보급과 학습을 통해 부계 중심의 성리학적 가족주의로 제도화됨으로써 “가와 국의 동심원적 구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재구조화”(29)하는 데 중추적인 구성요소로서 일조했다.

다시 말해 조선의 국가체제는 중기 이후 성리학적 강상(綱常)의 질서에 따라 양계친족체계의 형태(주자학의 중법제가 중심축이 된 공동체의 형태, 즉 부계, 모계, 처계가 공평하게 고려된 자녀균분상속제와 자녀윤회봉사 등)가 부계친족체계의 형태(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적장자의 제사 및 재산의 상속제 등)로 전환되면서 완성되었다.

하지만 소빙기(1490~1750)의 대기근과 전염병,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3~1637)의 대전란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숙종의 집권(1674~1720) 시기 당쟁의 격화로 인한 국가-향촌 사족 간의 갈등과 단절이 야기한 사회의 동요 속에서 조선의 다양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방어하고 생존과 유대를 위해 ‘가’와 가족 중심으로 결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 현상은 존존(尊尊)이라는 국의 통치적 질서와 친친(親親)이라는가의 인륜적 질서 사이의 (애초부터 유교적 공공성을 표방했던 조선 건국의 정당성 문제에 내재했던) 긴장과 갈등 관계에서 후자가 우선시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민이 조정을 더 이상 국가적 공공성의 발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³⁾

이처럼 국가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개인의 “생존과 유대의 중요한 전략적 단위이자 인식 및 행위의 절대적 준거”(147)가 되는, 외적으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내적으로 위계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가족주의가 조선 후기에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계 혈연

3) 조선 후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18세기 영·정조의 탕평 시기 가국의 동심원적 구도 및 가족주의와 근대성에 관한 연구는 왕과 사대부의 관계, 왕과 소민(小民, 중인·서얼·상민·천민)의 관계를 구분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심 세력의 결집 현상으로서의 가족주의가 근대 한국의 가족주의와 유사 가족주의의 역사적 뿌리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식민지 조선의 착종적 가족주의

조선 후기의 가족주의는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또 한 차례의 변형을 겪는다. 사실적인 거주관계가 아닌 호주 중심의 가족관계를 제도화하는 근대 일본식 호적법인 ‘민적법(1909년 4월 1일 시행)’이 조선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이다.

일본은 1912년 발효된 조선민사령의 가족 관련 법규(11조 제1항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를 세 차례 개정함으로써 조선의 ‘관습’과 일본의 ‘이에(家)’ 제도가 착종된 형태의 식민지 조선의 호주제를 정착시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총독부는 1939년 11월 제령 19호와 20호를 통해 창씨개명의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조선의 관습적 ‘성명(姓名)’과 함께 일본식 ‘씨명(氏名)’을 등록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경우 호주와 동일한) 씨명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이 당시의 호주제는 개인의 사적 정보가 국가의 등록과 승인을 거쳐 문서로 기록되고 편제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의 ‘인민(人民)’을 ‘국민(國民)’으로 호명하는 절차였고, 궁극적으로 식민지 조선을 일본의 국가체제 아래로 포섭하려는 제국주의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 한국의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착오적으로 동성동본(同姓同本) 불혼과 이성불양(異姓不養) 원칙을 1958년 2월 22일 공포된新民법의 일부 조항으로 관철시키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다른 가문이나 집단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남녀차별적인 가족주의를 고수했다. 식민지 시기 근대 일본식 호적법의 이식과 착종의 잔재였던 호주제는 1988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1989년 7월 1일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후 1990년 3차 가족법 개정을 거쳐 2008년 1월 1일에서야 비로소 폐지되었다.

호주제의 폐지는 호주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가족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저 신민법에 근거를 두었던 한국의 가족주의가 20세기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추동했던 양가적 역할이다.

20세기 한국의 가족주의와 근대화

1960년대부터 1987년까지 중앙집권적 국가 관료의 주도하에 추진된 근대화 과정은 한국 사회의 양적 경제성장을 급속도로 달성했다. 그러나 상명하달식 권위주의 문화 속에서 시민사회는 발전할 수도,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형성될 수도 없었다.

군부독재정권과 경제발전지상주의 체제 안에서 개인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는 국가의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은 개인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일 수밖에 없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저자는 20세기 한국의 근대화가 “애국심을 앞세운 국가주의와 가족의 이익을 앞세운 폐쇄적 가족주의”(230)라는 쌍두마차를 전진 배치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지닌 개인주의를 포기한 대가로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도의 근대화는 (충이 없는 효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본식 가국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총동원 파시즘 체제가 발동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개발도상국의 단계에서 가족주의는 강한 국가주의를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악용되기도 했고, 혈연, 지연, 학연, 업연 등과 같은 집단이기적 연고주의와 파벌주의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동원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왜곡되고 변형된 가족주의는 국가주의, 연고주의, 파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가나 관 주도에 대해 묵인하는 정서와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의 일상화, 사익 추구를 공론화하지 못하는 분위기, 부권과 남성 중심 권위주의의 일상화뿐만 아니라, 학구열과 고시 열풍 등을 통한 입신양명이나 관료주의 및 엘리트주의의 확산”(215~216)과 같은 경쟁주의적 인간관계와 출세지향적 삶의 가치관을 유산으로 남겼다.

하지만 동시에 가와 국, 공(公)과 사(私)를 동심원적으로 이어줬던 (효와 충이 위계적 관계가 아닌 연속적이고 상보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기에 저항적 민족주의로 발현되었고, 군부독재 시기에 양심적 지식인들의 멸사봉공, 무아지공의 자세와 함께 4·19 혁명 이래 민주화를 추동했던 공동체적 힘의 원천이 되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힘은 20세기 후반 발생한 국가의 외환 위기와 금 모으기 운동, 21세기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과 시민들의 협력, 세월호를 향한 전 국민적 관심과 촛불혁명, 세월호 유가족들과 오월 어머니들 간의 연대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이상과 같이 살펴봤을 때, 저자는 해방 이후 서구의 근대적인 법과 민주주의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수용되었던 것은 전통적 가족주의가 외부로부터 이식된 ‘근대적인 것’들과 어떤 친연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단번에 이해하기 힘든 한국 사회의 모순적이고 복잡한 근대화 과정과 더불어 전개되어온 민주화 과정이 상당 부분 이해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다.

21세기 가족주의의 전망과 전략

저자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가 점차 증대되고 지식정보사회로 진

입하면서 폐쇄적, 배타적, 위계적이었던 가족주의가 점차 약화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한다. 즉 “‘일차적, 기초적 물질 중심 가족주의’에서 ‘이차적, 비물질적, 수평적 네트워크형 가치 중심 가족주의’”(187)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주의의 중심 변경은 거꾸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조변동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차적 가족주의와 연동된 21세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세 가지 전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째, “친친도 일방적인 효가 아닌 상호 인정과 이해 그리고 배려의 형태로 변화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72) 21세기 친친의 의미는 더 이상 가족구성원 사이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이고 쌍방적인 소통과 협력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부모의 책임과 의무였던 육아, 교육, 치료, 부양 등을 국가와 사회가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확대”(139)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 가족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서적 교감과 친밀성, 그리고 구성원들의 내부 결속력을 21세기에도 잃지 않는다”(72)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전제가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친밀성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투쟁과 일상문화적 실천이 수행될 때에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투쟁과 실천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분석과 이론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개인화와 가족주의가 혼합되면서 기존의 위계성이 매우 약화되고 구성원들의 감성적 친밀성이 강조되는 따뜻한 네트워크형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240~241)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 가족 안에서 “개인 중심의 덕목들을 함께 강화”(139)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럴 때만 가족 안에서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자아실현 및 자유가 강화되는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마을, 사회가 자연스럽게 연계된 네트워크 안에서 한 개인이 사회화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이런 환경 안에서 개인의 민주적 덕성이 습성화될 때 외부 타자와의 협력과 연대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자는 예견한다. 이 예견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최근 지역학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족, 마을, 사회 간의 공조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참여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관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간이 흐를수록 친밀성과 수평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연대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187) 저자는 이러한 연대를 약한 개인주의와 열린 공동체주의의 호혜적인 조합의 형태라고 말한다. 그는 도시형 핵가족의 가족주의 안에서 길러진 정서적 친밀성과 이타적 배려나 희생 등의 습성이 “사회적 공통감으로 이행하고 가족 단위의 연대로서의 사회적 연대로 확대”되려면 “가족 단위의 협력 프로그램”(135)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지 대상 및 실행의 주체를 가족 내지는 공동체 단위로 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가족 내부적으로는 열린 가족주의가 새롭게 재구조화될 것이며 가족을 넘어 사회와 연결 짓는 방식으로 “가족의 사회화” 혹은 ‘사회의 가족화’라는 형태로 확장된 ‘대동인’이거나 ‘인간됨을 지향하는 공동체’(244), “모든 구성원이 중심이자 하나의 매듭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수평적으로 연대하는 네트워크형”(84)의 열린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열린 다중심의 공동체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집합적 결속력을 불가피하게 전제한다.

가족에 기반을 둔 다중심 공동체주의는 저자의 야심찬 의도를 품고 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기준점을 잡기 위한 “한국발 동아시아학”(97)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발 동아시아학은 기존의 자국중심주의 자체를 해체하고

“민족국가, 국민국가를 넘어선 지역공동체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는 세계인 공동체”를 구상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지향점이다. 저자는 “분화된 다양한 개인 및 소수 그룹 간의 소통이 활발해져서 그들 각자가 하나의 매듭이면서 이 매듭들이 다층적이며 중첩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는 그러한 네트워크형 민주주의 형태”(111~112)를 지금 이곳에서 출현하고 있는 이차적 가족주의의 미래로 그린다.

하지만 저자 역시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밑그림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정치경제적 투쟁과 시민들의 일상적 실천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개인의 고립과 소외,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안전망이 부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는 낭만적 이데올로기로서 유사 가족주의의 다양한 변종들이 출몰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시할 때, 한국발 동아시아학을 정립해 가는 여정에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경험적 분석과 더불어 ‘트랜스로컬(translocal)’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일상에 대한 사회비판적 성찰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발 동아시아학의 정립은 저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한국 가족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는 타전공의 연구자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지금-여기의 경험적 사태에 밀착해서 다각도의 관점에서 파고드는 학제 간 연구의 형태로 구체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응원을 보낸다.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회수 및 시기

1.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년 2회 발간한다.
2. 발행일은 전반기 3월 31일, 후반기 9월 30일로 한다.

◎ 논문투고 규정

1.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2.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3. 원고의 접수는 전반기 12월 31일, 하반기 6월 30일에 각각 마감한다.
4.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 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5.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6. 투고된 논문은 기관지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한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7. 논문 심사에서 ‘수정’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8. 논문 심사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9. 논문은 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0.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과 필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동의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1.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논문제목

2) 저자명 : 저자의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각주로 표시한다[예 : 한국대학교 교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한다.

공동저자 :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예 :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3) 목차

4) 국문초록 : 국문으로 작성하고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5) 본문

6) 참고문헌 : 인용논문의 해당 면수도 표시한다.

7) 영문초록 : 영문으로 작성한다.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12.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3)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 필자명, 년도, ?면.(인용한 경우)
- 필자명, 년도, ?~?면, 참조.(참조한 경우)
- 단행본 :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 문집류 :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 논문류 :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4)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 단행본 :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 문집류 :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 논문류 :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페이지를 밝혀야 한다.)

5)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
- 논문 : 「 」
- 작품 : < >
- 강조, 간접 인용 : ‘ ’
- 직접 인용 : “ ”

6)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 부칙

1)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심사위원

- 가.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	중(17)	하(14)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	중(17)	하(14)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	중(17)	하(14)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	중(17)	하(14)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	중(17)	하(14)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3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2점	게재불가
3-5점	수정후 게재
6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사. 수정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4.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5.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 나. 학술지는 년 2회(3월 31일, 9월 30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6. 부칙

-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연구 윤리 규정

제1조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 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7조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에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12조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3조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4조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제15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6조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

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18조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강의혁(전남대), 김청우(부경대), 박미선(전남대), 박 범(공주대), 정희원(서울시립대), 최대희(전남대), 추주희(전남대), 한의승(전남대)
편집간사	강은진(전남대)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경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김동근(전남대), 박상철(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신해진(전남대), 양순자(전남대), 이주리(전남대), 표인주(전남대), 한의승(전남대)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p>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〇〇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p>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이 학술지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됨(NRF-2018S1A6A3A04042721)

가족과 커뮤니티 (4집)

Family and Community

발행인 : 정미라
발행처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jnuinmun.org/>
연락처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 062-530-5218
E-mail : familycommunity@naver.com

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인쇄처 : 한국문화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49, 404호
(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전화 : 02-464-7708
팩스 : 02-499-0846
홈페이지 : <http://hph.co.kr>
